

# INVENTION & PATENT

2010 December \_Vol.413

# 12



## 2010 지식재산 통합전시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展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첫 무대라 긴장한 신인가수,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  
주인공 대신 나와서인지  
다들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 때, 어디선가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  
“아빠~ 최고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관객들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네요.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든 이야기-  
포스코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http://www.posco.com)





SAMWHA CAPACITOR Co., Ltd.

# Green Technology with SAMWHA

PEA (MLCC for High Power  
Electronic Ap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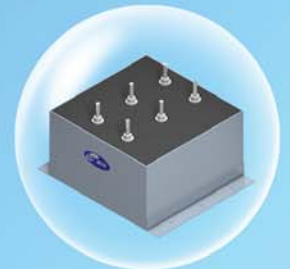
HEV (Hybrid & Electric Vehicle)  
DC link Capacitors



Green Cap (EDL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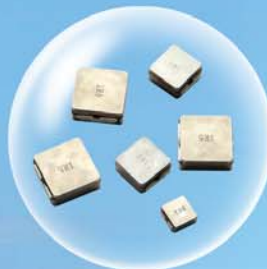
Renewable Energy Capacitors



Ferrite and  
Magnetic Powder Cores



MPC Inductors



High Voltage MLCCs



[www.samwha.com](http://www.samwha.com)

124 buk-ri, Namsa-myeon, Chein-gu, Yongin-si, Gyenggi-do, Korea

Tel. 82-31-332-5441, Fax. 82-31-332-7661

## PRODUCT SELECTION

### DB Cr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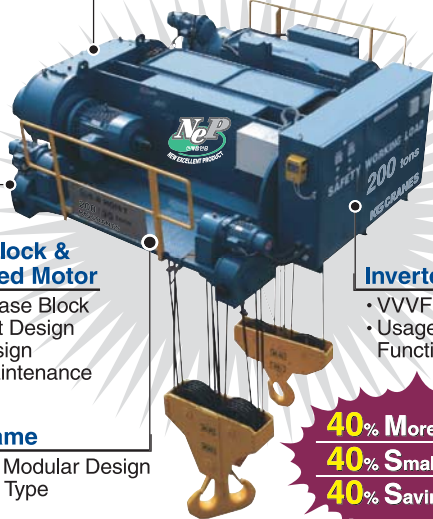
(대통령 표창, NEP 인증 제품)

#### Gear Box & DC MG Brake

- Modular Design
- Variable Speed
- Variety Type of Brakes

#### Reference

- 현대중공업 : 20,000 ton/year
- POSCO : 30,000 ton/year
- 삼성조선 : 50,000 ton/year
- American Shipyard : 5,000 ton/year
- Middle East Steel Mill : 10,000 ton/year



#### Wheel Block & TS Geared Motor

- Single Case Block
- Compact Design
- BBS Design
- Easy Maintenance

#### Inverter Panel

- VVVF Control
- Usage Memory Function

#### Main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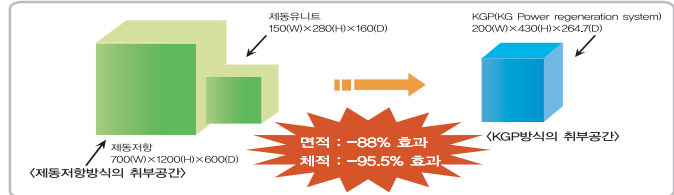
- 10Kinds Modular Design
- Package Type

**40% More Light**  
**40% Smaller**  
**40% Saving Cost**

### KGP (KG Power regeneration system)



#### I KGP 도입에 의한 공간 절약



#### II KGP 적용시 전기요금 절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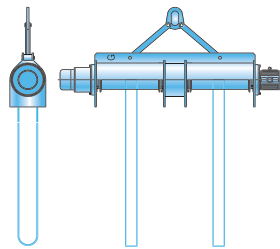
모터 용량 (kW)	효율율 호이스트 KGP적용 후 절감율(%)	절전 용량 (kW)	산업체 적용 전기요금 절감액(원)		
			3,600시간	4,800시간	5,400시간
11	11	1,21	233,917	311,890	350,876
15	11	1,65	318,978	425,304	478,467
22	17	3,74	723,017	964,022	1,084,525
37	22	8,14	1,573,625	2,098,166	2,360,437
55	21	11,55	2,232,846	2,977,128	3,349,269
90	22	19,8	3,827,736	5,103,648	5,741,604
132	22	29,04	5,614,013	7,485,350	8,421,019

• 한국고벨(주)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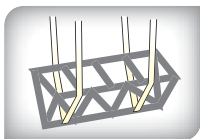
### Turning De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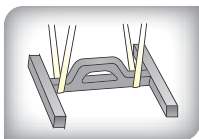
**Turn it E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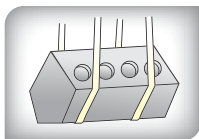
#### Application



Truss



Steel Structure



Engine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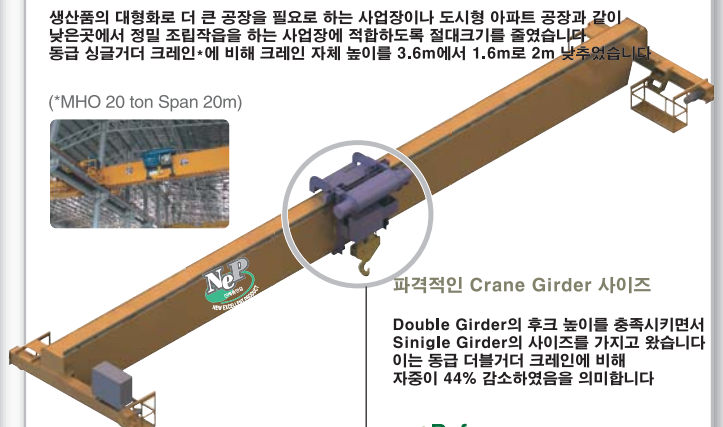
### Low Space Crane

(NEP 인증제품)

#### 건축비를 낮추는 크레인

생산품의 대형화로 더 큰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나 도시형 아파트 공장과 같이 낮은 곳에서 정밀 조립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절대크기를 줄였습니다. 동급 상급거더 크레인·에 비해 크레인 자체 높이를 3.6m에서 1.6m로 2m 낮추었습니다.

(\*MHO 20 ton Span 20m)



파격적인 Crane Girder 사이즈

Double Girder의 후크 높이를 충족시키면서 Single Girder의 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동급 더블거더 크레인에 비해 자중이 44%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Reference

- 두산중공업 : 8,000 ton/year
- POSCO : 6,000 ton/year

VVVF Control (인버터 컨트롤) 진동, 소음, 슬립이 없어 미숙련공도 쉽게 사용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handl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혁신적인 Hook 높이  
Mono Girder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를 만족시키며, Double Girder Crane의 높이 혹은 그 이상을 만족시킵니다.

**KG Crane** is the manufacturer of hoist and crane component since 1968 From Pinion gears to 600ton Goliath cranes. Please visit [www.kgcrane.com](http://www.kgcrane.com)

• Tel : +82-32-583-6671 Fax : +82-32-583-6674 •

# 2011년 주요 국제발명품전시회 일정

## 참가전시회

전시명	전시기간	출품안내 및 접수
태국 발명가의 날 행사	2.2~2.5	1월 초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4.6~4.10	2월 말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	5.20~5.22	3월 말
피츠버그 국제발명투자전시회	6.14~17	4월 말
모스크바 국제발명투자전시회	미정	5월 말
대만 국제발명품전시회	9.29~10.2	7월 말
독일 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	10.27~10.30	8월 말



# 2010년도 '지식재산 통합전시회' 성황리 개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 상표·디자인권展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통합 개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식재산 통합전시회」가 지난 12월 2일,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하여 4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지식재산 통합전시회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展」,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지식재산 관련 전시회이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날 전시회에는 국내 우수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수상품 뿐만 아니라, 세계 36개국 총 600여 점의 해외 발명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3일에는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등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도 함께 열렸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주)다산알앤디(대표이사 정창호)가 차지하였다.

(주)다산알앤디의 '자동속도조절 러닝머신 및 제어모듈'은 러닝머신에 온라인 마라톤 경기 구현과 닌텐도 같은 모션게임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연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운동기구이다. 이 발명품은 사용자가 지루함을 덜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흥미로운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무총리상은 엘이디웍스(회전형 디스플레이 장치 및 동영상 재생방법)와 대우건설(광섬유 센서용 고정자 및 이를 이용한 광섬유 센서 부착방법)에게 돌아갔다.



1



2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우수상표권 공모전」에서는 (주)삼양사가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주)삼양사의 '설강맥우(雪降麥牛)'는 쇠고기 브랜드로, 최적비율의 보리 비육사료를 사용하면 마치 고기 위에 눈이 내린 것처럼, 선명하고 우수한 마블링을 갖춘 명품 한우 고기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허청장상에는 (주)동원데어리푸드의 '소와나무', 한림GST(주)의 '클링클링', 채앤리빙스 채연지 대표의 'Maem Mae', (주)인터피플 조호준 대표이사의 'PolliMolli', (주)벤딩코리아의 'ICEVAN;아이스반' 이 수상하였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3개 전시회를 통합 개최한 것"이며,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수발명 구매상담관(발명-비즈니스 매치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우수발명품의 제품구매,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내외 바이어를 모집, 투자상담을 제공하였다" 라고 밝혔다.



3



4

수상자 명단 10p ~ 13p 참조

**사진설명**

**사진1**

• 김창룡 특허청 차장과 최종협 우리회 상근부회장 및 내외귀빈들이 수상자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2**

• 최종협 우리회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3**

• 김창룡 특허청 차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4**

• 최종협 우리회 상근부회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5**

•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시상식에서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과 대상 수상자(러시아)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



**김 창 룡**  
특허청 차장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영예로운 수상자와 가족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우수발명 창출에 묵묵히 매진하고 계시는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가 심화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핵심·원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그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발명인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발명품을 한자리에 전시하는 이번 행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고루 갖춘 국내의 우수 특허와 상표 및 디자인 제품 등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와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우리 발명인들의 혁신 의지를 북돋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의 공동번영을 전인하는 리더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격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이를 신뢰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해주신 우리 국민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로서,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만 본다면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질적으로는 핵심·원천 특허의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매년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수준도 2010년 스위스 IMD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58개국 중 32위에 불과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핵심·원천 특허 등을 사들인 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특허관리회사, 소위 '특허괴물'이 등장하여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식재산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튼튼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특허·디자인·상표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면서도 고품질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심사관을 대폭 증원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지식재산권 선진 5강 체제 주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나눔 운동을 실천하여 선·후진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기업이 주력분야에서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핵심특허 취득, 라이선스 전략 등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식재산전략 전문가 파견 및 지식재산경영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強小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소기업,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자문, 분쟁해결 지원과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도입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마련,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중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며,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1년 단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식재산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2010년도 우리나라 발명특허를 총결산하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과 '서울국제발명전', 그리고 '상표·디자인권전' 이 동시에 시작되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발명활동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1988년부터 개최되어 온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은 올해 최초로 '상표디자인권전' 과 동시 개최됨으로써 발명특허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 전체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으며, '서울국제발명전' 과 동시 개최되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왜 우리 사회가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재산 신드롬이 발생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지식재산은 과학기술이 출수 없는 무언가를 주고 있기에 우리 사회가 열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 에서 우리사회는 이미 감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의 시대는 감성적 능력이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이 철저한 이론과 논리에 근거한 지성(知性)의 집합체라면, 지식재산은 과학기술의 지성적 바탕 위에 발명, 디자인, 브랜드, 저작표현 등 감성(感性)적 능력이 통합된 개념이기에, 지식재산은 분명 과학기술 이상의 매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가 R&D 비중 세계 5위와 산업재산권 출원에서는 세계 4위에 이르는 등 좋은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침

단핵심기술은 적지 않은 로열티를 해외에 도로 내주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교부가가치의 지식재산 창출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발명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인이 더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구매상담회를 전략적으로 기획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토록 하였고, 전시회에 참가하신 발명인이 제품 판매, 기술 이전, 투자 유치 등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을 비롯한 3대 전시회가 발명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고, 발명활동을 더욱 진작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종 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 201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자

상격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대상(대통령상)	(주)다산알앤디	(주)다산알앤디	지동속도조절 러닝머신 및 그 제어모듈
우수상 (국무총리상)	(주)엘이디웍스	(주)엘이디웍스	회전형 디스플레이 장치 및 이의 동영상 재생방법
	(주)대우건설	(주)아이세스 (주)대우건설 (주)이제이텍	광섬유 센서용 고정자 및 이를 이용한 광섬유 센서 부착방법
특별상 (WIPO 사무총장상)	(학)포항공과대학교 (주)휴롬엘에스	(학)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기	레이저를 이용한 플렉서블 소자의 제조방법 착중주스기

### 금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티에이치티	하태환	동력 전달 장치
(주)한지이야기	김지수	환경 친화적 복합소재를 응용한 지류계 평판 시트 및 그 제조방법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나노다공성 메브레인,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구비한 서방성 약물 전달 장치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	더블 트리아앵글 공법을 채용한 피뢰 시스템

### 금상(지식경제부장관상)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퓨처이엔지(주)	퓨처이엔지(주)	유체 이중 역류방지용 역지반 밸브
(주)제너스엠	김원주	복부비만 해소를 위한 헬스기구
(주)서치디엔에이	윤진호	데이터의 3차원 표시 방법 및 장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무시멘트 알카리 활성 결합재
(주)세원센추리	(주)세원센추리	한냉지용 중앙 2원사이클 냉난방 히트펌프 시스템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전열 촉진형 스테링 엔진
가닛코스모	오세기	표시성 라이트 바가 구비된 행거
(주)에따라	(주)에따라	드라이어(dryer)기
(주)대하인터내셔널	심종원	치아세정수단의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기
바스투스스티앤시	김성욱	유아용 비데 기능을 갖는 좌변기
(주)에어릭스	육근석, 박로버트태부	골프용 레이저 지시장치
(주)너름	왕현민	토크구동장치
듀공	박찬우	가변형 가열용기
신화케미칼	정해철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지주 기초대

### 은상(특허청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아티스	(주)아티스	보빈이송장치
하라테크	김선환	의자 다리미의 구조
옵토파워(주)	옵토파워(주)	광 온도센서
(주)대원산업	박인원	접이식 자전거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대한후렉시블	윤성환	벨트식 클램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메이즈텍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메이즈텍	네비게이션 서비스 방법 및 그에 따른 시스템, 단말기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암호입력 기능이 개선된 디지털 도어락 장치
지성소프트(주) (주)인슈텍	임원기	응력 부식균열 형성장치
-	김윤상	골프 스윙 연습기
왕건종합건설(주)	왕건종합건설(주)	신발 살균건조장치
(주)코아트코리아	(주)코아트코리아	상하방향의 동작패턴을 이용한 칫솔
범아건설(주)	범아건설(주)	하수처리 시스템
이미지랩(주) (주)우림	이미지랩(주)	배수 트랩 시스템
-	홍순황	안전 테트라포드 및 이를 이용한 해안용 구조물 그리고 이의 시공방법
(주)세기종합환경 오우메드(주)	(주)세기종합환경 오우메드(주)	저항막 방식 멀티 터치 패널
(주)코리아환경스마트	(주)코리아환경스마트	포장지 대응 확산부재 및 반사부재가 구비된 형광램프세트
(주)포시산업	(주)포시산업	휴대폰 청진기
웰빙고(주)	김성현	생물막이 구비된 정화기 조립체
(주)아이리버	(주)아이리버	전립선 치료와 직장 항문의 생리검사 및 바이오피드백 운동의 겸용장치
거성테크	목영래	음식물쓰레기 분쇄 및 건조장치
		다층 구조의 물 저장 장치
		자기 부상식 순환동력부가 구비된 쌀눈 발아장치
		전자책
		컨트롤러가 포함된 양돈농장용 환기팬

### 동상(한국발명진흥회)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비비비솔루션	(주)비비비솔루션	난방장치
-	양순구	한방향글러지페달의 제어장치
(주)에코텡	김진만	누름스위치형 절전 콘센트
(주)씨에치엘텍	(주)씨에치엘텍	점핑운동구
도원산업	강신만	영상장치용 레일식 브라켓
(주)아이베이지디쓰리	(주)아이베이지디쓰리	휴대용 체액 배출 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
-	유익중	구연산 나트륨의 첨가와 가열처리 및 유산발효유에 의해 계란 단백질의 항원성이 저하된 유산발효계란
(주)현영LMC	박복현	여행가방용 접이식 보조바퀴

### 동상(한국특허정보원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광테크노마그네트	최태광	영구자석 워크홀딩 장치
웰빙코리아	홍정희	액상형 호신용 분사기
(주)룩센테크놀로지	(주)룩센테크놀로지	출력전압 순응형 전압 변환 장치 및 그 방법
(주)에이앤케이	(주)에이앤케이	발가락 신발
(주)위드솔루션	(주)위드솔루션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홈 시큐리티 시스템

동상(전국경제인연합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볼볼	(주)볼볼	토치
(주)노렘하이앤지	박명호	자전거용 이중구동장치
크라온텍	김병화	청취 장치
(주)농부가	(주)농부가	편백나무잎 추출물을 함유하는 섬유제조방법
(주)비타코스	김영대, 박근자, 김정수, 김지수	나노에멀션, 그의 용도 및 제조방법
(주)블루앤	(주)블루앤	실내 식물재배용 음이온 발생 장치

동상(중소기업중앙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호산테크	송재현	충전식 각질제거기
(주)성남화학	(주)성남화학	충간소음 저감형 바닥재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주)유나티앤이	(주)유나티앤이	냉각장치를 구비한 태양광 모듈 및 그 냉각장치 제조방법
김형욱	김형욱	내부에 복수의 분리된 밀폐공간을 갖는 멀티 스페이스 용기를 제조하기 위한 블로우 성형방법 및 그 금형
정송종합건설(주)	이재우	어린해삼 양육용 인공어초

동상(한국무역협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	장경수	조력발전과 해류발전을 겸하는 통합발전시스템
성신M&D	안성일	렌치
두원물산	서치영	휴대용 진공 전열 썰러
지산개발산업(주)	지산개발산업(주)	길이조절이 가능한 축구용 덮개
박정원	박정원	다용도 창호
(주)토일러	(주)토일러	천연 추출물을 함유하는 향균활성이 뛰어난 화장실 및 욕실 세정용 조성물

동상(대한상공회의소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CUESTROKE	지대환	당구 스트로크 연습 보조구
예지정밀	윤태균	자전거의 세트로 된 증속장치
실버레이(주)	실버레이(주)	도전성 패드 및 그 제조 방법
아리랑ION	허성열	이온화장치를 구비한 샤워기
스카이텍	김성규	데이터 송/수신의 동시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명 모듈과, 그를 이용한 직렬통신기반의 조명 제어장치
티더블유앤씨(주)	티더블유앤씨(주)	축산폐수 일관 처리시스템

동상(대한변리사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비즈클루	이을호	배수구용 이물질 걸름막 그 제조장치
AACE(더블에이스)	권용득	음성이식을 이용한 발음교정 시스템 및 그 방법
(주)퀀텀에너지	이종두	양자에너지 발생물질을 이용한 합성수지 마스터 배치 및 섬유재 제조 방법
태양산업사	김진천/민준기	해충퇴치시스템
-	김상철/김종찬	선회하는 마우스

## 동상(한국여성발명협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에코크레이션	(주)에코크레이션	재활용 용기 선별수거장치
(주)임진에스티	(주)임진에스티	세이퍼락너트
장인배	장인배	고효율 양축 역방향회전 발전장치
아트라이	김형준	무동력 자동 티업기
(주)세믹스	(주)세믹스	PVC창호용 창유리세척 와이퍼 어셈블리 및 이를 장착한 PVC 창틀
시내랑	심윤경	수족관용 이산화탄소 정량 공급 장치

## 2010 우수상표권 공모전 수상자 명단

상격	수상자	상표의 명칭
금상(지식경제부장관상)	(주)삼양사	설강맥우
	(주)동원데어리푸드	소와나무
은상(특허청장상)	한림GST(주)	클링클링
	채앤리빙스 대표 채연지	Maem Mae
	(주)인터피플 대표이사 조호준	PollMoli
	(주)벤딩코리아	아이스반(icevan)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주)현진기업	크레시오
	(주)동원에프앤비	델립
	(주)앙코르코리아	groove
	(주)자인	내몸에 선물
동상(한국무역협회장상)	(주)티앤에스모터스	TREXIMO
	자이글(주) 대표이사 이진희	자이글
	리빙씨어런스 대표 권용준	비온후
	시루가 대표 김두수	정성으로 빚은떡 시루가
	(주)엘엔케이로직코리아	L&K LOGICKOREA CI
동상(한국특허정보원장상)	(주)나스کم	N · rit (NATURAL SPIRIT)
	정음국제기술거래소 대표 이래득	한민
	(주)포스뱅크	OLIVE
	(주)와이앤드케이상사 대표이사 문구도	AIR'S COOL
	트루월 대표 강형석	TODOC
동상(대한변리사회장상)	주식회사 제이엠씨	연기없는 흥길몽웰빙숯불그릴
	박수열	워낭소리
	(주)미유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오준수	MIU
	(주)캐프	RISORPCIO
	실버피쉬 대표 유효상	silverfish
원텍 이사 김영득	파란개비	



### [금상 : (주) 삼양사(권리자)\_ 설강맥우]

'설강맥우(雪降麥牛)'는 흔히 고급육을 판단하는 기준인 '설강' 등급 마블링의 한자식 표현으로 마블링이 마치 고기위에 눈이 내린 것 같다는 의미.

또한 '맥우'는 육질등급향상을 위해 보리를 먹인 소를 의미. 즉 설강맥우는 최적비용의 보리를 사용하여 마치 눈이 내린 듯한 마블링을 갖춘 명품한우를 위해 제작된 상표.



• (주)다산알앤디  
정창호 대표이사

## “운동과 오락, 두 가지 즐거움을 만끽하는 신개념 운동기구”

자동속도제어 장치로 실시간 자동 속도 조절  
고객맞춤형 트레이닝 · 온라인 레이싱 · 사이버 마라톤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공

“이 발명품은 자동속도제어와 제어모듈로 사용자의 속도를 조절해 개인맞춤형 신체훈련이 가능하며, 오락요소가 가미되어 기존에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지루함을 없애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간중심의 운동기구입니다.”

다산알앤디의 정창호 대표는 ‘자동속도제어 러닝머신과 제어모듈’로 이번 201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발명품은 다산알앤디의 노하우인 속도조절과 데이터분석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일정속도에서 운동을 하던 러닝머신에 자동속도제어를 활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 속도를 제어한다.

또한 러닝머신에 PC를 내장시키고 기구 전면부에 모니터를 장착해 운동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 주위사람들과 함께 실시간 레이싱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유명 마라톤 코스를 함께 달리는 온라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다. 또한 닌텐도의 Wii게임과 모션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해 사용자의 지루함을 덜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흥미로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창호 대표는 “이 발명품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을 가미할 수 있어 신체운동을 보다 재미있고 의미 있게 바꿈으로써 헬스케어 산업과 라이프 사회건설, 스포츠 산업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눈의 잔상효과로 영상을 구현한 “회전형 디스플레이 장치”

원통형 콘솔 내부의 LED Bar를 고속회전시켜 얻는 눈의 잔상효과로 영상 구현  
정지영상 및 동영상 구현 가능, 원격 영상 제어 가능한 새로운 영상 매체



• (주)엘이디웍스  
채군 대표이사

“이 발명품은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360도 회전형 디스플레이 장치로 광고 노출 효과가 높아 인쇄매체가 주를 이룬 기존 지하철 광고시장을 대체하며, 다양한 정보 채널 접목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이다”

201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주)엘이디웍스의 ‘회전형 디스플레이어 장치 및 이의 동영상 재생방법’이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회전형 디스플레이 장치’는 원통형 콘솔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LED Bar를 설치해 고속 회전 시 발생하는 눈의 잔상효과를 적용한 동영상 매체이다.

정지영상·동영상 구현 및 TCP/IP 무선 방식으로 원격 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360도 시청이 가능해 광고효과도 있다.

채 대표는 “이 제품은 지하철 역사 내, 전시회, 이벤트 행사 등에서 짧은 시간과 좁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의 구현이 가능하므로 기존 전광판 등의 광고매체보다 더 큰 광고 효과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엘이디웍스의 “SPIN Display는 서울 지하철 17개역에 20기가 설치 중이며, 각종 전시회 및 지역행사에 활용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아 현재 일본 지하철 역사 및 중국·태국·인도네시아 등 세계 공항과 쇼핑센터 등에서 설치 및 추진 중이다.





• (주)대우건설  
서종욱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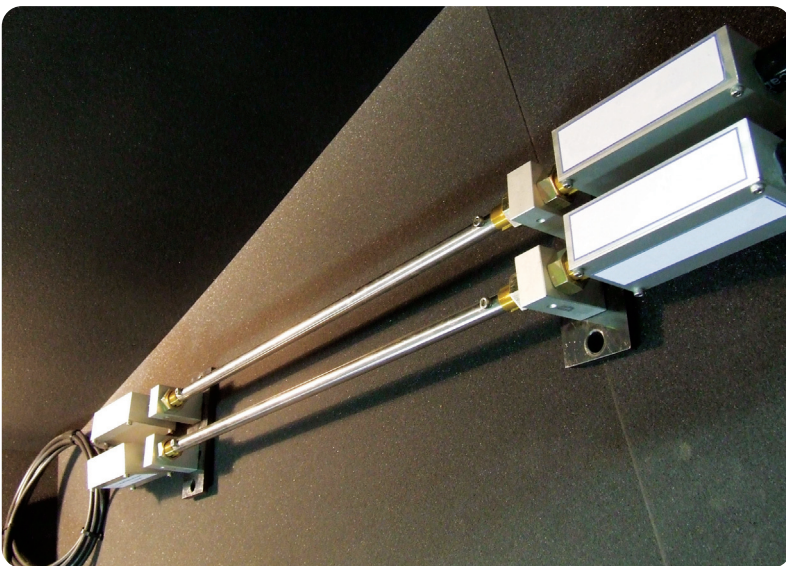
## “건설산업 경쟁력, 광섬유 센서 기술에서 나온다”

대우건설, 광섬유 센서용 고정자 및 광섬유센서 부착 방법 개발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터널변위 계측비용 절감 효과

“**현** 재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계측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식 및 진동현식 센서 사용 시 발생하는 습도와 부식으로 인한 데이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부식에 강하고 전자 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밀도의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를 개발하게 됐다.”

201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광섬유 센서용 고정자 및 이를 이용한 광섬유센서 부착 방법’으로 국무총리상인 우수상을 수상한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는 발명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기술은 광섬유 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코어와 클래딩)를 보호하고 피복부 일부를 벗겨내, 별도의 고정자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광케이블을 구성하는 재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Slip) 현상을 방지해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센서의 전기 공급이 필요 없으며, 전자기파 노출의 염려도 없어 센서 패키지 손상과 철수 시 광섬유격자센서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서종욱 대표는 “이 기술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시 발생하는 인장과 압축에 의한 변위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며, 또한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터널변위 계측 비용은 기존기술 대비 45.6%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대우건설은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고속철도·고속도로 등 다수현장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 2010년도 지식재산 통합전시회

### IP Report

22	지식재산 논문	한국형 비실시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32	특허확대경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절차
39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시선집중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바뀐다
49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법일반, 특허, 지재산일반
50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주)에코엠브레인
58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판매용 '발명' 전문 월간지

### IP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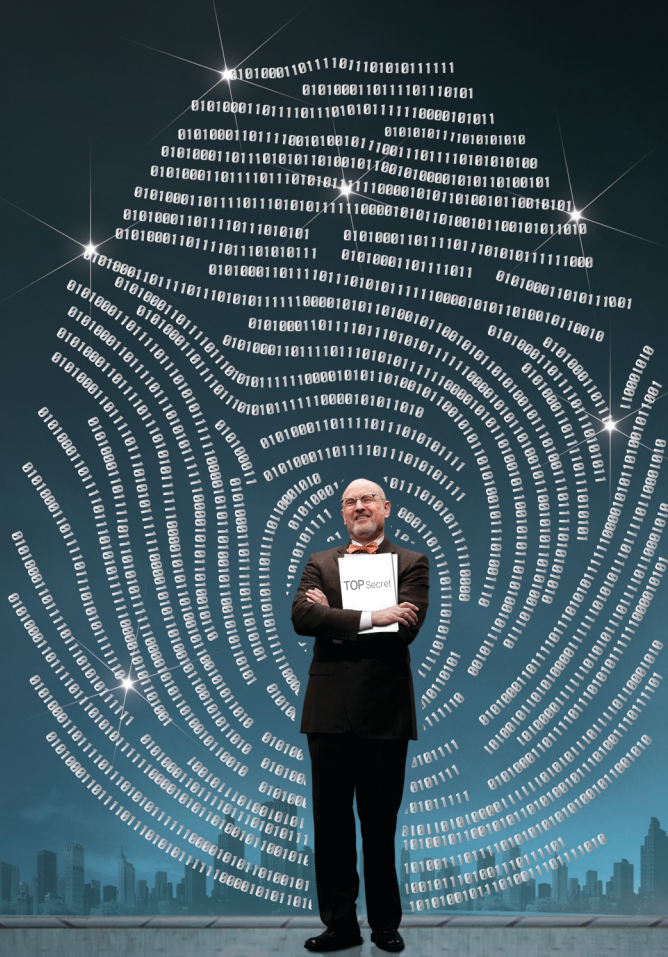
60	특허전략	중소기업의 전략적 특허경영, 결코 어렵지 않다!
64	지식재산 관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66	Zoom In	강한 특허를 위한 OA 대응방법
70	셀프 리더십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72	포커스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 보자!
80	지식재산 성공전략	사람을 키워야 할 때
86	문화산책	공연안내 (뮤지컬 아이다)

### IP Information



88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경상남도 (함양마천쑈), 경상북도 (경산대추)
90	건강하게 살시다	나의 음주량 알아보기
92	KIPO NEWS	특허청 소식
98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101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11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102	재미있는 퍼즐	함께 풀어봅시다
105	책과의 만남	추추는 거래의 실천

# 지금까지 없었다, 모두가 기다렸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시작!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정보의 외부 유출없이  
존재시점과 위·변조 여부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금 만나보세요

[www.tradeseecret.or.kr](http://www.tradeseecret.or.kr)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란

- 영업비밀로 보관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보유시점과 원본여부를 입증해 주는 서비스

###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교유의 코드로 다른 전자문서는 서로 다른 전자지문을 가짐

##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
-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한글, MS워드, 엑셀, 이미지, 동영상 등)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활용처

-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 실적, 재무자료, 투자계획,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등
- 기타 원본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 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KIWIE) 2011


K!W!E  
2011 ♀

**MAY 4TH THRU 7TH (WED-SAT) 2011 AT COEX HALL A, SEOUL, KOREA**

**Opening Ceremony:** May 4, 2011 (Exhibition Hall)


**Exhibition:** May 4-7, 2011 (Exhibition Hall)

**Award Ceremony & Closing Ceremony:** May 7, 2011 (Exhibition Hall)

**Hosted by:**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Organized by:**  Korea Women Inventors Association (KWIA)

**Sponsored by:**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orld Women Inventors & Entrepreneurs Association (WWIEA)

**KWIA - Korea Women Inventors Association**

**WWIEA - World Women Inventors & Entrepreneurs Association**

17F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Center

647-9 Yeoksam-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 82-2-538-2710 Fax: 82-2-538-2714

**Website:** [www.kiwie.or.kr](http://www.kiwie.or.kr)

[www.wwiea.org](http://www.wwiea.org)

**E-Mail:** [gokiwie@gmail.com](mailto:gokiwie@gmail.com)

[wwiea@wwiea.or.kr](mailto:wwiea@wwiea.or.kr)

안내

## 발명특허 기네스 모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발명특허'는 새로운 연속기획특집으로 '발명특허 기네스'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역사 뒷장으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어가는 발명특허 관련 자료 제1호를 찾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발명특허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마련한 이 연속기획특집에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제1호 또는 최대 등 '기네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개된 자료보다 앞선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잡아 소개하겠습니다. 기네스로 소개되는 순간 소장하신 자료는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기록은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소개 대상은 편의상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법(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 시행 이후 자료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락처 : '월간 발명특허' 편집실  
02)3459-2797

# Report

- 지식재산 논문 • 특허확대경 • 특허 Q&A • 시선집중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 발명특허 기네스





# 한국형 비실시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 제5장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현황

슬프게도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키워드는 ‘制限’과 ‘不在’로 인한 ‘後進性’으로 요약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은 IP 시장을 국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국내에는 IP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슬픈 현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는 ‘후진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 채 이미 10년 전 시작된 지식기반시대를 표류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진단이 사실일까?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중류·하류 및 IP 인프라 현황을 곱씹어 살펴보면 ‘표류’라는 단어가 오히려 미사여구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지식기반 생태계는 낙후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 또한 엿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 1.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의 문제점

우선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는 ‘발명가’에 의한 IP의 역동적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발명가 대부분은 IP를 창출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과실을 맛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IP를 창출할 의욕을 이미 잃었거나 곧 잃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발명가가 IP를 창출하여 돈 좀 벌라치면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교육자는 돈 밝히지 말고 교육에나 전념하시라”는 질책을 받는다.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발명가가 IP를 창출하여 돈 좀 벌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는 처지에 돈까지 밝히는 욕심 많은 연구원”이라고 매도당하기 쉽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발명가가 돈 좀 벌어볼까 하고 IP를 창출하면 이는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대기업에 자동 양도되고, 대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대부분 대기업은) 이를 직원과 공유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IP를 창출하여 대박을 낼라치면 이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대기업이 이를 가로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설령 대학의 교수·발명가, 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이 자신의 IP를 허락없이 사용한 대기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이라도 벌릴라치면 그들은 영락없이 우리나라 수출역군인 대기업의 발목이나 잡으려는 매국노로 매도되기 일쑤이다.

특허관련 경영진까지 내세운 'xx' 특허경영이 시작부터 망신살을 뽐내고 있다. 최근 'xx'가 'yy'와의 특허분쟁에 패한 것은 물론, 'xx'의 '000' 관련 특허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행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행이 이겼다. 000여명이 넘는 'xx'가 워크아웃 상대인 00여명의 'yy'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0월 00일 'yy'가 'xx'를 상대로 낸 02의 등 록무효 소송에서 'xx'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xx'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쓰는 기업들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여 특허사용료로 수입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은 시너지 효과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특허의 가치를 최대한화하기 위해 특허경영에 나서겠지만, 'yy'와 같은 작은 기업엔 그들과의 싸움이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000이 이끄는 'xx'는 디자인 및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기업 및 제품들을 적발하고 판매를 중단시키는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1. 국내기업 'xx'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다른 국내기업 'yy'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소송을 '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청구'가 아니라 '의혹'으로 처부하는 급년도 상반기 신문 기사

이 정도는 약과다.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도 자신의 IP를 허락없이 사용한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이라도 벌릴라치면 제품 생산에는 관심 없고 법률 소송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불량한 기업'으로, '의혹'의 대상으로 처부된다. (위 기사 1 참고) 따라서 한 기업이 자신의 IP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 특허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래 기사 2 참고) 이러한 풍토에서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이 자신들의 IP를 허락 없이 사용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벌일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창출한 IP를 이 정도로 무시하고 경원시하는 척박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발명가 대부분은 IP 창출 의욕을 이미 잃었거나 곧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00일 특허 업계에 따르면 'xx'는 지난 0월 세계적 특허괴물로 알려진 'uu' 관련 회사인 'vv'로부터 ... 소송을 당했다. 'yy'가 미국 00 등에 낸 소장엔 'xx' 외에 파나소닉, 필립스, 파이오니아, 리서치인모션, 소니, 시게이트 등이 함께 제소된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 00 기술 특허가 당초 'zz' 소유였다는 데서 출발한다. 'zz'는 00년 이 특허를 등록한 뒤 특허를 계속 유지하기 보단 특허를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게 더 낫다고 보고, 00+1년 이를 국내 특허 거래 회사인 'ww'에 넘겼다. 'ww'는 00+2년 이를 'uu'에 매각했고, 'uu' 관련 회사인 'yy'가 이번에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zz'는 "특허를 사거나 파는 것은 업계에선 일상적인 일로서, 특히 특허를 보유하여 발생하는 효익보다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보다 큰 경우 회사로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00 기술 특허의 경우, 00+2년 특허 거래 관련 국내업체에 매각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의 일은 'zz'로서 "관여할 수 없는 일이며,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2. 국내기업 'zz'의 특허를 구매한 외국기업 'yy'에게 국내기업 'xx'가 소송당한 데 대하여 특허소송을 '정당한 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청구'가 아니라 '수익'을 행하려는, 일종의 '불량행위'로 오도하는 급년도 중순 신문기사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에 의존하는 것을 비하하는 풍토에서도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IP 창출 의욕을 지니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발명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대기업을의 직원·발명가는 왜 우리나라가 세계 제4위의 '특허강국' 자

리를 꺾찰 정도로 그리도 열심히 IP를 창출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수·연구원·직원의 인사고과에 특허 출원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발명가들은 자신의 스승, 선·후배, 일가친척 발명가들이 IP를 창출하고 그로부터 맺은 달콤한 과실을 맛본 경우를 목도한 적이 거의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우리나라 발명가들은 인사고과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내키지는 않으나 피할 수는 없는 의무방어전을 치르는 자세로 IP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욕을 잃은 발명가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내실 없이 창출한 IP를 꿰어 보배로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은 애당초 꿈이며, 이상이며, 현실이 아니다.

2.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 역시 IP법률 '전문가'에 의한 IP의 능동적 '권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IP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건국 이래 황형해온 덤핑 관행 때문에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과실을 맛본 적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IP 권리화에 열정적으로 몰두할 이유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덤핑 관행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를 깨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휘둘려온 국내 IP법률 전문가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발명가들에게 있다. 즉 IP 창출로 인한 수익을 즐긴 적이 없는 우리 발명가들은 의무방어전을 치르는 기본으로 발명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IP 권리화라는 작업은 IP를 생태계 상류로부터 중류로 전달하며 그 가치를 배가하는 작업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치러야하는 불필요한 의식에 불과하다. 어차피 수익 창출로는 연결되지 않는 특허 발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변리사에게 출원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발명가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변리

사를 선호하는 한 우리의 덤핑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하지만 덤핑 관행의 근본적 책임을 발명가들만이 져야 할 필요는 없다. 대학·연구소·기업에서(대부분의 대기업 제외) 발명을 관리하는 많은 IP 관리부서(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직원들도 이에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관리직 출신이 대부분인 TLO 직원들은 우량 발명과 불량 발명을 구별할 수 있는 선구안이 없으므로 접수한 모든 발명을 출원하는 안이한 관행을 선호한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수효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려니 역시 더 값싼 변리사 사무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에서 어찌다 알찬 발명이 창출되더라도 값싼 변리사 사무소에서 제대로 권리화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 특허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보다 더 처절한 현실은 국내에 편중되는 우리나라 TLO의 특허 출원 관행이다. 즉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수효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려니 자연적으로 건당 비용이 높은 해외 특허 출원은 기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건당 비용이 낮은 국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관행이다. 하지만 특허법은 속지법이기 때문에 국내 특허로만 보호받는 우리 IP는 해외에서는 누구나 아무런 구속 없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IP로 전락한다. 국내에서는 돈을 주고 써야하나 해외에서는 누구나 공짜로 퍼갈 수 있으니, 이러한 관행은 (그래도 범법자는 돈을 버는) '기술유출' 보다도 못한 (아무도 돈 벌지 못하는) '기술기부' 라 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하류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와 중류가 혼탁하니 하류라고 말을 리가 없다. 즉 열정 없이 창출되고 부실하게 권리화된 IP를(집으면 부스러지는, 허약한 불량 구슬) 활용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에 기초한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찌다 창출된 양질의 IP도 국내에만 특허 출원되어 해외에서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집었을 때 부서지지는 않지만 가운데 구멍이 없는 구슬)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국내에만 출원된 IP를 구입하는 기업은 국내 시장

에서만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나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만 출원된 IP를 구입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이 또한 회장님께서 격노할, 문제의 기업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IP의 유동성 부족이다. 발명의 부실 유무, 권리화의 부실 유무를 떠나 우리나라 IP 사업가들은 활용할 IP 부족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바, 이는 상류에서 창출되고 중류에서 권리화된 IP가 하류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유동성 부족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대학·연구소 TLO이다. TLO의 주된 임무는 대학·연구소에서 창출된 IP를 선별적·전략적으로 권리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TLO는 '비즈니스' 보다는 '관리' 위주의 행정을 담당하던 정부 부처 주도로 단기간에 졸속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TLO는 선택과 집중 없이 접수한 IP를 모두 특허 출원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TLO는 비즈니스 마인드 결여로 인하여 대학·연구소에서 창출된 IP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향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관리만 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IP의 유동성 결여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IP 사업가들의 역량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는 상류·중류·인프라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인프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IP 사업가들은 세계를 무대로 이를 전향적으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이는 아무도 던져보지 않은 질문이다. 아직까지 준비 기간이 넉넉한 우리나라 IP 사업가들로서는 시험장에 끌려가 문제를 풀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역량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사료된다.

### 4.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인프라 문제점의 심각성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하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바로 IP 인프라이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각 단계의 문제점 중 많은 부분이 IP에 비우호적인 우리의 IP 인프라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P의 성격 및 활용에 대한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의 인식이나 IP 관련 제도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도 할 수 있다.

### 1) 국수주의에 근거한 IP 공유주의

우선 IP에 대한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의 인식은 공유주의에 가까운 편향성을 보인다. 어쩌면 산업자본시대에 IP 창출은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역점을 둔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해마다 증가하였지만 이에 비례하여 외국 기업에게 우리 수출기업이 당하는 특허침해소송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IP 공유주의는 어쩌면 이러한 피해의식에 근거한 국민적 반감일 수도 있다. 즉 지금껏 IP는 선진국이나 보유하는 것이니 특허소송 얘기만 나오면 항상 우리의 가슴은 조마조마했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도 모르게 특허소송은 선진국이 우리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범국가적으로 공감하는 IP 공유주의의 기초일수도 있다.

해외 IP에 대한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의 피해망상은 우리 생태계 상류에서 우리의 발명가들이 창출한 IP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즉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은 해외 기업들이 특허침해로 우리 수출기업을 제소하는 것을 경원시하는 만큼 우리 발명가들이 창출한 IP로 우리 수출기업을 제소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경원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교수·발명

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발명가는 자신이 창출한 IP를 우리 수출기업이 침해하더라도 이를 관대히 용인하도록 강요받는다. 설령 이들이 자신들의 IP를 침해한 수출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이라도 벌릴라치면 그들은 영락없이 ‘교육자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교수’로 손가락질 받거나 ‘남도 아닌 우리끼리 치사하게 소송을 주고받는’ 탐욕스러운 연구원으로 비난받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역군의 발목을 잡는 매국노로 매도될 것이다. 즉 지난 세기의 피해망상 때문에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은 심지어 우리의 발명가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IP를 발명가들의 동의 없이 도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게 된 것이다.

폭염 식혀준 ETRI 특허침해 제소 ... ETRI가 일본, 대만, 유럽의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폭염을 식혀주는 '빙고'다. 특허소송 얘기만 나오면 한국기업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해왔던가. 특허 소송에 관한 한 한국은 지금까지 수세 일변도였다 ...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남의 것을 가져다 쓰다 보니 특허 공세에 대책 없이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소송에 적극 맞서는 경우보다 적당한 선에서 특허료를 주고 봉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어느새 국제 특허 시장의 불어린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한국의 기술 특허로 수지는 수출 대 수입이 3 대 7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이런 때에 ETRI가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히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니 어찌 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번쩍 뜨이게 하지 않겠는가. ETRI는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승소할 경우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된 기술인 만큼 승률이 거의 100%라고 한다. ETRI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키아, 모토로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TRI에 박수를 보낸다.

기사3.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SPH America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로 해외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폭염을 식혀주는 빙고'라고 '당당히' 비유한 2008년도 중순 신문기사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IP로 해외 기업을 소송하는 데 대한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의 인식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위의 기사 3에서와 같이 국내 자본으로 설립한 비실시기업인(또는 일명 특허괴물) SPH America가 ETRI 특허를 이용하여 해외 핸드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국내 언론계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 정도의 애국적 반응은 SPH America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모조리 승소한 다음에 나와야 할 반응이겠지만, 수십 년간 특허소송으로 당해온 우리는 해외기업에게 승소하기는커녕 해외기업을 제소한 사실 자체로만도 폭염을 잊을 정도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극히 단순하며 감정적인 애국주의의 발로인 동시에 IP에 대한 국수주의의 표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는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가 지식기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생태계 그동안 구성원들의 이러한 인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적절히 활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는 결국 수출기업에게도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인용한 기사 1이나 2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도 자신의 IP를 허락없이 사용한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이라도 벌릴라치면 ‘불량한 기업’으로 치부되고 따라서 자신의 IP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 특허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나서는 대신 제3자를 고용해야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들이 우리 발명가들의 IP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풍토에서 대학의 교수·발명가, 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이 IP 창출에 열심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생태계 구성원들이 발명가의 IP를 우리 수출기업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도로 간주하는 한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IP를 창출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IP를 창출하려는 발명가들도 곧 멸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IP 창출은 급격히 억제될 것이고 IP 축적량 역시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발명가들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허가 없이 그들의 IP를 도용하는 것은 용인하더라도 해외 기업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충분한 수익을 올리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IP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운영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 2)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의 IP 보호 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IP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강요하는 제도 역시 운영의 묘만 살릴 수 있다면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발명가들은 미국에서만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나 특허침해소송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수천만 불, 수억 불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IP 시장은 역동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180도 반대이다. 최근 특허청 연구 자료에 의하면 건국 이래 우리나라 법원이 특허 침해기업에 선고한 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 6-7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 2-3년은 걸리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설령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거꾸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물어내야 할 벌금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기술을 능동적으로 이전 받거나 양도받아 올 이유가 전무하다. 왜냐하면 일단 특허권자의 기술을 몰래 사용하다가 운이 나빠 소송을 당하고 패소하더라도 물어내야 할 벌금은 경범죄 수준인데, 특허권자로부터 기술을 사오려면 이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의 발명가들은 남들이 뺏히 자신의 IP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한 기업으로서도 남의 IP를 도용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물어내야 할 벌금이 적으니 발명가들의 IP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할 필요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정부에서 IP가 중요하므로 존중하고 보호하자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 및 운영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IP 존중과 보호는 애당초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IP 인프라이다.

### 3) 수출을 억제하는 수출기업 위주의 IP 제도

또한 우리나라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동 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은 “지경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 또는 ...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 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기술을 외국에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세기 초라면 위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기술은 간단히 혼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굳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기반시대의 IP는 이와 180도 틀리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각종 첨단기술은 물론 이종 분야간의 융합기술로 요약되는 작금의 지식기반시대에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견실한 IP를 창출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공지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 중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위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의 발명가가 창출하는 모든 IP를 구속하고 있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규정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동 법의 편향된 운영이다. 왜냐하면 동 법은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IP를 우리 수출기업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 중 상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가 결실을 맺어갈 때가 되면 공교롭게도 정보수사기관과의 교류가 시작되고는 한다. 이 IP를 원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특정 국내 기업이 이 IP를 원하게 되면 10중 8, 9 이러한 IP의 해외수출은 물 건너갔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우리 수출기업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IP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IP를 도용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다손 치더라도 물어야 할 벌금이 경범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발명가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IP를 구입할 우리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설령 있더라도 회장님께서 노하실 일이다.

### 4) 국내로 제한하였으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IP 시장

이 모든 슬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는 '制限'과 '不在'로 인한 '後進性'이란 키워드로 요약됨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은 IP 시장을 국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국내에는 IP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생태계는 '후진성'을 떨치지 못한 채 벌써 10년 동안 지식기반시대를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이 척박한 풍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발명가 대부분이 IP 창출 의욕을 이미 잃었을 것이고, 혹 아직 잃지 않은 발명가들도 IP 창출 의욕을 곧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5.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문제 해결의 절박함

우리나라의 IP 산업은 건국 이래 위의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다. 다행히도 20세기 말까지 계속된 제조업 기반의 산업자본시대에서는 우리의 기형화된 IP 산업이 우리나라

경쟁력에 미쳤던 영향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지식기반시대에서는 IP 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기형화된 IP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많은 나라들, 심지어 선진국들조차 지식기반시대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산업자본시대의 패러다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지식기반시대 자체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IT 기술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 유능한 발명가들을 육성하여 IP 창출을 최대화하도록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류·하류를 정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바로 21세기의 IP 게임이다.

하지만 불행한 점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딱 한가지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온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를 탈피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IP 마인드를 익히고 실행하는 것이다.

## 제6장 선순환적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한 'IP立國'

### 1. 명제

21세기는 지식기반시대이다.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제품이 아니라 지식 재산, 즉 IP이다. 지식기반시대 선진국은 IP를 많이 보유함은 물론 소모하는 IP를 보충할 수 있는, 즉 높은 IP 창출 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따라서 IP 창출은 IP입국의 초석이다.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인 IP를 생산하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구성원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발명가이다. 따라서 발명가가 역동적으로 IP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생태계는 전도가 유망한 생태계인 반면 발명가가 IP를 창출하지 않는 지식기반 생태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이다.

### 2. 'IP立國'을 위한 총체적 목표의 확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기반시대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IP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시대의 우리나라의 목표는 'IP立國'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창출할 수 있는 IP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쉽다. 어려운 부분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뻗속까지 사무치게 익혀온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를 탈피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IP 마인드를 익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총체적 목표를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총체적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IP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하려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IP(물론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를 최대화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IP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우리나라의 IP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구성원인 수출기업(거의 모든 수출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및 강소기업도 포함)의 IP, 대학·연구소의 IP, 중소기업의 IP, 개인의 IP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IP를(그림 3 도식의 좌변에 해당)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IP(그림 3 도식의 우변에 해당) 각각이 최대화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IP를 창출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창출에 몰입하면 저절로 해결될 일이다.



그림 3. 지식재산마인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총 지식재산(IP)을 나타내는 도식

물론 생태계의 특정 구성원이 우량 IP를 창출한 경우 이를 둘러싼 다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열정적으로 IP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기반시대에 우리나라가 뺏속 깊이 익히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할 IP 마인드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기업은 물론 일반 대중의 인식은 아직도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마인드는 무엇인가? ‘수출입국’이 그 대표적인 마인드이며, ‘제조업이 산업의 꽃’이라는 인식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마인드이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위 그림 3의 도식을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로 해석하면 그림 4의 도식을 얻게 된다.

즉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건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마인드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수출역군인 수출기업이 부흥해야만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보유한 IP가(그림 4 도식의 좌변에 해당) 최대화되어야 하며, 그 방법론은 바로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인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IP를(그림 4 도식의 우변에 해당) 각각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즉 그림 4 도식의 우변에서 ‘음수’ 기호가 붙은 모든 항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즉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개인 등이 창출하는 IP를 원천적으로 수출기업에 귀속시키면 만사형통이며, 이는 그림 4 도식의 우변에서 ‘음수’ 기호가 붙은 구성원의 IP 자체를 ‘음수’ 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림 4 도식의 우변에서 ‘음수’ 기호가 붙은 모든 항이 ‘0’이 되건 아니면 이 항들 자체가 음수가 되건 결과는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IP를 산업의 꽃인 수출역군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수출기업이 되는 셈이다.



그림 4. 제조업마인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총 지식재산(IP)을 나타내는 도식

물론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출지에 우리나라 전체의 IP를 ‘올인’ 당한 수출기업의 IP 보유량은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쟁력 역시 급격히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발명가, 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의 ‘깨달음’이다. 자신들이 창출한, 자신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IP가 자신들의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수출기업에 헐값에 양도되는 것을 목도한 발명가들은, 이러한 과거를 잊고 다시 또 IP 창출에 몰두할 만큼 미련한 부류가 아니다. 지식기반시대의 발명가들은 영민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모를 당한 발명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는 더 이상 IP를 창출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IP를 창출하더라도 이를 대학·연구소에 신고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인 IP의 생산자인 발명가를 말살하고 IP의 소비자인 제조업만을 양성하는 비이성적 정책이다. 산업자본시대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적이 제품의 생산이었던 것처럼 지식기반시대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계획은 바로 IP 창출이 목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는 제조업을 기피해야 하고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도구로서의 제조업은 지식기반시대에도 당연히 필요하다. 단 지식기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IP 창출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지향하여야 한다. 즉 우리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 창출하고 중류에서 권리화한 우수한 IP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국내 제조업(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재정비하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상당한 부분이 상류의 발명가들에게 환원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IP를 역동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적 지식기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총체적 목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IP 및 IP 창출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발명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IP로부터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 IP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일단 총체적 목표를 확립한 후에는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의 IP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IP 인프라를 구축하며 생태계 종류 및 하류를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각 단계 및 IP 인프라에 대한 개선 방안은 차후 논의할 예정이다.

### 3. 최우선 과제는 생태계 상류의 최적화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은 발명가가 IP를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복해지는 정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기반 생태계는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시대에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볼 때 정부야말로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패러다임을 버리고 지식기반시대의 IP 패러다임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시대의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할 막중한 책임을 진 당사자이다.

수출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종업원·발명가가 IP를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복해지도록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종업원·발명가가 IP를 창출하면 기계이 기업에 신고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평생 남의 IP를 빌려 쓰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기술이전조직인 TLO가 대학의 교수·발명가와 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들을 IP를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복해지는지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TLO가 교수·발명가, 연구원·발명가의 수족이 되어 IP 상용화 및 IP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전향적으로 투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대학·연구소는 필연적으로 지식기반시대의 2류·3류 구성원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4. 차선 과제는 IP 인프라의 재정립

제아무리 우리가 IP 창출이 중요하니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인 IP를 생산하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구성원인 발명가가 역동적으로 IP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산업자본시대 패러다임에 고착화된 우리나라의 IP 인프라를 IP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아직도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태계 구성원의 IP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가 지식기반시대의 IP 마인드로 재정립되지 않는 한, IP를 존중하는 인프라는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발명가는 IP를 창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지식기반 생태계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앞서 설명한 총체적 목표를 인지하고 이에 알맞도록 IP 인프라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즉 지식기반시대의 우리나라 목표는 'IP立國'이므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보유하고 창출할 수 있는 IP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 방법은 우리나라의 수출역군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IP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각 구성원이 보유하고 창출할 수 있는 IP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들이 IP의 중요성을 깨닫고 IP 창출이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는 우리는 지식기반시대를 계속 표류하는 처지를 면할 수 없다.

두 번째 과제는 정부·국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IP 활용 시장을 국내로 제한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 중 급선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기술유출방

지법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한 IP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그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국내에 공정한 IP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IP 활용 시장을 국내로 제한하는 제도는 IP 창출 그 자체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동 법이 수출기업 위주로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발명가들의 IP 창출 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 법률은 현실적 IP 활용을 억제함으로써 생태계 하류의 IP 사업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폐지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 해외 기술이전은 정부 허가 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법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IP 시장을 재건하는 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특허침해소송을 통하여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국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승소하더라도 보상액보다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원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대학·연구소·개인의 특허를 도용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즉 타인의 특허를 실수로 또는 고의로 침해한다 하더라도 승소해봐야 손해라는 것을 아는 특허권자는 알아서 스스로 소송을 포기할 것이고, 일부 끈질긴 특허권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설령 패소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벌금이 경범죄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앞장서서 침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허법을 운영해온 관행을 탈피하고 특허권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도록 특허법을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IP 시장 재건의 초석이 될 것이다.

### 5. 후속 과제는 생태계 중류 및 하류의 최적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류·하류 없는 지식기반 생태계는 기형적으로라도 구축이 가능하지만, 상류 없는 지식기반 생태계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를 정비하려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시작된 후에나 가능한 것이 생태계 중류·하류의 육성이다. 그 다음 단계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하류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IP가 생태계 상류·중류·하류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하류를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나 법을 입안할 때 항상 주의하여야 할 점은 과연 이러한 제도나 법이 생태계 상류 및 IP 인프라에 미칠 영향이다. 즉 새로운 제도나 법이 생태계 상류의 발명가들의 IP 창출 의욕 제고에 배치된다면 이는 지식기반시대에 알맞은 제도나 법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IP이고 지식기반 생태계는 IP를 먹으며 발전한다. 따라서 생태계 중류·하류 및 IP 인프라를 육성하더라도 수단이 목적을 범하는 우를 저지르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 6. 제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환영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똑똑한 발명가들로부터 백안시당하는 정책인가? 내가 제안하는 경영 방식은 우리나라 종업원·발명가들이 환영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똑똑한 종업원·발명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방식인가? 내가 운영하는 TLO는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의 교수·연구원 발명가들이 인정하는 TLO인가 아니면 똑똑한 교수·연구원 발명가들로부터 무시당하는 TLO인가?

왜냐하면 지식기반시대의 발명가들은 영명하며, 영명한 발명가들은 정책, 경영 방식, 운영을 포함한 각종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IP를 창출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아니면 불리한 지를!

다음 호에 계속



**심영택**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겸 개인발명가  
Intellectual Ventures Korea 지사장  
미국 특허 로펌 Fish & Richardson 및 Pennie & Edmonds 근무  
미국 Duke 대학교 공학박사 및 법학박사  
KAIST 화학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학사

#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절차



- I. 서론
- II.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절차
  - 1. 우리나라 특허소송 개요
  - 2.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
  - 3. 특허무효 방지를 위한 특허권자의 방어수단
- III. 미국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절차
  - 1. 미국의 연방법원
  - 2. 미국 특허소송 개요
  - 3. 미국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
    - (1) 미국법원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
      - 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유효성 판결
      - 나. 특허무효확인소송에서의 특허유효성 판결
    - (2) 미국특허청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
      - 가. 일방당사자에게 재심사
      - 나. 쌍방당사자에게 재심사
    - (3) 특허무효주장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수단
- IV. 결론

### 3. 미국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

미국에서 특허유효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 및 미국특허청이다. 이하에서는 미국법원 및 미국특허청에서의 특허 유효 여부 판단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 (1) 미국법원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

미국법원이 특허유효성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거나, 침해소송에서의 반소 형태로 해당특허권에 대한 특허무효 확인소송<sup>10)</sup>을 제기하는 때이다.

##### 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유효성 판결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방어수단으로 특허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법원은 특허의 무효여부에 대해 제한 없이 판결하게 된다. 다만, 미국특허법은 미국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부여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는 명문의 규정<sup>11)</sup>을 두고 있으므로, CAFC는 적어도 명확하고 확신할 수 있는(clear and convincing) 무효증거로 피고의 무효주장을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이 있는 경우, 다른 특허침해소송에서 이전의 판결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이 문제는 결국 법원의 특허무효여부 판결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1936년의 연방대법원은 *Triplett v. Lowell* 판결<sup>12)</sup>에서 먼저 이루어진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여부 판결이 이후의 다른 소송에서 특허권자에게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71년 *Blonder-Tongue Laboratories, Inc. v. University of Illinois Foundation* 판결<sup>13)</sup>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일단 무효로 판결된 특허청구항에 대해 특허권자는 그 후의 침해소송에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특허가 무효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특허권자가 최초의 소송에서 절차상, 실질상, 증거상 적절한 기회(a fair opportunity procedurally, substantively and evidentially to pursue his claim the first time)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하고 있다. 물론 최초의 소송에서 적절한 기회를 갖

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초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효를 갖는다.

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 판결이 있으면 대세효를 갖게 되는데, 그와 같은 판결이 있음을 제3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국특허법 제290조는 침해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면 1개월 이내에 당해 법원이 특허청에 소송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발명자의 성명, 소송대상이 되는 특허번호를 통지하고,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때에도 역시 1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통지를 수령한 미국특허청은 해당 특허파일에 소송내용을 동봉함으로써 제3자가 특허파일 열람시 소송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나. 특허무효확인소송에서의 특허유효성 판결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는 반소 형태로 특허무효 확인판결(Declaratory Judgement)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허무효 확인소송은 현실의 분쟁(actual controversy)이 있는 경우 확인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규정(28 U.S.C. §2201-2202)<sup>14)</sup>에 의거한다.

그렇다면, 침해소송이 없는 경우에도 침해의심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침해소송이 없더라도 위 법률규정에 따라 현실의 분쟁(actual controversy)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연 현실의 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CAFC는 *EMC corp. v. Norand Corp.* 판결<sup>15)</sup>에서 현실적 분쟁이 있는 경우란, 첫째 확인소송의 원고가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특허권자의 행위가 원고측에게 객관적으로 상당한 우려(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원고

10) Declaratory Judgement, 28 U.S.C. §2201-2202

11) 미국특허법 제282조: A patent shall be presumed valid. (이하 생략).

12) *Triplett v. Lowell*, 297 U.S. 638 (1936).

13) *Blonder-Tongue Laboratories, Inc. v. University of Illinois Foundation*, 402 U.S. 313 (1971).

14) Declaratory Judgement, 28 U.S.C. §2201-2202

15) *EMC Corporation v. Norand Corporation*, 89 F.3d 807 (1996)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였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sup>16)</sup>

(2) 미국특허청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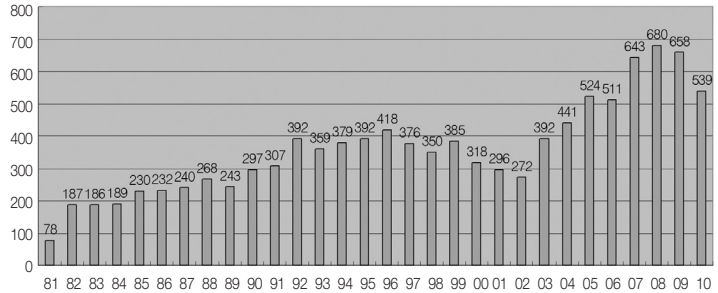
미국특허청이 특허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재심사(Reexamination) 제도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무효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효심판은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비해, 미국의 재심사는 제3자가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도 자신의 권리가 유효한 것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심사는 크게 일방당사자계(Ex Parte) 재심사와 쌍방당사자계(Inter Partes) 재심사로 구분된다.

가. 일방당사자계 재심사

일방당사자계 재심사는 1981년 도입되었는데 누구든지(특허권자 포함) 청구할 수 있으나, 심리절차에 특허권자가 아닌 청구인(Requestor)은 제한적인 참가만이 가능하며 그 명칭을 일방당사자계라 한다. 일방당사자계가 도입된 1981. 7. 1.부터 2010. 6. 30.까지 재심사 청구건수는 총 10,78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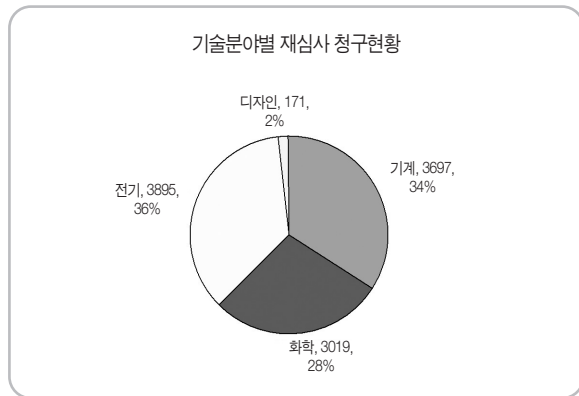
〈일방당사자계 재심사청구 현황〉

일방당사자계 재심사 청구건수  
( '81. 7. 1. - '10.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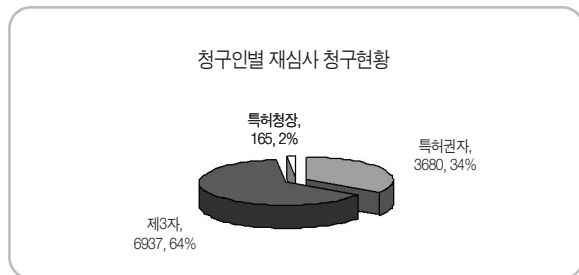
기술분야별로는 기계분야가 34%(3,697건), 화학분야 28%(3,019건), 전기분야 36%(3,895건), 그 외 디자인분야가 2%(171건)이다.

기술분야별 재심사 청구현황



일방당사자계 사건의 34%(3,680건)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가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한 것인데 비해, 64%(6,937건)는 제3자가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 청구한 것이고, 나머지 2%(165건)는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청구<sup>17)</sup>한 것이다. 따라서 일방당사자계 재심사 청구는 제3자가 특허권을 무효시키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별 재심사 청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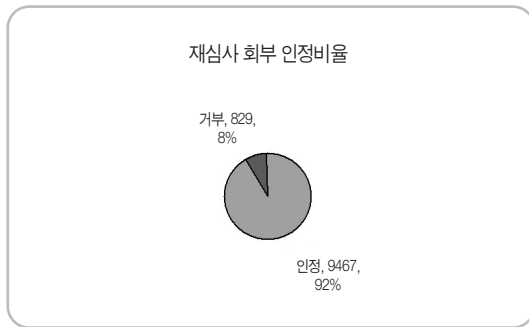


16) This court has developed a two-part inquiry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n actual controversy in suits requesting a declaration of patent non-infringement or invalidity. First, the plaintiff must actually produce or be prepared to produce an allegedly infringing product. Second, the patentee's conduct must have created an objectively reasonable 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that the patentee will initiate suit if the activity in question continues."

17) 특허청장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는 일반적인 공공정책 문제가 이슈화되고 타인에 의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방당사자계 재심사청구 중 침해소송과 관련 있는 사건은 3,443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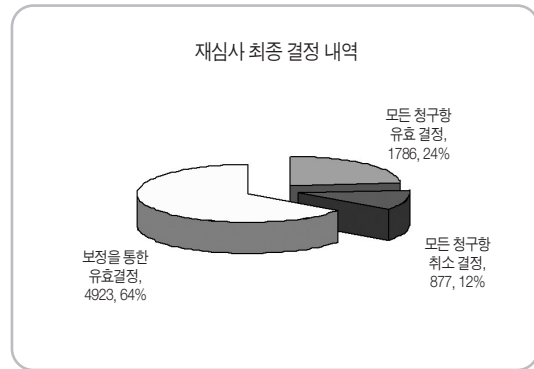
재심사가 청구되면, 심사관(최초결정한 심사관은 배제)은 재심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이 결정은 특허성에 관한 결정과는 무관하다. 심사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선행기술자료)가 “특허성에 관한 실체적인 의문(SNQ,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을 일으키는지 판단하여, 검토결과 SNQ가 없으면 재심사 회부 거부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청구된 사건 중 92%(9,467건)가 재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grant) 되었고, 나머지 8%만이 재심사 회부가 거부(denial)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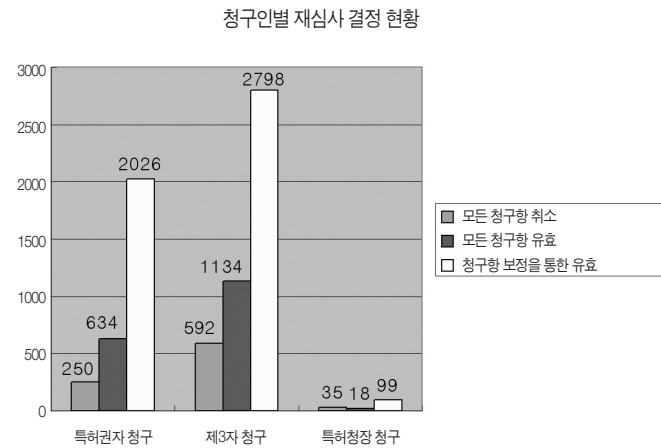
재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실체심사 결과 특허청구항이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되어야 하므로 특허취소(cancel)를 결정한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확인(confirm) 결정을 하게 되며, 특허청구항의 보정을 통해 유효하게 된 경우에도 보정에 의해 유효하게 되었음을 표시한다(patentable as amended). 이는 재심사 증명서(Reexamination Certificate)를 발행함으로써 확정된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일방당사자계 재심사 증명서가 발행된 7,586건을 분석하면 12%(877건)는 모든 청구항을 취소(cancel)하는 결정, 24%(1,786건)는 모든 청구항이 유효(confirm)하다는 결정, 나머지 64%(4,923건)는 보정을 통해

청구항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전체적으로 88%가 유효하다는 결정이다.



청구인별로 분석하면, 특허권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91.4%가 특허유효 결정, 제3자가 청구한 경우에도 87%가 특허유효결정이 내려졌다.



일방당사자계 재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25.4개월이다.

당사자는 최종적인 특허청의 조치(Final Office Action)에 대해 심판(Appeal)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CAFC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1999. 11. 29. 이후의 재심사의 경우에는 CAFC에만 항소할 수 있다.<sup>18)</sup>

18) 35 U.S.C. 14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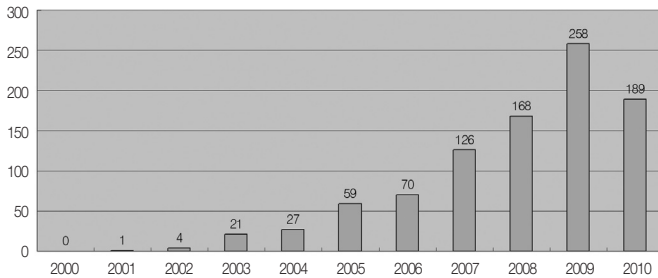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일방당사자계 재심사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 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08	'09	'10
불복심판 청구건수	86	119	137
불복심판 처리건수	40	109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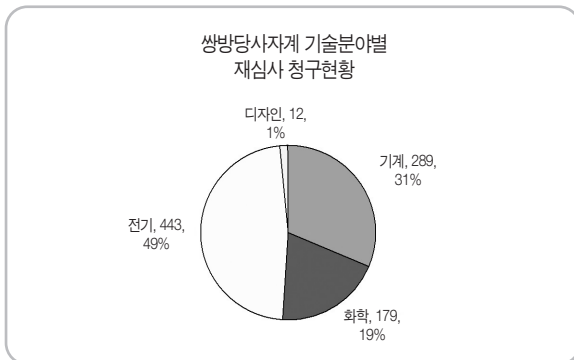
나. 쌍방당사자계 재심사

쌍방당사자계 재심사는 1999년 도입되었는데 특허권자는 청구할 수 없고, 제3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심리절차의 전 과정에 쌍방당사자(특허권자와 청구인)가 모두 참가할 수 있어 쌍방당사자계라 부른다. 1999년 이후 청구된 쌍방당사자계 재심사 청구는 총 923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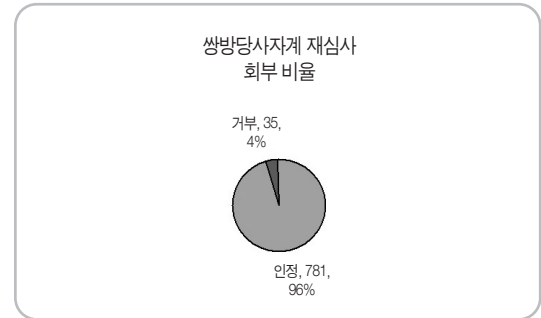
쌍방당사자계 재심사 청구건수  
( '99. 11. 29. - '10.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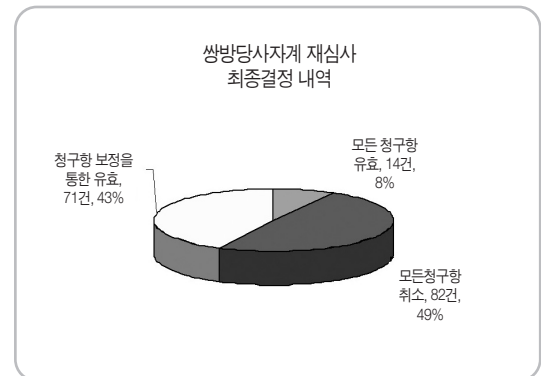
쌍방당사자계 재심사를 기술분야별로 나누면 기계분야가 31%(289건), 화학분야 19%(179건), 전기분야 49%(443건), 디자인분야가 1%(1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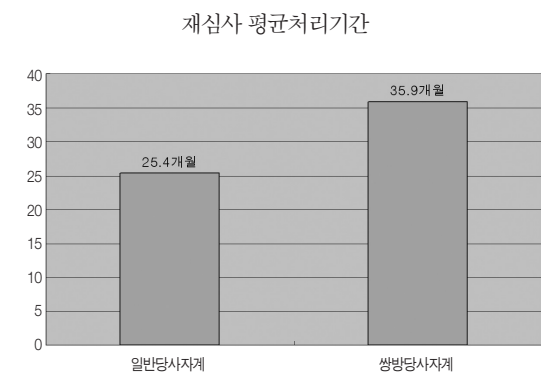
쌍방당사자계 재심사청구 중 96%(781건)가 재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grant)되었고, 단지 4%만이 재심사 회부 거부되었다.



199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쌍방당사자계 재심사 증명서가 발행된 167건을 분석하면 49%(82건)가 모든 청구항을 취소(cancel)한다는 결정, 8%(14건)가 모든 청구항이 유효(confirm)하다는 결정, 나머지 43%(4,923건)가 청구항의 보정을 통해 유효하다는 결정으로, 전체적으로는 49%의 무효결정(cancel)이 내려졌다.



쌍방당사자계 재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35.9개월이 소요된다.



최근 3년간 쌍방당사자계 재심사에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한 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08	'09	'10
불복심판 청구건수	4	15	36
불복심판 처리건수	1	10	24

지금까지의 재심사청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방당사자계	쌍방당사자계
도입시기	1981년	1999년
청구인	누구든지(특허권자 포함)	특허권자를 제외한 제3자
청구건수(~ '10.6.30) (연평균건수)	10,782건(359건)	923건(84건)
기술분야별 청구비율 (~ '10.6.30)	기계 34% 화학 28% 전기 36% 디자인 2%	기계 31% 화학 19% 전기 49% 디자인 1%
침해소송과 관련된 청구비율(~ '10.6.30)	32%(3,443건)	69%(638건)
재심사 회부 비율 (~ '10.6.30)	92%(9,467건)	96%(781건)
최종결정내역 (~ '10.6.30)	모든 청구항 유효 24% 보정을 통한 유효 64% 모든 청구항 무효 12%	모든 청구항 유효 8% 보정을 통한 유효 43% 모든 청구항 무효 49%
평균처리기간(~ '10.6.30)	25.4개월	35.9개월
재심사결정불복 심판 청구건수	86('08)→119('09)→ 37('10)	4('08)→15('09)→36('10)

### (3) 특허무효주장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수단

제3자가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를 주장하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유효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방어방법 중 하나가 미국특허청에 제출하는 일방당사자계 재심사청구임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재심사청구 외에 특허권자는 미국특허청에 특허권의 재발행(Reissue) 출원, 특허권의 포기(Disclaimer), 특허권의 정정증명(Correction Certificate)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정정증명(Correction Certificate)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특허명세서를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며, 이는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침해소송에서 특

허 유효성을 둘러싼 방어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권의 포기는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에서 일부의 특허청구항의 무효사유를 치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되는 특허청구항만을 포기함으로써 해당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허권을 포기하는 시기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해당 소송의 개시 전까지 무효인 특허청구항에 대해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후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sup>19)</sup>

재발행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허정정심판과 유사한 제도로, 원래의 특허가 기만적 의도 없이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로 인하여 특허가 작동하지 않거나(inoperative) 무효(invalid) 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발행출원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고 재등록(reissue)을 통해 무효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발행출원은 대체로 ① 특허청구항의 용어를 잘못 선정함으로써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경우, ② 명세서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거나, ③ 외국우선권주장을 안하거나 잘못된 경우, ④ 출원인이 계속 중인 출원을 인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인용한 경우 제출한다.

한편, 원특허의 특허청구항의 용어가 잘못 선정되어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재발행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원특허의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재발행특허의 존속기간

19) 35, U.S.C. 288조

Whenever, without deceptive intention, a claim of a patent is invalid, an action may be maintained for the infringement of a claim of the patent which may be valid. The patentee shall recover no costs unless a disclaimer of the invalid claim has been entered at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suit.

은 원특허의 잔여기간이다. 재발행특허가 등록되면 원특허의 포기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재발행특허와 원특허에 공통적으로 있는 특허청구항에 관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은 당연히 원특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청구범위가 확장된 재발행특허에 대해서는 재발행특허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침해행위가 된다.<sup>20)</sup>

우리나라의 특허정정심판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정정청구는 할 수 없는 점에서 미국의 재발행제도와 차이가 있다.

최근 5년간 재발행출원 건수를 분석해보면, 재발행출원은 매년 평균 1천여 건이 제출되고 있으며, 등록률은 5년 평균 42%이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연평균)
재발행 출원건수	1,143	1,204	1,057	1,080	961	5,445 (1,089)
재발행 등록건수	195	500	548	662	398	2,303 (461)
등록률	17.1%	41.5%	51.8%	61.3%	41.4%	42.3%

#### IV. 결론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의 중심기관은 특허심판원이다.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침해소송 중 당사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재판부가 무효항변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설이 원칙이나, 다만 특허권이 공지공용의 기술인 경우(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결 전이라도 법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권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중심기관은 침

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침해소송 계속 중에 침해의 심자(피고)가 방어수단으로 특허무효의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반소로서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무효여부 및 침해여부를 제한없이 심리하게 된다. 한편 하나의 침해소송에서 무효로 판결된 특허청구항에 대해 특허권자는 그 후의 다른 침해소송에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특허가 무효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이다.

미국특허청이 특허무효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재심사(Reexamination) 제도이다. 재심사청구는 특허권자도 자신의 권리가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무효심판과는 차이가 있다. 재심사제도는 일방당사자계 재심사와 쌍방당사자계 재심사로 구분된다. 일방당사자계는 특허권자도 포함하여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1981년 도입되었는데 반해, 쌍방당사자계는 특허권자를 제외한 제3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1999년 도입되었다. 1981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일방당사자계 재심사를 통해 무효된 특허는 877건으로 전체 결정(7,586건)의 12%이다. 쌍방당사자계 재심사(1999년 ~ 2010년 6월)를 통해 무효된 특허는 82건으로 전체(167건)의 49%에 달한다.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제3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미국특허청에 자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려달라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권의 재발행(Reissue) 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의 포기(Disclaimer) 또는 특허권의 정정증명(Correction Certificate)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많이 이용되는 재발행출원은 연간 1천여 건이 제출되고 있으며, 등록률은 42%이다.



20) 35 U.S.C. 252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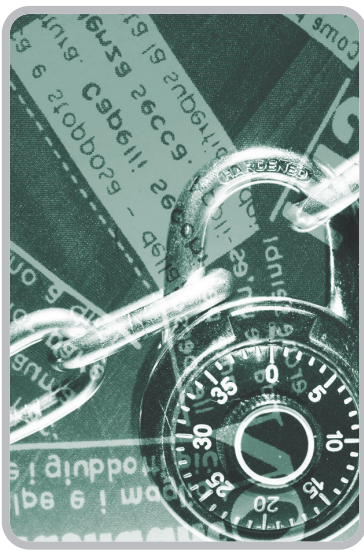
- 분할출원이란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조 1항)
- 이러한 분할출원제도는 1디자인 1등록출원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의 거절이유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일부 디자인의 거절이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중요한 지위를 가지며, 각각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인정하여 선출원의 지위확보 등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조 2항) 따라서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 부등록사유,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 판단 시에 원출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출원은 별개 독립의 출원이기 때문에 원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등 절차상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으며, 전혀 별개의 출원으로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날에 2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1항)
- 그러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2항)



#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바뀐다



##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

### 1) 개정 이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미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창작자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공지증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2) 개정 내용

전문기관의 업무에 미등록 디자인의 공지증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공지기관에 의한 최초 공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현 행	개 정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미등록디자인의 공지증명(公知證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및 미등록디자인의 공지증명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미등록디자인을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 등을 통하여 일반에 최초로 공개하는 때에 그 미등록디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0조제1항)

##### 1) 개정 이유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확대되는 주요국 추세<sup>22)</sup>와 설문조사 결과<sup>23)</sup>를 반영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였고, 헤이그협정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존속기간의 기산점 변경은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복수디자인제도의 개선<sup>24)</sup>으로 심사·무심사 품목에 상관없이 100개까지 복수디자인출원을 허용하는 한편 일부거절·일부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디자인마다 설정등록일이 다르게 될 수 있어 현행처럼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 산정시 하나의 출원임에도 디자인마다 존속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2) 개정 내용

현재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인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였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종기의 기산점을 설정등록일에서 출원일로 변경하였다.<sup>25)</sup>

현 행	개 정
<p>第40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了日로 한다.</p> <p>② 正當한 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設定登錄된 경우에는 第1項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디자인권의 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p>	<p>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② 正當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p>

#### 4.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 (1) 디자인등록출원 보완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 1) 개정 이유

현재 출원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당해 출원서류를 반려 조치(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함으로써 출원인은 하자가 있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22)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하에서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5년이며,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15년에서 20년으로 존속기간을 확대하였다.

23) '08.8.21~29에 진행된 2007년도 디자인 다출원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찬성하였고,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그 중 77.9%가 20년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위의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 참조

25) 우리나라 등록디자인의 평균 존속기간은 51.7개월이며 10년 이상 존속한 건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존속기간 연장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 사례들(삼성전자의 LCD TV '보르도', LG전자의 '초콜릿폰' 등)이 나오고 있고, 각 분야에서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은 그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되었다. 또한, 헤이그협정의 가입을 위해서는 출원일 인정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2) 개정 내용

제1항에서는 출원일 인정에 관한 요건을, 제2항에서는 절차보완명령의 절차를, 제3항에서는 출원인의 절차보완서 제출절차를, 제4항에서는 절차보완서 제출의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항에서는 절차보완서 미제출시 당해 디자인출원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현 행	개 정
(신설)	<p>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있지 않거나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하게 적힌 경우</li> <li>3. 도면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한글로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일부 디자인만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한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인정한다.</p> <p>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부적법한 출원으로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지 않은 그 일부 디자인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p>

(2)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안 제11조의2 및 제26조제4항 등)

1) 개정 이유

복수디자인출원제도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 절차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3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현재 무심사 품목에 한해 20개까지 복수로 출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단지 출원요건 사항으로 심사·무심사등록출원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할 예정인 헤이그협정에서는 같은 로카르노분류(class)에 한해 100개까지 복수출원을 허용<sup>26)</sup>하고 있어 우리 법과의 조화가 필요하였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수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거나 출원공개를 청구할 경우 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해서 청구해야 하며,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비밀청구나 출원공개 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디자인에 대한 거절 결정만 가능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2) 개정 내용

심사·무심사등록출원 구분없이 같은 로카르노분류(class)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출원인이 복수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비밀청구, 출원공개청구 또는 우선심사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절결정(또는 등록결정)도 일부거절결정(또는 일부등록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26) 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7조(3)(v)

현 행	개 정
<p>第11條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p> <p>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p> <p>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出願할 수 있다.</p> <p>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p> <p>第13條(비밀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請求는 出願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18조의2(보정각하)</p> <p>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第23條의2(出願공개)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p> <p>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가 같은 것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1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8조의2(보정각하)</p> <p>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p> <p>제23조의2(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p> <p>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p> <p>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신 설)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결정의 이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가 있으면 그 일부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第28條(디자인등록결정) 審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3) 직권보정제도의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1) 개정 이유

현행 제도하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오탈자 등과 같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 발송을 통해서만 수정을 할 수 있어 디자인등록요건과 무관한 단순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명백한 오기 등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디자인등록공보의 정확성을 높여 거래업계 등의 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심사관이 직권보정 후 보정된 내용에 대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28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물품의 명칭 또는 그 물품류의 구분에 명백히 잘못 적힌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31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적힌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의 개선(안 제8조제2항 등)

1) 개정 이유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신규성 상실사유(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일률적으로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가혹한 경우가 있으며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여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2) 개정 내용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시에는 그 주장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증명토록 하였다.<sup>27)</sup>

현 행	개 정
<p>第8條(新規性喪失의 例外)</p> <p>② 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日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신규성 상실의 예외)</p> <p>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 27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거나 디자인등록 후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72조의10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p>
<p>제18조(출원의 보장과 요지변경)</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장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출원의 보장과 요지변경) &lt;삭 제&gt;</p>
<p>第19條(出願의 分割)</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출원의 분할)</p> <p>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27)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출원인을 보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를 보건대 현행 규정은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시기를 지나치게 한정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규성 상실로 거절되지 않으며,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하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기만 하면 공개행위 등 신규성 상실 사항은 그 디자인의 공개행위로 보지 아니하므로 출원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헤이그협정에는 조약 우선권제도, 전시회 우선권제도는 있으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규정은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시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인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한편, 한-EU FTA 협정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한-EU FTA 이행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검토결과 통보, (변사 117-423(2010.6.15))

(5) 재심사 청구사유의 확대(안 제27조의2)

1) 개정 이유

현재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의 보정'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에도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사항 모두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2009년 7월 1일 재심사제도 도입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던 것을 제18조제5항 단서에 되살리는 개정을 하였다.

현 행	개 정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의14제1항에 따라 제67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제67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보정할 수 있다.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보정할 수 있고, 제67조의3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5. 기타 개정사항

이상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동일인의 출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고(안 제5조제3항)<sup>28)</sup>, 심사의 순위에 관한 현행 시행규칙 규정(제16조)을 법에 반영하였으며(안 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헤이그협정 가입을 대비하여 도면에 사진을 포함<sup>29)</sup>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5조제3항 등)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법제처에서 모든 법령에 대해 범정부적

28) 동일 출원인 간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디자인 또는 부분적인 디자인의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는 제품 전체의 디자인이 먼저 완성되고 그 후에 개개의 구성부품이나 부분적 조형에 관한 상세한 디자인이 결정되며,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에 있어 독자성이 있고 창작성이 높은 부분이 모방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그 부분을 부품이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자신의 제품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일인에 대해서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기 전까지로 출원시기의 제한이 있으므로 권리의 실질적인 연장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동일 출원인 간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9) 헤이그협정 제5조(1)(iii), 공동규칙 제9조(1), 시행세칙 제401조(a)에 따르면, 하나의 동일인 국제출원에 흑백 또는 컬러로 표현된 사진과 그래픽 표현물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도면과 사진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디자인보호법 전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다듬는 작업까지 포함되었다.

현 행	개 정
<p>第5條(디자인등록의 요건)</p> <p>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개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제25조의4(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p> <p>③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등록공개가 되거나 제23조의6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도면은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제25조의4(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 ①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li> <li>제23조의2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 6. 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 등 - 부칙 -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조문 중 일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2년에 시행되는 사항들은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기준, 관련디자인 제도, 복수디자인제도의 개선 등과 같이 그 파급효과가 큰 것들로서 시행시기의 조정에 따른 국민 혼란의 최소화 및 법률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정비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서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적용례, 심판청구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3항,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4제1항, 제25조의4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호·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제28조 단서, 제28조의2,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6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것부터 적용한다.</p> <p>② 제2조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9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제1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4제1항, 제25조의4제3항, 제26조, 제27조의2제1항, 제28조 단서,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제6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것부터 적용한다.</p>

부 칙

제3조(심판청구 시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사항	관련조문	시행일	
① 물품에 대한 규정 보완	§2-i, §9①iii, §9②i, §72의3①iv		○
② 디자인 창작요건 강화	§5②, §26②i	○	
③ 도면에 사진을 포함	§5③, §9③, §18①, §43①2, §62②iv	○	
④ 관련디자인제도 도입	§7, §9①iv, §9①v, §18②, §23의4①, §26②iii, §42, §46①,⑥, §47①단서, §47⑥, §68③, §68④,⑤삭제		○
⑤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절차개선	§8②, §18③(삭제), §19②단서		○
⑥ 출원일 인정요건 신설	§9의2		○
⑦ 복수디자인제도 개선(선택적 비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신청, 심사중지, 우선심사, 거절이유통지, 디자인등록결정)	§11의2, §13①단서, §18의2③단서, §23의2①단서, §25의4③, §26④, §28단서		○
⑧ 보정시기 보완	§18⑤단서 후단	○	
⑨ 디자인공시증명제도 도입	§25의2	○	
⑩ 심사순위에 대한 원칙규정 신설	§25의4①,②	○	
⑪ 재심사청구사유의 확대	§27의2		○
⑫ 심사관 직권보정제도 도입	§28의2		○
⑬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40		○
⑭ 보호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43②		○

III. 결론

이상에서 특허청이 마련한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번 개정법률안은 올 하반기에 있게 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최근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현실적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특허청의 법·제도·인프라 혁신의 2단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의 3단계 전략은 내년에 있게 될 디자인 국제출원시스템의 도입과 선진 법체계 구축을 반영한 디자인 보호법 전면 개정이 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3단계 전략의 완성을 통해 디자인 분류와 실체적·절차적 규정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정비를 통해 디자인 창작자 등 고객에게 매력적인 디자인제도로 혁신함으로써 향후 2년 후에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경쟁국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디자인제도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대한민국 디자인제도의 미래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의 지속적인 창작노력과 기업들의 디자인경영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디자인보호 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디자인제도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서기관  
 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제4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발

**계약각서 [법일반]** • 날인증서의 작성 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합의의 조항을 기재한 각서, 사단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정한 규약을 의미할 때도 있음.

**계약 [법일반]**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합의. 국내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지만, 영미법에서는 약인(consideration)이 필요조건임.

**계속출원 [특허]** • 미국특허출원절차로서 제1출원과 동일한 발명의 내용을 제1출원이 특허청에 서류 중에 재출원하여 원출원일을 인정받으며 다시 심사를 받는 절차. 제2출원은 제1출원과 동일하여야 하고,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계속적인 출원 [특허]** • 미국특허출원 절차로서 모출원에 대한 두 번째 출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및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이 있다. 계속적 출원의 방식에는 재출원(refiling) 방식과 출원포대를 계속하는 방식(file wrapper continuation)이 있으며 후자는 CPA(continuing patent application)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CPA로 처리하려 함은 미국 특허청의 행정업무 부담의 경감차원이다. 2000년 5월 29일자부터는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음.

**계속적 사용권 [지재권일반]** • 일정기간 또는 부정기간 동안 지재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계속심사청구 [특허]** • 2000년 5월 29일자부터는 발효된 미국 특허심사제도. 출원이 최종 거절, 항소 또는 특허결정 통지 하에 있더라도 청구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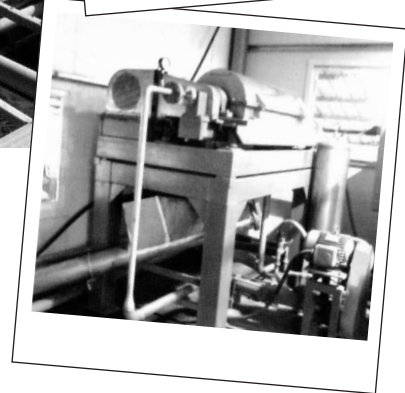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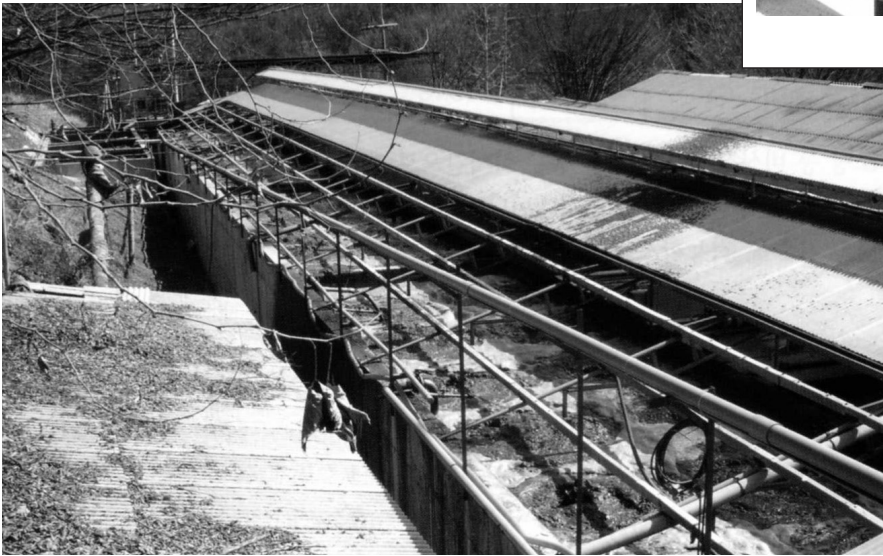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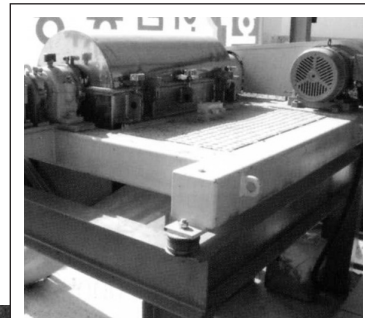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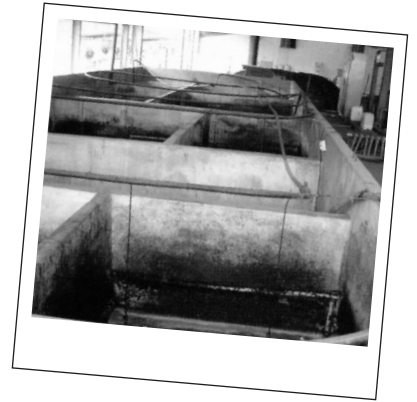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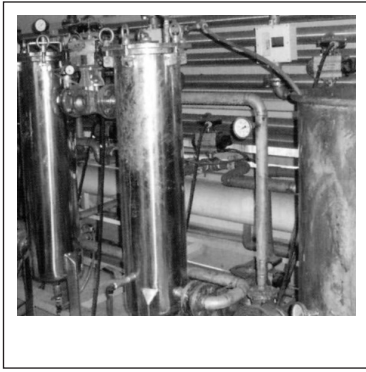
식

#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고효율 축산 폐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방법



(주)에코멤브레인





(주) 에코멤브레인은 분리막을 이용한 Eco System 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Eco System은 다년간의 분리막장비 제작 및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하였으며 각각의 수질과 처리목적에 따른 적절한 전처리, 후처리, 꼭 맞는 분리막, 최적의 운전조건 등을 포함한 종합 엔지니어링의 산물이다.

### Eco System을 만드는 사람들

분리막 설비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에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주)에코멤브레인의 기술진들은 최적의 시스템 구성을 위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분리막 설비 제작 경험과 분리막 적용성 및 전·후처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집어내며 이러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구에 꼭 맞는 기술 컨설팅과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한다.

###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분리막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할 때 그 성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 (주)에코멤브레인의 스텝은 이해하기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운전자의 이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충분한 시운전 시간을 통해 운전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 또한 철저한 A/S와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의 필요한 부분을 먼저 알아가 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Eco System 컨설팅

상담요청 → 수질성상분석 및 목표설정 → 적용 분리막 선정을 위한 lab test → Flux, 압력, 온도 등 설계 factor 수집을 위한 파일럿테스트 →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 시스템 결정 및 제안 → 시스템 제작 → 시운전 및 운전자 교육 →

## I.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특허

	등록		
	국내	해외	계
특허	7		7
실용신안			3
디자인	3		
합계	10		10

### 과제(부설 연구소)

기관명	년도(기간)	과제명	비고
중소기업청	2004 (1년)	필터시스템 개발	외 1건
중소기업청	2005 (2년)	음식물 탈리액처리	외 1건
경기환경기술센터	2009 (진행 중)	음식물 건조기개발	외 2건

## II. 사업화 성공기술 개요

권리명칭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고효율 축산 폐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방법					
출원번호	10-2007-0071512				등록번호	
제품적용 실적	적용 제품수	7품목	총 매출 실적	7,300백 만 원	국내매출	7,300백만 원
					해외매출	-
발명(고안)의 요지	본 기술은 전처리 공정장비, 생물학적 처리 공정장비, 가압부상 공정장비 및 막분리 공정장비로 구성된 장치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처리장비로는 스크린, 유량조정조, 4S 혐기여과조, 반응조 및 원심고액분리기를 포함하고, 생물학적 처리 공정장비로는 제1무산소조, 제1폭기조, 제2무산소조 및 제2폭기조를 포함하고, 가압부상공정장비로는 생물학적 처리수조 및 가압부상조를 포함하고 막분리 공정장비로는 정밀여과(UF)유입탱크, 정밀여과 모듈, 역삼투(RO) 유입탱크 및 역삼투막 모듈을 포함하는 축산폐수 처리장치 및 상기 장치 등을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주)동 매출실적은 본 기술의 사업화부터 2009년초 현재 누적임.

### III. 기술이전 · 기술개발 과정

본 기술은 2007년 7월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명“축산폐수처리를 위한 고효율 축산 폐수 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기술이전계약을 하여 사업화한 기술이다.

#### 개발 배경

축산폐수는 고평도의 유기성 폐수로서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리 상태로 수계에 방류하면 하천, 호수 등의 부영양화를 가속화시켜 상수원수로서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또한 고평도의 난분해성 물질, 악취물질, 질소 및 인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수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성상은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취급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에 따라 발생농도와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축사의 종류, 구조, 분과 노의 분리여부, 축사청소방법, 세척수량, 소독 등에 따라 발생특성이 크게 달라지고, 또한 축산폐수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고평도 유기물 및 질소성분, 과도한 SS(부유물질), 폐수의 성상과 특성이 농가별로 상이하어 표준화된 처리방법이 없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또한 축산분뇨의 관리 측면에서는 악취 발생으로 민원 발생이 빈번하고, 분뇨, 퇴비의 자원화시 노천야적, 악취 발생으로 환경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축산폐수의 처리로 해양투기는 런던협약과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그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농가에 있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슬러지의 발생량이 적고, 유기물질 및 질소, 인의 제거 능력이 우수하고, 유지관리 및 처리비용이 경제적이며, 영세규모 축산농가의 실정에 적합한 축산폐수 처리공정의 개발이 적절히 요구되었다.

본 기술은 부하량을 줄여 나가는 최적화된 단계별 공법으로 전처리 공정, 생물학적 처리 공정, 그리고 분리막을 이용한 고도처리 공정 등을 통해서 농가에서 실증하여 즉,

성상이 다른 고평도의 유기성 폐수인 축산 폐수에 본 개발 시스템(제품)을 각 지역농가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수처리를 실현하여 보급하게 되었다.

#### 가. 슬러리돈사에서 폐수의 이화학적 특성

(단위 : mg/l)

항 목	비육돈사		지돈, 모돈 돈사
	농도범위	평균	
COD <sub>Cr</sub>	94,000 - 136,000	114,700	50,500
COD <sub>Mn</sub>	15,200 - 27,200	21,700	
BOD	46,320 - 46,740	46,500	
TKN	6,500 - 11,800	8,940	5,400
NH <sub>3</sub> -N	1,800 - 7,900	5,800	3,300
Org-N	1,600 - 3,500	2,640	2,060
T-P	1,200 - 1,700	1,450	
SS	12,000 - 95,800	63,200	29,500

※ 출처 : 양돈폐수의 고액분리에 관한 연구(1998, 최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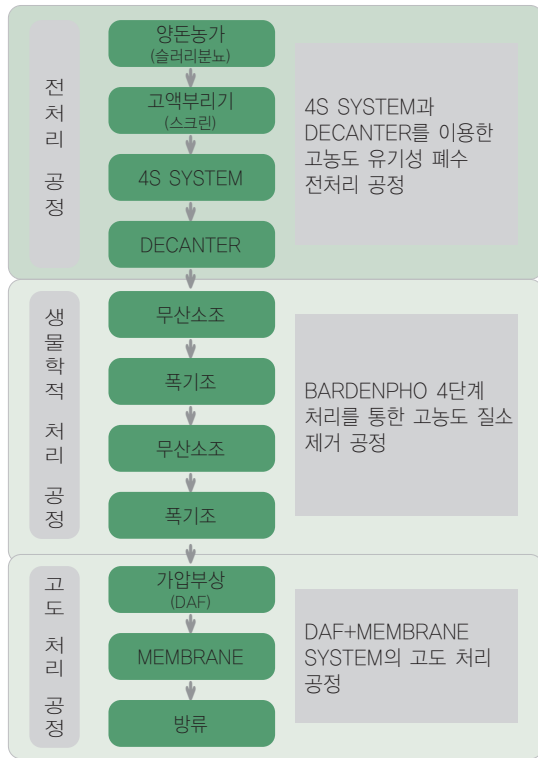
#### 나.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유입수질

(단위 : mg/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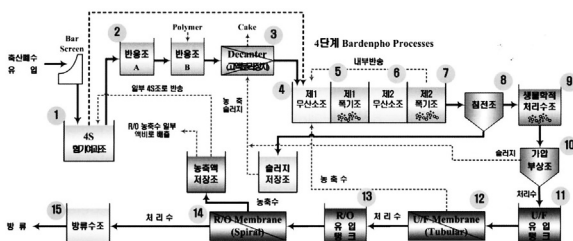
처리장	BOD	COD <sub>Mn</sub>	SS	T-N	T-P
함양	6,789	4,362	6,712	1,123	600
의령	29,754	20,274	23,130	5,172	437
안동	18,637	10,934	16,280	3,135	513
이천	5,592	4,215	7,185	1,425	132
평균	15,193	9,947	13,327	2,715	421

※ 출처 : 2001 환경시설관리공사 운영자료

## 개발 FLOW



## 개발 제품의 전체 공정도



## IV. 사업화 과정

###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구분	기존 제품	개발 제품
전처리 공정	-유입슬러지의 변화 및 슬러지 개량에 민감 -내부원동의 잦은 세척 필요 -후처리공정에 부하를 줌	-SS성분분리 효율 극대화 -최적의 응집제량 투입 -4S형기여과조에 의한 슬러지발생량최소화
생물학적 처리 공정	-적은 유량에만 처리 가능 -인 제거 효율이 낮음 -유출수 수질이 침전효율에 좌우됨	-운전용이, 부하변동에 강함 -T-N 제거효율이 높음 -가압부상처리를 이용한 안정적인 처리수 확보
고도처리 공정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이 늦음 -자동운전이 용이하지 않음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의 과다	-생물학적 폭기조의 부하 변동에 적절히 대응 -Tubular형의 Membrane 사용으로 내구성이 뛰 어남 -색도 및 T-N 제거효율이 높음

사업화의 진행은 전체적 시스템이 단계 단계마다 고객 (농가)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공정에서 최적화된 자료들로부터 개발 시스템의 우수한 효율성을 실증하여 고객만족으로 사업화가 진행되었다.

축산폐수 처리는 무엇보다 고객이 농가라는 점에서 기술 적인 부분과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고객의 의존성이 어떤 시스템보다 높아 개발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제 품의 단점들을 해결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의 개발이 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산업체의 처리시스템은 적절한 처 리결과로부터 실증이 되는 시스템인데 반해 축산폐수 처리 에 있어서는 간단·명료한 자료가 기존에는 고객에게 쉽게 제공되지 않았던 점에 본 사업화에 있어서 이를 인식하고 고객에 신뢰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step-by-step의 진행 으로 개발되었다. 즉, 각 지역과 각 농가에 따라 유입수질 의 차이가 커서 이에 대한 처리가 기존 방법으로는 어려움 이 있었는데 단계별 처리 공법으로부터 우수한 결과가 실 현되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본 시스템의 사업화 및 보급이 되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국제적인 협력(런던협약)이나 정부규 제(수질기준)에 대해 더 이상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의 대응 에 쉽지 않다는 인식이 사업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

## 세부 개발 내용

### 1) 전처리 공정 개발 (고액분리기술 개발)

- 분과 노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치 선정
- 슬러리 상태의 SS를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공정 기술 개발

### 2) 생물학적처리 공정 개발

- 유입수의 부하변동에 강한 생물학적 처리 시스템 개발
- 전처리 상태 폐수 중의 유기물 농도(COD<sub>Cr</sub>)의 85%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공정 기술 개발

### 3) 고도처리 공정 개발

- 색도와 T-N 제거효율이 높은 처리 Process 개발
- 생물학적 처리수 중의 색도를 50도 이하, T-N을

150mg/l 이하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4) 선정된 Process에 대한 성능평가 및 현장 실증플랜트 실험을 통한 검증

### 개발 제품의 공정별 처리수질 및 제거효율

항목	BOD <sup>5</sup>		SS		T-N		비고
	농도(mg/l)	제거율(%)	농도(mg/l)	제거율(%)	농도(mg/l)	제거율(%)	
원수	25,000	-	8,000	-	4,000	-	
원심고액분리기 (Decanter)	17,500	30	2,400	70	3,200	20	
4S System	4,375	75	720	70	2,080	35	
생물학적처리	656.25	85	360	50	520	75	
U/F Membrane System	196.88	70	18	95	364	30	
OR/O Membrane System(방류수질)	7.88	96	0.9	95	54.6	85	

### 기술개발의 중점내용

- 1) 전처리(고액분리) 기술개발 : Screw Press, HSSD, LSSD의 처리성능 비교 및 가장 고성능 설비에 대한 최적운전 인자 도출
- 2) 생물학적 처리 시스템에 대한 처리효율 및 내부 순환 인자 도출
- 3) 전처리 System과 생물학적 처리의 기초 및 실시 설계를 수행
- 4) 최적 전처리 고액분리 Process 선정
- 5) 전처리 System을 운전하여 고/액 분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능평가
- 6) 현장적용을 통하여 검증 후 전처리 공정을 확립
- 7) 고도처리 시스템인 Membrane 설비의 최적운전 조건 결정

8) 고도처리 System 기초 및 실시 설계를 수행

9) 선정된 고도처리 Process에 대한 성능평가

10) 고도처리 System을 제작,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현장 적용 및 상용화를 위한 실험을 수행

11) 제작된 전처리 System과 생물학적 처리를 연계하여 전체적인 처리 공정의 문제점을 보완

12) 공정을 자동화하여 축산폐수 자체처리 시스템 개발

## V. 사업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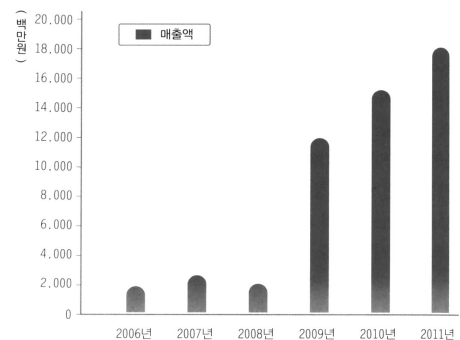
### 매출 현황

(단위 : mg/l)

항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월 현재	2009년 목표
매출액 (백만 원)	1,783	2,606	2,008	5,000	12,000
매출비율 (%)	75	80	80	90	92
제품화 준비기	2006년 - 2007년				
제품화 초기	2007년 - 2008년				
제품화 도약기	2008년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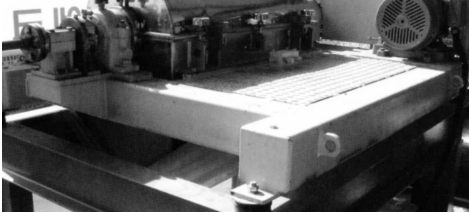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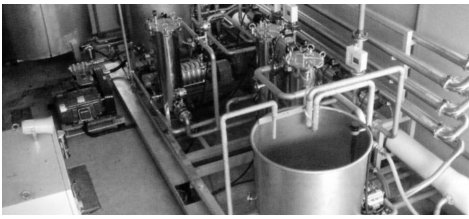
주) 2009년 상반기 관급공사 계약단계 : 예천(30억), 봉화(30억)

###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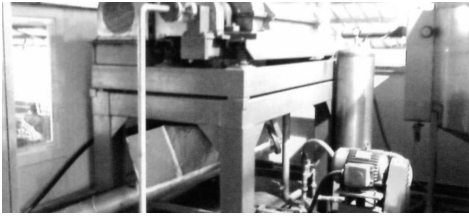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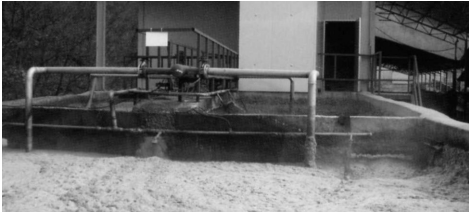



## VI. 사업화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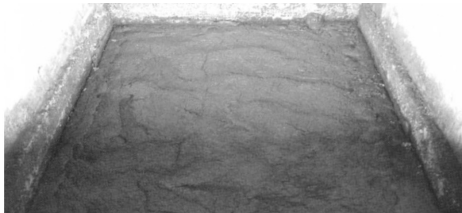


### 사례1. 한라농장 - 경기도 화성

구분	고효율 축산폐수 시스템을 이용한 40m <sup>3</sup> /d 정화방류 시설	공정설명
전처리 공정		1) 분과 뇨를 고속원심분리 2) 슬러리 90% 이상 제거
생물학적 처리공정		1) 부하변동에 대응 2) 유기물농도(BOD) 85% 이상 제거
고도처리 공정		1) 색도 및 T-N제거 효율높음 2) 방류수의 탁월한 수질




### 사례2. 피그넷- 충북진천

구분	고효율 축산폐수 시스템을 이용한 40m <sup>3</sup> /d 정화방류 시설	공정설명
전처리 공정		1) 분과 뇨를 고속분리 2) 슬러리 90% 이상 제거생물학적
생물학적 처리공정		1) 부하변동에 강함 2) 유기물농도 85% 이상
고도처리 공정		1) 색도 및 T-N제거가 높음 2) T-N을 150mg/l 이하로 제거가능

### 사례3. 가보농장 - 충북 진천

구분	고효율 축산폐수 시스템을 이용한 40m <sup>3</sup> /d 정화방류 시설	공정설명
전처리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과 뇨를 고속분리</li> <li>2) 슬러리 90% 이상 제거</li> </ol>
생물학적 처리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하변동에 강함</li> <li>2) 유기물농도 85% 이상 제거</li> </ol>
고도처리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색도 및 T-N제거가 높음</li> <li>2) T-N을 150mg/l 이하로 제거가능</li> </ol>

### 사례4. 2000 GGP -경기도 이천

구분	고효율 축산폐수 시스템을 이용한 40m <sup>3</sup> /d 정화방류 시설	공정설명
전처리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과 뇨를 고속분리</li> <li>2) 슬러리 90% 이상 제거</li> </ol>
생물학적 처리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하변동에 강함</li> <li>2) 유기물농도 85% 이상 제거</li> </ol>
고도처리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색도 및 T-N제거가 높음</li> <li>2) T-N을 150mg/l 이하로 제거가능</li> </ol>

## VII. 사업화 성공 요인

항목	내용
정책의 변화	-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금지 - 축산폐수의 자원화(액비)
기술의 차별화	- COMPACT한 시스템 - 각 공정별 처리효율의 극대화 - 처리의 확실성 - 폐수 재이용을 통한 자원화
시장의 성장성	- 해양투기 축소 및 금지에 따른 농장단위 처리시설 수요증가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정책에 의한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수요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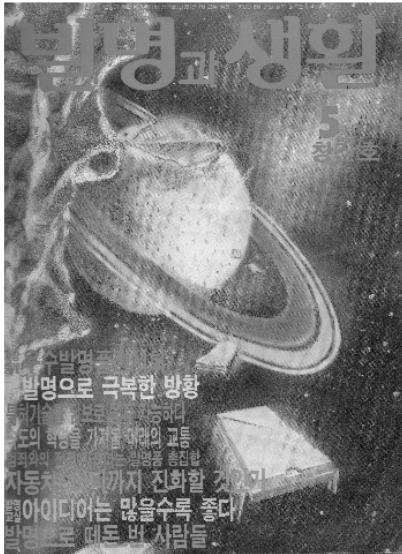
## VIII. 향후 시장 동향

### 내수 시장

- 1)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로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저비용으로 소규모 또는 대규모 농가에 본 개발 시스템이 모두 적용 가능하여 국내 5,000억 원(돈사의 경우) 이상 규모의 시장에서 높은 매출증대가 예상됨
- 2) 시스템 적용 및 확대 보급에 농가의 유기적 특성의 요인이 크게 기여되므로 연 20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함
- 3) 각종 규제에 따른 처리설비의 수요 증가와 폐기물의 자원화에 적극 대체 가능한 설비(단일농가와 공동자원화 설비 등)이므로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함

### 해외시장

- 1) 국내에 본 시스템 보급 및 확대로부터 안정화된 처리설비의 입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100배 이상 시장에 본격 참여함
- 2) 해외에서의 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다년간의 설비제작 경험으로 축산폐수 처리에 마케팅 전략을 대폭 강화하여 시스템을 적용 및 보급함.



## 우리나라 최초 판매용 ‘발명’ 전문 월간지

우리나라 최초 판매용 ‘발명’ 전문 월간지 ‘월간 발명과 생활’ 창간호는 1991년 5월에 발행되었다. 그 이전에도 한국발명특허협회(현 한국발명진흥회)가 발행하는 ‘월간 발명특허’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기관의 사보성격을 띤 비매품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수 보호 덮개 발명으로 크게 성공한 한국가로수보호주식회사(회장 박인호, 사장 최병섭 부부) 부설로 설립된 한국발명교육연구소가 발행한 이 월간지의 회장은 박인호, 발행인 겸 편집인은 최병섭 여사였다.

발행인 겸 편집인인 최병섭 여사는 창간사를 통해 창간 목적 및 편집 제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간추려 옮겨 신는다.

“발명계의 오랜 숙원이던 월간지 「발명과 생활」이 신미년 새봄에 첫 선을 보입니다./ 새로이 탄생하는 「발명과 생활」은 과학기술이 국력의 척도요, 모태라는 세계 질서에 부응하여 그 창간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발명과 생활」은 전문 발명가를 위한 아카데미즘 보다는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고독한 발명의 길에 친근한 동반자가 되고 대변자가 되어 발명계의 살아 있는 역사를 적어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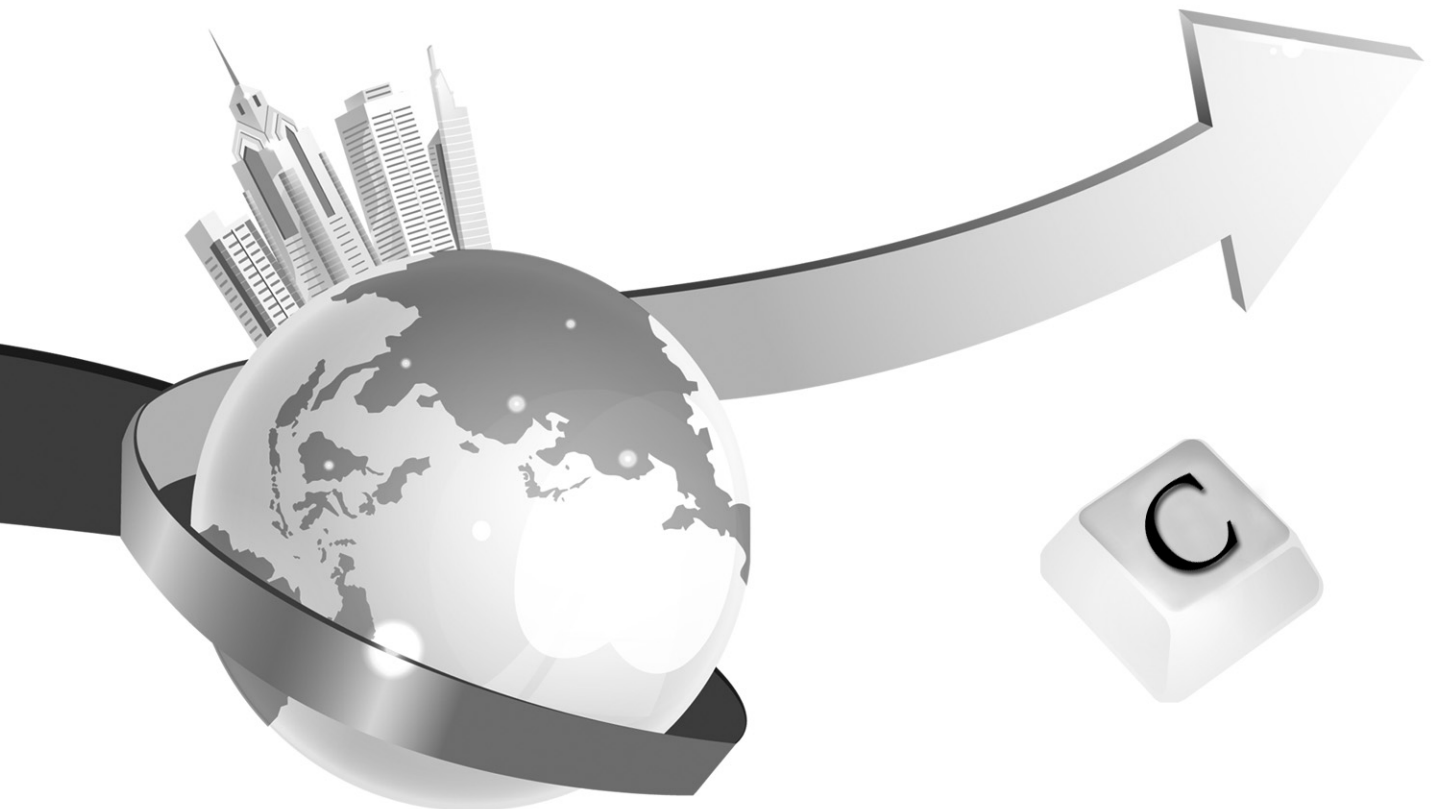
이 월간지는 성공한 발명가 부부의 의욕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로 내용은 물론 질 면에서도 당시 최고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발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휴간되어 발명계를 안타깝게 했다. 창간호는 4\*6배판 178쪽 전반 가량 올 컬러판이었고, 휴간되기까지 최고급 월간지로 발행되었다.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

자료제공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 Column

- 특허전략
- 지식재산 관리
- Zoom In
- 셀프 리더십
- 포커스
- 지식재산 성공전략
- 문화산책



## 중소기업의 전략적 특허경영, 결코 어렵지 않다!

『진(秦)나라 왕이 공주를 진(晉)나라 공자에게 시집보낼 때 온갖 장식으로 아름답게 가꾼 시녀 70명을 딸려 보냈다. 그런데 공자는 예쁜 시녀들만을 좋아하고 공주는 박대하였다. 결국은 공주가 아닌 시녀들을 잘 시집보내준 꼴이 된 것이다. 또 어느 초나라 사람은 귀한 구슬을 팔러 정나라로 갔다. 그는 목란(木蘭), 계초(桂椒)와 같은 향기로운 나무로 짜고 물참새의 털로 장식한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구슬을 넣었다. 그런데 정나라 사람은 그 상자만 샀을 뿐 구슬은 되돌려 주었다(買櫝還珠).』 \_ 출처 : 한비자(韓非子)

### 매독환주(買櫝還珠, ‘상자만 사고 구슬은 되돌려주다’)

‘매독환주(買櫝還珠)’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정작 본질의 중요성을 잊거나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고사이다. 이 비유를 이 글을 위해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본질(공주, 구슬)을 돕기 위한 보조적 요소(시녀, 상자)에 아무리 공을 들이더라도, 그 보조적 요소가 본질에 함목적적으로 부합하도록 적절히 배려되어 있지 않다면,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공들여 마련한 보조적 수단마저 허무하게 빼앗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는 마스크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본질은 제품을 많이 파는 것이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포장된 제품을 제조한다. 기술은

제품의 매력을 높이거나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이며, 대부분의 경우 기술 그 자체가 기업 활동의 본질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공들여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제품은 팔리지 않고 그 제품을 포장한 기술만 빼앗기게 되는, 즉 구슬은 팔지 못하고 상자만 빼앗긴 꼴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S텔레콤 K대표의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K대표는 위급상황 시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한 휴대폰 기술을 국내 대기업 L사에 제안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는데, 그 동안 연락이 없던 L사는 약 1년 정도가 지나 K대표가 제안한 개념이 적용된 휴대폰을 출시하였다. 그 휴대폰은 시장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K대표는 L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근 7년간 소송을 끌어들여 100억 이상을 허비했지만 제대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끈 '에스보드'를 개발한 S사의 G대표는 2006년 무려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 성공 스토리가 알려져 책도 내고 정부 공익광고에도 출연하기도 했으나, 이후 모조품의 난립으로 불과 3년 후인 2009년에는 단 1억의 매출로 추락하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기업 활동의 본질인 매출 확대는 달성하지 못하고 보조적 수단인 기술만 잃은 것이다. 그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이유는 서로 다르게 주장한다. K대표는 대기업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G대표는 특허제도의 불합리를 질타한다.

내가 볼 때 이들의 실패 원인은 다르지 않다. 실패원인은 '잘못된 특허전략'에 있다. K대표와 G대표는 모두 자신의 기술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다. 그 특허에 기초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다. 그러나, 권리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비즈니스 보호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극도의 상실과 함께 사업도 몰락한 것이다. 애초 특허가 없었다면 집착이나 절망도 없었을 것이다. 부실한 특허는 그 자체로서 우환거리이다.

### 특허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특허는 그 자체로서 기술자료인 동시에, 권리 범위를 정

하는 권리증이다. 권리의 영역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울타리는 남을 막는 것인 동시에 나를 가두는 것이다'라는 속담과 같이, 특허는 내 땅의 경계 즉 내 권리가 미치는 영역의 끝이 어디인지를 정하지만, 동시에 인접한 타인 혹은 공공의 땅의 경계 역시 정하는 것이다. 내 울타리 내에서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편, 울타리 밖의 일에 대해 간섭할 수 없는 소극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울타리 밖의 일에 간섭의 과욕을 부리다가 실망을 자초한다.

넓은 통제력을 갖고 싶다면 애당초 울타리를 충분히 넓게 쳐야 한다. 울타리를 칠 면적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는 순전히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물론 너무 넓게 잡으면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저촉만 피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기술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을 마음껏 넓게 상상해보라. 상상한 만큼 권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울타리는 튼튼하여야 한다. 튼튼한 울타리는 잠재적 침입자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여야 한다. 발자국 소리만으로 도망가는 토끼를 막을 울타리와 폭력적인 맹수에 대비할 울타리는 분명 다르다. 많은 실무 사례들에서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특허 울타리는 안타까울 정도로 좁고도 부실하다. 그런 특허들은 벽면을 장식하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귀 특허의 울타리는 얼마나 넓고 어떤 침해에 저항할 수 있는가?

### 특허 취득의 목적은 '제품 보호'가 아니라 '시장 보호'이다

'제품 개발'과 '특허 전략'은 모두 '기술의 산'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제품 개발'의 경우에는 최단 코스를 따라 정상에 오르지만 하면 그 산을 정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최적의 솔루션 하나만 찾아내면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여러 개의 솔루션은 거추장스럽다.

그러나 '특허 전략'에서 '산의 정복'의 의미는 다르다.

내 제품이 존재하는 그 산에 누구도 침입 못할 방어막을 구축하였을 때 '산 정복'에 성공한 특허전략이라고 말한다. 즉, 최고의 특허 전략은 '내 제품이 속한 시장'을 통째

로 커버하는 것이다. '내가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남이 회피나 모방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 까지도 예측하여 방어하여, 잠재적 경쟁 제품이 아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허는 제품개발의 과정에서 나온 성과물이긴 하지만, 특허 취득 전략은 제품 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많은 특허들은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타인의 모조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모방을 조장해준 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산을 오를 때에는 무턱대고 오르지 않는다. 산 아래에서 미리 정복 전략을 구상한다. 산오르기가 그렇듯 특허 전략도 연구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이전의 다른 사람들의 개발 경험에 관한 정보나 시장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나면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전 정보나 시장 환경에 기초한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그 최종 설계안에 따른 실시 예에만 한정된 특허를 받게 된다. 이런 특허는 마치 산꼭대기에 작은 울타리를 치고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좋은 특허는 산자락을 따라 넓은 울타리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런 특허는 개발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 조직적 특허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핵심 제품에 대해 한두 건의 특허만을 가지고 있다. 앞의 S텔레콤과 S사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 소수의 특허가 상대의 저항을 받아 무력화되어 버리면 대안이 없다. 안타깝지만 G대표와 K대표처럼 분류를 삼키고 물러나야 한다.

강한 군대는 많은 전사와 다양한 무기를 구비한다. 군대의 병력의 수가 중요하듯, 특허 건수는 특허분쟁에서는 매우 의미가 크다. 방어하는 입장에서의 부담은 특허 건수의 제공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두 건의 대응은 비교적 쉽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그 내용은 제쳐놓고 분석과 대응 비용 등과 관련하여 상대를 무척 곤혹스럽게 만

들 수 있다.

그리고 무기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같이 강한 화력의 무기는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중화기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근접전이나 비정규전을 대비한 무기나 전투인력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연예인부대가 있어야 한다. 특허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핵심 기술에 관한 특허 하나만 달랑 들고 있는 경우는 마치 '들배지기'나 '뒤집기' 기술 하나만을 가지고 천하장사가 되겠다는 씨름 선수와 다름없다. 그런 선수는 싸우는 재미도 구경하는 재미도 제공하지 못한다. 상대 선수에게 자신의 특기가 파훼되고 나면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 외에도, 잠재적 침해자들의 예상 가능한 침해 양태를 고려하여, 핵심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응용 기술, 보조 기술, 이용 기술, 혹은 그 기술이 통과하는 통로에 있는 길목 기술 등에 대해 특허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런 주변 특허들이 실제 전투에서는 오히려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있어도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처럼 특허분쟁에서 큰 기술의 특허는 다 피했는데 어설픈 돌부리 같은 특허에 걸려 항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이제 우리도 구슬상자를 뺏는 입장이 되어보자

언제까지나 구슬상자를 빼앗긴 비련의 주인공으로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상자만 뺏고 구슬을 되돌려주는 회심의 비릿한 미소를 짓는 승자의 모습이 되어볼 수 있다. 공주보다 더 잘 가꾼 70명의 시녀나 구슬보다 탐나는 상자가 있다면, 그리고 별 저항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욕심을 내보지 않겠는가? 그런 매력적인 제품은 실제로 상당히 널려 있고, 제대로 둘러보면 쉽게 취할 기회도 많다. 다만 무지, 게으름, 자존심, 도덕성, 두려움, 소심함 등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도의 특허전략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의 특허 포트폴리오에는 허점이 많다. 그 허점을 제대로 알고 파고들면 성공적인 모방자(Fast Follower)가 될 수 있다.

수성이 공성에 비해 훨씬 힘들다. 수성은 성 내의 한정된 자원만 이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성은 성 밖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훨씬 낮다. 그래서 나는 가끔 광오하게 주장한다.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은 없다”라고. 베끼고 싶은 제품이 있는가? 십중팔구 안전한 모방의 길이 있다.

그런데, 양심이나 자존심이 걸린다고? 그렇다. ‘모방’이 좀 떳떳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방에서 자유롭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우리는 곧지곧지 배우기부터 입관 절차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모방한다. ‘모방’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침해’가 비난 받을 것이다. 바람피운 남자가 비난 받는 것은 연애사실보다 발각된 죄 때문이다.

모든 성공은 잘된 모방에서 나온다. 연구개발 과정은 남의 기술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로부터 배우고 벗어나고 개량하면서 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허전략의 꽃은 남의 기술을 이용하여 더 나은 나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 그런데 그런 어려운 특허전략을 중소기업이 어떻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은가? 그럼 일단 배가 고파야 한다. 배부른 자에게는 어떤 메뉴도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대충 배만 채워도 된다는 반 미식적 자세를 버리고, 최고의 맛있는 식사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또 맛을 분별하는 심미적 소양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능한 요리사 내지는 맛있는 식당에 대한 잘된 정보를 가지는 것이다.

특허전략 성공의 비결이 맛있는 식사하기와 어찌 다르겠는가?

성공적인 특허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성공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연구개발 의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어떤 게 좋은 특허이고 어떤 전략이 훌륭한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심미안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나 전략에 관한 심미안은 좋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몇 차례만 경험하면 어렵지 않게 몸에 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불어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유능한 전문 변리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유능한 변리사는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을 고르듯 좀 고민하고 노력하여 찾고 좀 멀리 있더라도 기꺼이 달려가야 한다.

아직도 중소기업이 맛있는 특허전략을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아직 충분히 시장한 상태가 아닐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두 가지의 기업이 있다. 변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



허성원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자문위원  
조달청 우수상품 심사위원  
특허법률구조사업 심사위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점** 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개인까지 지식재산권  
의 창출 및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  
인에게 출원 관납료의 할인 혜택을 늘려 50%에서 70%까지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들의 출원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출원 시 사내 부서가 아닌 지식재산권 대리인 즉, 변리사를 통하  
여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비용이 경감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출원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각 회사별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IP  
전담부서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비용적 부담과 필요성 부재로 인하  
여 겸임인력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큰 부작용의 부메랑  
이 되어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번째로 권리가 명확히 청구되지 않아 회  
사가 필요로 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비록 지식재산권이 등  
록되었다 할지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매제품이 경쟁사 권리에 침해될 경우 구제하  
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권리 확보가 아니라 노하우로 가져가야 하는지 또는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리인에  
게 위임함으로써 회사 경영과 일치하지 않는 출원이 진행됨에 따라 출원 및 관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  
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IP 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IP 전담부서는 회사 경



영 마인드를 정확히 숙지하여 지식재산권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유창할 수도 있지만 회사 경영과 지식재산권이 일치되어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창출될 수 있으며 이들이 불일치할 경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지식재산권만 확보하게 됨으로써 비용적, 시간적, 인력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IP 전담부서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된 명세서가 명확한 권리범위를 청구하고 있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지식재산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추가 관리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P 전담부서원은 명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촌각을 다투는 제품이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물론, 대리인이 공개하진 않겠지만) 방어적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겠다. 명세서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다.

이와 같이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일수록 IP 전담부서를 두어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 환 진**

현 (주)필룩스 특허경영팀 팀장  
현 연세대학교 지적재산권 법무대학원 재학

## 강한 특허를 위한 OA 대응방법

**최** 근에 기업에서 특허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들 사이에서 “강한 특허 만들기”란 주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강한 특허”에 관해 언급한 특허관련 책도 출판되고 있으며, 또 관련 특허세미나도 많이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매력적인 주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해답을 누구도 제시 못하는 어려운 과제가 분명히 분명한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요건 및 기회들 중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을 강한 특허 만들기를 위한 최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기업에서 특허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 특허담당자의 입장과, 특허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의 입장에서 실행하여야 하는 특허활동의 노력과 연관지어, 본 회지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해 드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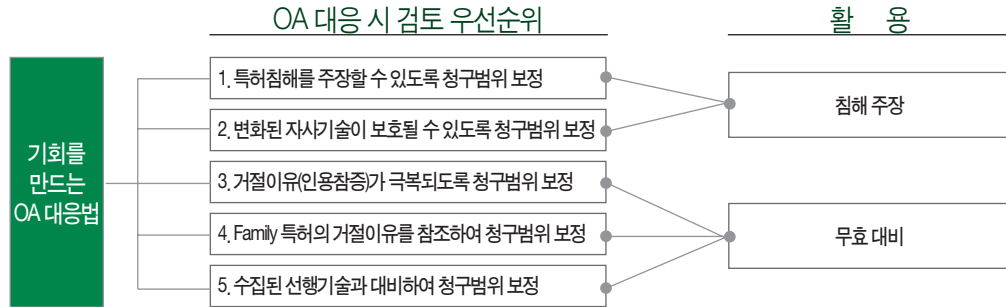
대부분의 기업 특허담당자나 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대응방법으로,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특허권리범위가 넓어지도록 거절이유에서 인용한 특허와의 차이점을 주장하여 이를 극복하고 출원특허가 등록되도록 집중한다.

이와 같이 거절이유의 대응방법으로 거절이유로 인용된 특허만을 대비 분석하는 노력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특허창출의 최종 목적은 특허권 활용이

므로 특허등록을 목적으로 치중한 거절이유의 극복노력보다는 훨씬 폭 넓은 관점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특허활동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제안 드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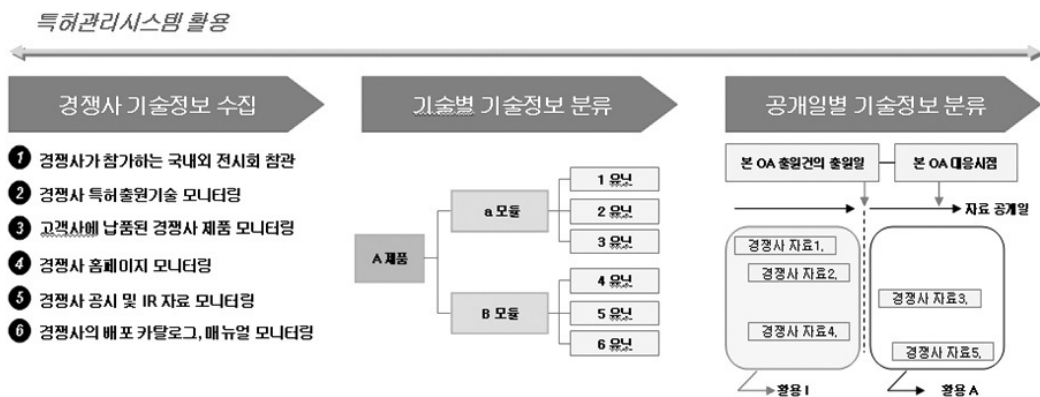
우선 특허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아래와 같은 검토우선순위로 대응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거절이유 중에서 인용참증이 있는 거절이유대응에 한하여 설명하겠다.)



검토우선순위1.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 보정” : 특허권 활용이란 측면에서는 당연히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청구범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또한 경쟁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침해주장 할 수 있게 청구범위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중요한 보정의 기회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이후에서부터 거절이유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전까지 그 길지 않는 기간 내에 경쟁사의 제품에 특허발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적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개발기간이 짧고 상품 출시가 빠른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특허발명기술의 채용여부는 특허권자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특허권자는 자사의 특허발명기술이 경쟁사 제품에 채용하려고 하는지 또는 채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 수집은 특허권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허권자 측의 특허담당자는 채용가능성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주기



[그림1. 경쟁사의 기술정보 수집 및 분류방법]

적으로, 다방면으로 경쟁사의 제품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경쟁사의 기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더 효율적인지에 관하여 더 말씀 드리고자 한다.

경쟁사의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6가지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1) 경쟁사가 참가하는 국내외 전시회 참관
- (2) 경쟁사 특허출원기술 모니터링
- (3) 고객사에 납품된 경쟁사 제품 모니터링
- (4) 경쟁사 홈페이지 모니터링
- (5) 경쟁사 공시 및 IR 자료 모니터링
- (6) 경쟁사의 배포 카탈로그, 매뉴얼 모니터링

상대적으로 특허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전시회, 자사 홈페이지, 공시 및 IR 등에서 자사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믿고 있는 개발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특허권자 측의 특허담당자는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권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행해지는 이런 홍보활동들을 이용하여 거절이유 답변단계에서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허담당인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허팀에서는 위와 같은 활동들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외부의 인력 활용이 필수적이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4), (5)의 활동은 특허팀에서 직접 수행하고 (2)의 활동은 외부의 특허사무소, 특허 분석 또는 조사업체로 Outsourcing을 하여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받은 후 특허팀에서 2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3), (6)의 활동은 자사의 기술엔지니어, 마케팅

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쟁사의 기술정보를 보다 전방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1.에서 언급된 “기술별 기술정보 분류”에서와 같이 수집된 경쟁사의 기술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내 특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별, 기술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입수된 기술정보자료에 명확히 기재된 자료공개일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는 거절이유 답변단계 등에서와 같은 청구범위 보정기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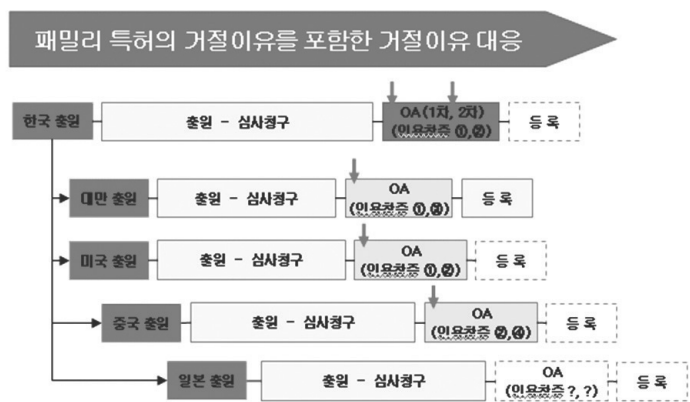
그림1.에서 언급된 “공개일별 기술정보 분류”에서,

입수된 경쟁사 기술정보의 공개일이 본 특허의 출원일 이전이라면 거절이유 답변단계인 청구범위 보정기회에서 거절이유로 제시된 인용문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활용할 때에 접하게 될 특허무효에 대비하여 입수된 경쟁사 기술정보까지도 극복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담당자는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활용I)

또한 입수된 경쟁사 기술정보의 공개일이 본 특허의 출원일 이후라면 거절이유로 제시된 인용문헌을 극복함과 동시에 보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특허활용단계에서 특허침해를 더욱 명확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입수된 경쟁사의 기술정보와 대비분석하여 청구범위가 보정되도록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활용A)

검토우선순위4. : “패밀리 특허의 거절이유를 참조하여 청구범위 보정” 일반적으로는 특허무효심판과 같이 특허무효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특허의 패밀리 특허를 검색하고 이들의 심사이력을 분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거절이유 답변단계에서 패밀리 특허의 심사이



[그림2. 패밀리 특허의 거절이유까지 포함한 거절이유 대응]

력을 활용하여 거절이유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좀 더 강한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2.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최초 출원인 한국출원의 거절이유 답변을 예로 들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 거절이유에 관해 답변하는 단계에서 해당 특허건의 패밀리 특허(본 예에서는 대만, 미국, 중국, 일본 출원 건)를 검색하여 각각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인용참증을 함께 비교하여 한국의 거절이유에서 제시된 (1),(2)의 인용문헌 이외에 대만, 중국의 거절이유에서 새롭게 제시된 또 다른 (3),(4)의 인용문헌까지 극복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거절이유 답변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절이유를 대응하기 위해 해당 최초출원 건의 패밀리 특허를 검색하고 심사이력의 포대를 찾고 그 내용들을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업 특허담당자나 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는 해당 특허의 거절이유만을 극복하려고 한다. 앞서 설명 드린 거절이유 대응방법을 좀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허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탑엔지니어링의 특허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Family OA 현황비교표”의 기능을 그림3.에서 예로 들어보겠다.

Family OA 현황비교표						
닫기						
상위1단계						
관리번호	TOP-P05-0011		TOP-P05-0061		TOP-P05-0011TW	
출원번호	2005-00 [redacted]		2005-00 [redacted]		095 [redacted]	
발명의 명칭	Wafer [redacted]		웨이퍼 [redacted]		APPARATUS [redacted]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Taiwan	
현재처리상태	[redacted] 출원료		관리유지 지시		등록 완료확인	
OA현황	1차		1차		1차	
	참증번호	1019990048954 1020020085788	참증번호	JP20040134657A0 1020020085788	참증번호	CN200200119868AP US20020322203B2 TW00000251893B_P
당소의견	본 발명은 인용발명1과는 차별화되나, 인용발명2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광축 조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당소의견	본 발명은 캐세트 송강장치가 작업 테이블의 작업 공간에 위치하게 되므로 장비가 강력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비의 설치 공간이 작게되는 것으로 의견 제출 [redacted]	당소의견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2차		2차	
당소의견			참증번호		참증번호	TW200300999A0 CN1384033A0
			당소의견	본 건은 1차 OA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발명을 극복하였으나, 2차 OA에서 몇 가지 불비한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최종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발된 것임. 따라	당소의견	청구항 2항의 특징 청구항 1항에 병합하고, 청구항 3항의 특징을 독립항 1에 병합하여 독립항 2개로 보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림3. 특허관리시스템에서의 Family OA 비교]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서도 거절이유의 답변단계를 기회로 삼아 좀 더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안 드린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특허관리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 특허담당자는 경쟁사의 기술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또 쉽게 관리될 수 있도록 특허관리가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허사무소의 담당변리사는 이러한 경쟁사의 기술정보는 당사무소에서는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전가하지 말고 거절이유통지의 보고 및 답변단계에서 위 확인사항들을 출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패밀리 특허의 거절이유까지 참조하여 해당 거절이유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특허 전문가다운 자세로 특허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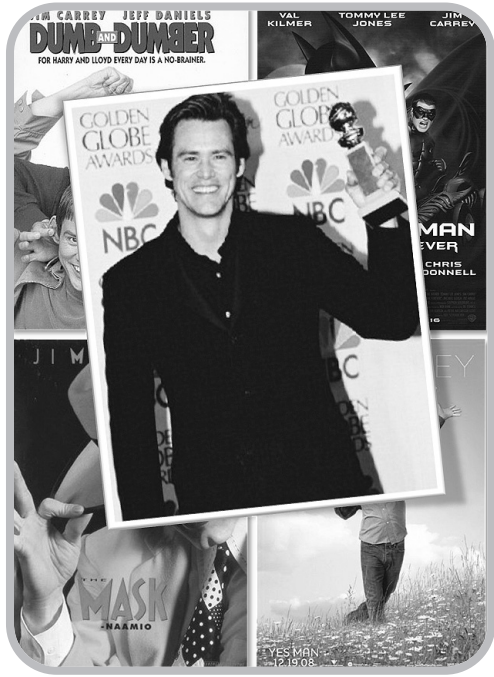
몇 년 전에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무슨 마술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목만으로도 200% 공감되는 문장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셀프 리더십에 관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본인이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나이 지긋하신 외국계 기업 임원께서는 과거에 본인이 적었던 몇가지 소원 중 아들이 명문대를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다. 30대 후반의 성공한 젊은 기업가는 지금의 사업 운영시스템이 직장을 그만둔 휴식기에 꼼꼼이 메모했던 그대로 되었다고 고백했다. 무명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던 미국의 배우 짐 캐리의 사례는 더 극적이다. 먹는 것도 허술하고, 잘 곳도 없어 고물 자동차에서 지냈던 짐 캐리가 어느 날, 할리우드 언덕에 앉아 스스로에게 5년 후 1,000만 불을 지급하겠다고 수표책에 적는다. 무명의 설움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상상치 못할 일을 한 것이다. 그 수표를 지갑 속에 고이 넣어가지고 다니며 용기를 잃을 때마다 펴보았던 짐 캐리는 정확히 5년 후 두 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1,700만 불의 수입을 얻게 된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리관유 총리의 유학 시절 메모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은 꽤 유명한 사실이다.

필자 역시 17년 전에 적었던 종이 한 장이 인생을 많이 바꿔 놓았다. 35세 이전에 본부장(경영자)이 되었다고 적었는데, 그대로 되었다. 필자는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엘리트 그룹에 속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꿈을 과감하게 적었고(될까 안될까를 염려하지 않고), 바인더에 꽂아 다녔다. 필자보다 더 우수한 동기들이 많았지만, 352명 동기 중에 본부장까지 올라간 동기는 2-3명 뿐이었다. 그렇게 된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종이에 기록했다는 것이 꿈을 이루게 해 준 것이다.

지금도 필자는 몇 년 전에 적은 꿈 리스트를 가지고 다닌다. 미국의 17세 소년 존 고다드가 적었던 127가지 소원 중 47세가 될 때까지 108가지나 이루어졌다는 것은 40대인 필자에게도 도전이 되는 일이다. 10대 소년은

연령	구분	의무	필(必)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35세	목표 및 Vision	영적인 면	최상(업무)	지적인 면	성공 계획	가정(가족)	
	- 배우는 관습적인 습관 (부서장, 본부장)	- Basic 확립	- MD 승진의 습관	- 언어, 언어 습관	- 언어습관: 토론, 독해, 필기	- 경운 (중요한)	
	- 공평과는 성공	- 자기 성공론	- 전문 분야의 습관	- 주2천원 (200)	- 영어	- 직업 그	
	- 사생활과 성공	- 성공 습관	- 전문 분야의 습관	- 주2천원 (200)	- 영어	- 직업에	
	- 자기 성공 습관	- 성공 습관	- 전문 분야의 습관	- 주2천원 (200)	- 영어	- 직업에	
40세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50세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60세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70세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의지(意志)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 리더십 습관	

(1933년에 적었던 낡은 종이 한 장, 지금도 바인더에 가지고 다니다)



아니지만 40대 중반을 넘은 이 나이에도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이루기 쉬운 소박한 꿈보다는 보다 거창하고 큰 꿈을 적는다. 종이 위의 기적을 믿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꿈을 적기만 하면 뭐하냐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를 꿈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적어 놓지 않는다. 종이에 적는다는 것은 두뇌를 깨우는 것과 같다. 한번 기록하여 자신의 뇌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꿈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가령 유럽의 어떤 도시에 가고자 하는 꿈을 적었다면, 그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도시에 관한 TV 프로그램, 잡지 기사, 그 도시에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까지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소원을 더 크게 꿈 꾸게 되며, 그 곳에 갈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정보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노력은 자연스런 다음 단계의 과정이고, 꿈을 적는 것은 스타트라인인 것이다.

심지어 꿈을 적는 것은 죽은 사람의 소원까지 이루어지게 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사망한 여대생 승영이는 일기장에 14가지 소원을 적어두고 있었다. 유품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승영이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하고, 그 후 10여 년 동안 무려

Car's New Service  
S-OIL  
1600-88-2222

朝鮮E

---

1920년 3월 5일 창간

www.chosun.com

---

성수대교 붕괴 10년 승영이는 했지만...

女大生 딸이 일기장에 남긴 14가지 소원  
“엄마가 모두 이루어주마”

1994년 3월 5일,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사망한 여대생 승영이(1971년)의 일기장에 남긴 14가지 소원 중 10가지는 이미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승영이가 남긴 14가지 소원을 유품 정리할 때 알게 되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 엄마가 이룬 승영이의 소원들

시작할때만 봉사 → 호스피스... 경제적 보금  
장학금을 받는다 → 보상품 2억5천만원 기부  
이동도서관 세웠다 → 인제 '봉부내'에 사랑기증  
여행상 입장한다 → 결혼한 동생이 입학 약속

승영이의 소원 14개 중 10개는 이미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승영이가 남긴 14가지 소원을 유품 정리할 때 알게 되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루어주마”라는 말을 남긴 채...

7-8가지나 이루었다. 계속해서 나머지 소원들을 이루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이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 19일자 기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를 사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어떤 바보라도 사과 속의 씨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 속의 사과는 하늘만 압니다 나는 지금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 출처 미상, 중략 -



강규형

- (현) (주)3P자기경영연구소 대표이사
- (현) 독서포럼 '나비' 창립자 및 대표
- (전) yCBMC 총연합회장
- (전) 푸르덴셜 라이프플래너(IMDRT 3회 연속 달성)
- (전) 이랜드그룹 푸마사업본부장

#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림 1- 1897년 출시되어 11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채표 가스활명수



그림 2- 50년 넘게 1백억 병 이상의 판매고를 자랑하는 '칠성사이다'



그림 3- 40년간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새우깡. 연간 500억 원의 매출을 자랑한다.



그림 4- 연간 15억 개가 국내외에서 팔리는 초코파이. 베트남의 제사상에 올라갈 만큼 인기 있다.

겨울을 잘 지낸 사람이 풍성한 열매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

12월. 벌써 추운겨울이 찾아왔다. 항상 맞이하는 계절의 변화이지만 특히 2010년의 겨울은 다른 해와 남다르게 느껴진다. 아마도 히트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분석을 시작한 본 칼럼을 <발명특허>지의 많은 독자들과 함께한 첫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재산 분야의 제1선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로서 구체적인 현실의 발명품(제품)을 추상적인 문언인 특허청구범위로 교환하는 일을 하다 보니, 역으로 추상적인 문언의 특허청구범위를 분석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둔 발명품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본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참여로 꾸준히 연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지면을 통해서나마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다소 엉뚱하지만 발명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칼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금 다짐해본다.

가장 히트한 상품은 무엇일까? 특허청과 경제4단체가 주최한 <2006년 상표디자인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히트한 상품으로 부채표 활명수, 박카스, 새우깡, 칠성사이다, 초코파이, 하이트, 삼양라면, 진로소주, 샘표간장 등을 꼽았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세대를 초월한 히트상품들은 모두 '음식'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상표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상표권 전략을 수행하여 30년 넘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열거된 제품들은 대부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되었어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것들이지만, 히트상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며, 특히나 전 방위적인 지식재산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21세기에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음식특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등록특허 제10-0101758호의 '쌀발효액제조방법및쌀발효액을 이용한빵의품질개선방법'은 호빵으로 유명한 '샤니'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특허이다.

물론, 음식특허의 경우, 음식물 자체를 물건특허 또는 물건특허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적인 기계장치발명과 같이 구성요소들의 유의미한 결합관계에 고도의 창작이 인정되어야 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는 물건특허의 특성상, 재료의 '조합' 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진보성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물건특허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특허는 해당 음식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방법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음식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는 일반적인 기계장치 발명특허보다 약하며,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권리자가 침해자의 침해음식물 제조방법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음식특허는 권리범위의 강약문제를 초월하는 마법과 같은 '특허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개발한 음식물에 대한 특허출원시, 일단 특허출원증 만으로도 상당한 후광효과가 있으며, 특허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먼저 해당 음식을 만들었다(신규성이 있다)는 <원조 인증>을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전 세계에 자신이 발명한 음식이 특허 공개공보를 통하여 공개되므로 서적출판 등의 노력 없이 해당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빠른 시간 내에 쌓을 수 있다.

- 1 특허등록을 받을 경우, 해당 음식을 가장먼저 개발했다는 사실을 공인 받을 수 있다.
- 2 특허출원확인증으로 출원과 동시에 음식특허를 홍보할 수 있다.
- 3 특허 공개공보를 통하여 출원일 후 1년 6개월 만에 전세계에 공개시킬 수 있다.
- 4 '특허받은 음식'이라는 신선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 5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확장시, 라이선싱 과정에서 음식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림 6- 위와 같은 음식특허의 장점은 권리범위가 약한 음식특허의 태생적인 단점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이번 12월호 칼럼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애매하면서도 가장 우리생활과 밀접한 '음식'에 대한 유일무이한 지식재산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 회 뜨는 기술도 특허받을 수 있다???

과연 칼로 생선을 회 뜨는 기술을 특허받을 수 있을까?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스핀지'에 나올만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칼로 회를 뜨는 기술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요리를 하는 수많은 요리사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일 텐데,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특허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회 뜨는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특허출원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산방산 아래에서 진미식당을 3대째 운영하고 있는 강장건 씨(52·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진미횃집)는 변리사를 5번이나 교체하는 끈질긴 노력 끝에 '다금바리 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Sliced raw fresh

composition of giant grouper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에 관한 등록특허 제10-0558218호를 받아냈다.

본 특허문헌의 초록에는 『본 발명은 몸통살을 포함하되, 몸통살에 더해 다금바리의 각종 부위에서 발라내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데쳐 낸 각종의 살들을 더 포함하여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다금바리 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회뜨기를 하여 수득되는 몸통살에 더해 데친 껍질, 데친 입술, 데친 헛바닥, 데친 내장(간과 대창), 볼살, 날개살, 목줄기살, 갈비살 또는 이들 중 2 이상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살부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정도만 기재되어 사실상 특허문헌상의 요약만 보고는 발명의 핵심인 ‘회 뜨는 기술’을 전수(?) 받기는 어렵다.



그림 7- 세계대회에서 '회 뜨기' 시연을 펼친 강창건 씨(2006)



그림8- 기발한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유명언론의 전면기사로 소개된 사례

특허의 요체인 특허청구범위에는 『(1)다금바리 생물을 뇌사 또는 기절시키는 뇌사단계와; (2)뇌사 또는 기절된 다금바리 생물의 동체로부터 피를 제거하는 피제거단계와; (3)우선 다금바리 동체의 배부분을 개봉하여 내장 등을 분리해내는 내장분리단계를 포함하는 다금바리 회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4)머리와 등뼈로부터 몸통살을 분리해내는 몸통살분리단계; (5)몸통살로부터 껍질을 분리해내는 껍질분리단계; (6)머리 볼부위로부터 볼살을 분리해내는 볼살분리단계; (7) 머리 앞지느러미 안쪽으로부터 날개살을 분리해내는 날개살분리단계; (8) 머리 윗입술과 아랫입술로부터 입술살을 분리해내는 입술살분리단계; (9) 머리로부터 헛바닥을 분리해내는 헛바닥분리단계; (10) 머리로부터 목줄기살을 분리해내는 목줄기살분리단계; (11) 분리해낸 몸통살로부터 갈비뼈 부분을 분리해내고, 상기 갈비뼈로부터 갈비살을 분리해내는 갈비살분리단계; (12) 내장 중의 간, 대창들과 상기 껍질, 입술살, 헛바닥 등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데치는 데침단계; 및 (13) 상기 몸통살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해내는 몸통살회뜨기단계; 들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다금바리 회 조성물의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정확하게 어떠한 단계별로 어떠한 작업을 해야하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물론, 13단계나 되는 다급바리 회 조성물의 제조방법의 특허청구범위는 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본 특허문헌을 보고 각 단계를 동일하게 구현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제3자의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본 특허청구범위 만으로는 본인의 '손맛'이 Copy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특허의 공개는 권리범위가 약할지언정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고수들의 묘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회 뜨는 방법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음식특허 역시 등록이 가능하다.

### 토스트 업계의 신화 “이삭 토스트”

추운 겨울에 간단히 출출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은 물론, 앞에서 그림으로 간단히 소개한 호빵이지만, 바쁜 직장인의 아침식사를 해결해주는 대표음식은 ‘토스트’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900여 개의 가맹점을 둔 CEO로 변신한 김하경 씨(54)는 이른바 ‘소스특허’로 토스트 업계를 평정한 ‘음식특허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갑작스러운 남편의 발병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토스트 포장마차를 시작한 김씨는 최고의 재료와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청주지역에서 유명세를 얻었으며, 이후 대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김씨는 이삭토스트를 다른 토스트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소스 및 그 제조방법 (sauce and process of the sauce)을 특허출원 제10-2004-0115460호로 출원하게 되었다.



그림 9- 청주의 토스트 포장마차에서 전국 900개 가맹점으로 사업이 번창한 <이삭토스트>



그림 10- 이삭토스트 맛의 비밀은 등록특허 제10-0637349호로 보호되고 있다.

발명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는 초록에는 『본 발명은 빵이나 샐러드 등에 사용되는 소스에 관한 것으로서, 생과일이나 생야채 등의 천연재료 분쇄물을 사용하면서도 보관과정에서 색상이 갈색으로 변화되어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요네즈 등의 첨가에 따른 느끼한 맛을 억제하고 감칠맛을 더하여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생과일이나 생야채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는 소스 및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바나나, 키위, 사과, 배, 오렌지, 토마토, 복숭아, 브로콜리, 오이, 당근, 배추, 무, 양배추 등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생과일이나 생야채를 분쇄하고, 상기 생과일이나 생야채에서 선택된 재료의 분쇄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마요네즈 100~150중량부와 설탕 100~150중량부를 포함하는 첨가물을 첨가 혼합하여 소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첨가물이 분쇄한 마늘 100중량부에 물 80~120중량부, 설탕 10~50중량부 및 식초 60~100중량부를 넣고 24시간 이상 숙성시킨 다음 여과하여 얻어진 숙성액을 30~80중량부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의 제조방법과, 상기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를 제공한다.』라고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초록의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이삭토스트의 맛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구성하는 기술의 구성적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특허청구범위를 살펴보면 『바나나, 키위, 사과, 배, 오렌지, 토마토, 복숭아, 브로콜리, 오이, 당근, 배추, 무, 양배추 등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생과일이나 생야채를 분쇄하고, 상기 생과일이나 생야채에서 선택된 재료의 분쇄물 100중량부에 대하여 마요

네즈 100~150중량부와 설탕 100~150중량부를 포함하는 첨가물을 첨가 혼합하여 소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첨가물이 분쇄한 마늘 100중량부에 물 80~120중량부, 설탕 10~50중량부 및 식초 60~100중량부를 넣고 24시간 이상 숙성시킨 다음 여과하여 얻어진 숙성액을 30~80중량부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의 제조방법.』을 기재하여, 전통적인 음식특허의 기재방식으로 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범위는 발명을 명확하게 공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반인들도 청구범위만 봐도 해당 소스를 쉽게 제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개인이 집에서 위 청구범위의 방법대로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을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가정 내에서의 실시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방식대로 토스트 소스를 만들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 또는 사업을 할 경우, 명백히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적으로 이삭토스트의 맛을 차용하고 싶다면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 분당의 유명한 메밀국수 맛집인 ‘그 집’의 비밀

분당에는 상당히 유명한 맛집이 많이 있지만, 특히 수내동에 위치한 메밀국수 전문점인 ‘그 집’은 넓은 매장과 음식 자체의 빠른 회전률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음식점이다. 물론, ‘그 집’의 상호명은 식별력이 부족한 관계로 상표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메밀장국은 특허로 등록되어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림 11- ‘그 집’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한다. 간판에 쓰여 있는 그대로, 메밀국수, 우동, 짬뽕만 판매한다.



그림 12- 등록특허 제10-0653395호로 보호되고 있는 ‘그 집’의 메밀국수용 장. 맛이 일품이다.

등록특허 제10-0653395호로 보호되고 있는 ‘그 집’의 발명품(IPC분류는 A23L 1/39)의 정식 명칭은 메밀국수용 장 및 그 제조방법 (Sauce for buckwheat noodles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이며, 2005년 11월 22일 출원되어 2006년 11월 27일 위 등록번호로 등록되었다. 초록에는 『본 발명은 메밀국수용 장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물에 멸치 0.5~1.5 중량%, 다시마 0.5~1.5 중량%를 넣고 우려내는 단계; 가열하여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제거한 후 생강 0.5~1.5 중량%, 무 3~5 중량%, 파뿌리 1~3 중량%, 씨를 제거한 건대추 0.2~0.5 중량%, 진피 0.2~0.5 중량%, 오미자 0.1~0.3 중량%를 첨가하고 일정 시간 더 끓여 국물을 우려내는 단계; 및 고형분을 제거하고 상기 단계에서 증발에 의해 손실된 물을 보충한 후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실크피브로인 아미노산 0.3~0.8 중량%를 첨가하여 끓여 장을 완성하는 단계에 의해 메밀국수용 장이 제조된다.』가 명시되어, 음식특허의 제조방법을 비교적 명확히 개시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는 매우 간단하다. (간단하다는 것은 권리범위가 오히려 넓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등록특허 제10-0653395호의 청구범위에는 『1 물에 멸치 0.5~1.5 중량%, 다시마 0.5~1.5 중량%를 넣고 우려내는 단계; 가열하여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제거한 후 생강 0.5~1.5 중량%, 무 3~5 중량%, 파뿌리 1~3 중량%, 씨를 제거한 건대추 0.2~0.5 중량%, 진피 0.2~0.5 중량%, 오미자 0.1~0.3 중량%를 첨가하고 일정 시간 더 끓여 국물을 우려내는 단계; 및 고형분을 제거하고 상기 단계에서 증발에 의해 손실된 물을 보충한 후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실크피브로인 아미노

산 0.3~0.8 중량%를 첨가하여 끓여 장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메밀국수용 장의 제조방법.』의 3 단계로 구성된 메밀국수용 장국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명세서 전체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발명의 내용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특허는 특이하게도 색인어(검색의 기준이 되는 단어)를 메밀, 국수, 장, 실크, 피브로인, 다이어트로 설정하여 노출이 쉽게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필자가 특이하게 생각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발명자들이 본인의 발명이 덜 공개되기를 희망하는 것과는 달리 본 출원에서는 색인어에 ‘다이어트’를 포함시킴으로써, 많은 불특정다수의 특허정보 검색자들이 본 특허문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정했다는 점이다. 음식특허는 앞서도 이야기한대로 해당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특허침해 시 입증도 쉽지는 않고,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을 경우, 특허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허의 접근방식을 택해서는 안 되고, 이와같이 전략적인 공개를 통한 최대한의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며, ‘그 집’의 전략은 적중하여 여러 차례 공중과 방송에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김치명인 유정임 씨의 김치특허

식품 대기업의 계열사들도 뛰어든 만큼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그만큼 치열하고 열악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김치시장. 특히나 올해에는 이상기후와 전염병으로 인한 배추파동이 극심했기에 김치공장의 사업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작은 김치가게에서 시작해 신세계백화점 등 1,000여 곳의 고정거래처,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공장과 6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풍미식품’ 유정임 씨(55)의 김치신화는 수십 개의 등록특허와 동탑산업훈장으로 인증 받았고, 다른 회사의 김치와 확연한 차이점을 발굴해낸 풍미식품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유씨가 출원한 김치발명의 면모를 살펴보면, 『반건조 청결 고춧가루를 함유한 식품』, 『오미자 및 복분자 당절임 즙을 함유하는 콜로이드 입자형 외국인용 김치 소스 및 그 제조방법』, 『오미자 및 복분자



그림 13- 김치발명가 유정임 씨

□ 4		1020080096599	공개	오미자 및 복분자 당절임 즙을 함유하는 콜로이드 입자형 외국인용 김치 소스 및 그 제조방법(Colloid type kimchi source for foreigner comprising extracts from Schisandra chinensis and Rubus coranus Miquel,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23L 1/39	유정임
□ 5		1020080096598	공개	오미자 및 복분자 당절임 즙을 함유하는 콜로이드 입자형 김치 소스 및 그 제조방법(Colloid type kimchi source comprising extracts from Schisandra chinensis and Rubus coranus Miquel,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23L 1/39	유정임
□ 6		1020080096597	공개	콜로이드 입자형 외국인용 김치 소스 및 페이스트와 그 제조방법(Colloid type kimchi source and paste for foreigner,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23L 1/39	유정임
□ 7		1020080096596	공개	고농도의 천연 비타민 C를 함유한 채소를 이용한 콜로이드 입자형 김치 소스와 그 제조방법(Colloid type kimchi source using vegetables containing high concentrations of natural vitamin C,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A23L 1/39	유정임

그림 14- 유정임 씨는 김치에만 무려 21개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현재도 김치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절임 즙을 함유하는 콜로이드 입자형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 『콜로이드 입자형 외국인용 김치 소스 및 페이스트와 그 제조방법』, 『고농도의 천연 비타민 C를 함유한 채소를 이용한 콜로이드 입자형 김치 소스와 그 제조방법』, 『콜로이드 입자형 숙성김치 소스 및 페이스트와 그 제조방법』, 『오미자 추출액을 이용한 물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 『영양강화된 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 『초산칼슘 첨가에 의한 칼슘강화 및 선도유지형 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 『파프리카 김치 및 이의 제조방법』, 『즉석 무말랭이무침』, 『딸기 고추장의 제조방법』 등이 있으며, 대부분 등록되었다. 발명의 명칭만 봐도 유씨의 김치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심도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허의 수로만 따져도 일반 전자부품 소재 중소기업보다 월등한 품미식품은 유씨의 김치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는 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제품개발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씨의 많은 출원 중에 특히,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것은 2008년 10월에 출원되어 2010년 4월에 공개된 특허출원 제10-2008-0096599호이다. 오미자 및 복분자 당절임 즙을 함유하는 콜로이드 입자형 외국인용 김치 소스 및 그 제조방법 (Colloid type kimchi source for foreigner comprising extracts from Schisandrachinensis and Rubus coranus Miquel,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of) 이 바로 그것인데, '외국인용 김치소스' 라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다.

초록에는 『본 발명은 3,500 내지 4,500 중량부의 김치 원재료와 400 내지 600 중량부의 파프리카, 50 내지 100 중량부의 마늘, 10 내지 30 중량부의 생강, 50 내지 100 중량부의 대파, 50 내지 100 중량부의 양파, 5 내지 15 중량부의 새우젓, 20 내지 40 중량부의 멸치액젓, 20 내지 50 중량부의 정백당 및 20 내지 40 중량부의 소금을 포함하는 김치 부재료를 혼합하여 김치재료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혼합된 김치재료를 2mm 내지 50mm로 조쇄하는 단계; 상기 조쇄된 김치재료를 1nm 내지 0.02mm의 콜로

이드 입자로 미세하는 단계; 상기 콜로이드 입자로 미세된 김치재료를 pH 3.9 내지 pH 4.3이 되도록 발효하여 숙성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효 숙성된 김치재료에 오미자 및 복분자 당절임 즙을 혼합하여 pH 3.3 내지 pH 3.7의 김치소스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콜로이드 입자형 외국인용 김치 소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에 김치에 매운 맛을 내는 고추 성분을 이와 유사한 채소인 파프리카로 대체하여 김치의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김치를 용이하게 섭취할 수 있고, 김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리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김치 소스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김치 원재료와 부재료를 0.02mm 이하로 균일하게 조쇄한 콜로이드 입자형태의 원재료의 크기로 인하여 첨가제의 첨가 없이도 고형물과 액간의 상분리를 방지하고, 오미자 및 복분자 당절임 즙을 첨가하는 pH 쇼크를 통하여 초산균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pH 4.0의 조건을 회피하고, 이를 통해 초산균의 초기 성장을 억제하여 초산균의 성장으로 인한 산막형성, 연부현상, 및 군내 발생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존 및 유통 시에도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여 간편하게 다른 식품의 첨가물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본 발명으로 인하여 극심한 매운맛을 쉽게 견디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파프리카를 이용한 김치발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3,500 내지 4,500 중량부의 김치 원재료와 400 내지 600 중량부의 파프리카, 50 내지 100 중량부의 마늘, 10 내지 30 중량부의 생강, 50 내지 100 중량부의 대파, 50 내지 100 중량부의 양파, 5 내지 15 중량부의 새우젓, 20 내지 40 중량부의 멸치액젓, 20 내지 50 중량부의 정백당 및 20 내지 40 중량부의 소금을 포함하는 김치 부재료를 혼합하여 김치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상기 혼합된 김치재료를 2mm 내지 50mm로 조쇄하는 단계;상기 조쇄된 김치재료를 1nm 내지 0.02mm의 콜로이드

입자로 미세하는 단계; 상기 콜로이드 입자로 미세된 김치재료를 pH 3.9 내지 pH 4.3이 되도록 발효하여 숙성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효 숙성된 김치재료에 오미자 및 복분자 당절임 즙을 혼합하여 pH 3.3 내지 pH 3.7의 김치소스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미자 및 복분자 당절임 즙을 함유하는 콜로이드 입자형 외국인용 김치 소스의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역시나 청구항만으로도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쪼록, 우리의 대표음식인 ‘김치’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모델이 더욱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 추운 겨울을 즐기는 방법

추운 겨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내년을 기약하게 한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프로선수들도, 가장 중요한 시기로 ‘겨울’을 꼽는다. 그만큼 겨울은 중요한 시기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명가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은 결국 훈훈한 ‘내년 가을’을 위한 동계훈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이번 겨울을 맞아 해야할 일이, 그리고 즐겨야 할 연구가 너무나 많아짐을 느낄 수 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내년 가을’을 기원하며, 추운 ‘발명적’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본 칼럼이 ‘따뜻한 손’이 되었으면 한다.

(엄정한 변리사 eomtank@gmail.com / 블로그 <http://blog.daum.net/onthenet> )



#### 엄 정 한 변리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엔트리  
서울대, 공주대, 경상대, 강원대  
지식재산권 특강  
저서 : 특허법 에센스

# 사람을 키워야 할 때

## 인재육성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나폴레옹을 한 시대의 걸출한 영웅으로 평가하는 건 프랑스만의 역사관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에게 읽히는 위인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나폴레옹이고,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이 나폴레옹의 말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듯하니 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웃지 못 할 일은 나폴레옹 사후에 그의 권력을 이양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든 프랑스 역사의 속앓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황제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프랑스대혁명 이후 여전히 저항세력으로 남아 있는 왕당파 등의 재기 기도를 무마할 수 있는 등 저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사후에 그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생길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프랑스 태생이 아닌 나폴레옹을 프랑스 제국의 황제일가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림1.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대관식’<sup>1)</sup>

### 조직의 가치를 이어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조직은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특별한 기술 개발의 능력을 갖춘 이들을 영입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인력을 수혈 받게 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든 기관이든 그 조직의 이념과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 가치를 존속해 나가는 것이다. 비록 프랑스 왕가의 황통을 재건하는 일만큼 거대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조직 내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 그리고 그렇게 키워 낸 사람을 통해 조직의 가치를 이어나갈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간과해서도, 미약하게 실행해서도 안 되는 일이란 점에는 누구도 이견을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전임자의 역할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1) 이 그림의 원제목은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사원에서의 황제 나폴레옹 1세의 황후 조세핀의 대관식’으로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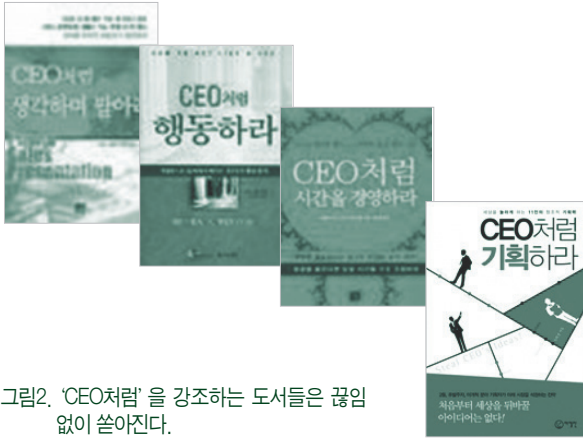


그림2. 'CEO처럼'을 강조하는 도서들은 끊임 없이 쏟아진다.

흔히, 직장 생활 속에서 눈엣가시 같은 후배사원이나 뭔가 꼭 꼬집어서 야단치고 싶지만, 마땅치 않은 때에 쉽게 내뱉는 말이 '니가 CEO야?', 라든지 '이건 상전 모시는 것보다 어렵군' 하는 말들이다. 시중에 경영과 자기계발을 논하고 표방하는 수많은 책들은 펼치기만 하면, CEO처럼 일하라, CEO처럼 생각하라, 스스로 CEO라고 생각하지 않는 직원은 필요없다는 말들이 줄줄이 적혀 있다. 단지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로 치부하고 웃고 넘어가면 될까?

좀 더 심각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도,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귀사의 인사체계는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승진<sup>2)</sup>하는 구조입니까? 물론, 많은 기업이 도제식으로 업무의 소소한 것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까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소위 내공을 쌓는 과정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다.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실패한다면? 충분한 경험과 스스로의 자기계발 노력이 잘 어우러져 균형감 있게 잘 교육된 이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과연 그런가?

### 이젠 교육도 체계를 세워야 할 때

'교육은 무슨 놈의 교육이냐? 당장 물건 팔아 적자만 내지 않아도 다행인데.' 하지만, 그렇다면 미래는 뻔하

다. 정체된 물은 고인 물이요, 곧 썩고 만다. 당장의 불을 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과 같은 책에서 말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대교그룹의 강영중 회장의 '배움을 경영하라'와 같은 책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단지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와 필수를 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Good to Great에 나오는, 그리고 대교와 같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능적으로 잘 짜여진 인력배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각각의 직원이 마치 큰 기계장치의 톱니바퀴처럼 누구나 교체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체제각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요소를 가진 조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서로의 업무를 공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기능성 제품이나 부품품이나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인력 + 생산인력'만으로 구성된 부문구성만으로는 조직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인사-교육의 연동체계

중소기업은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직원을 한 자리에만 두지 않고 순환보직을 운영하면서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흔하다. 능력있는 사람을 과거의 직무보다 더 중요한 자리로 옮겨 배치하는 관행이 전문성의 맥을 끊는 일을 초래하곤 한다. 일본의 특허분야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경력자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허분야에서 잔뼈가

2) 자동승진이란 말이 당연히 아무런 인사평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승진연한 이외에도 특별한 자격이나 인준절차를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위직급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단편적인 리더십 교육이나 변별력이 약한 승진시험 등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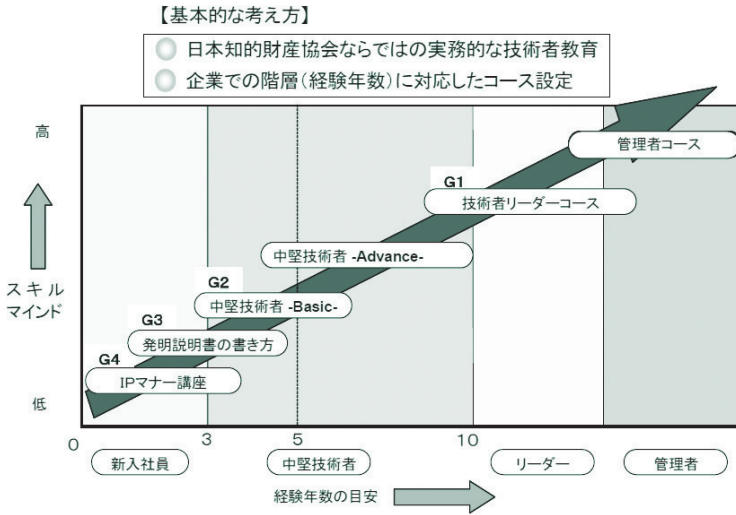


그림3.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연수프로그램으로 유명한 JIPA(일본지적재산협회)의 상향식 교육프로그램 체계 개념도.

젊은 특허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들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특허분야 임원들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임원이 되면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의 ‘관’이나 ‘돈’을 제시할 수 있는 데에 까지 이른다.

따라서 기업이 사람을 키우기 위한 교육체계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업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좀처럼 체계를 갖기 어려워진다. 기업의 교육체계는 신입에서 임원까지를 꿰뚫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비록 근무연한이 짧은 조직일지라도, 비록 이직률이 높은 직종이라도, 각각의 직무와 직능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과업을 정해놓는다면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경우라도 어떤 사람을 영입해 와야 할지는 명확해진다. 교육체계라는 건 기업의 비전과 사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기반 위에 세워지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체계를 세우는 일이 단순히 직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은 복지가 아닌 전략**

교육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복지차원’에서 고려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마치 포상의 개념이나 복지의 일환으로 교육을 보내준다는 인식이 상식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교육명령을 받아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공백이 생긴 업무를 떠맡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부담으로 스트레

스를 받곤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의 흐름 가운데서 인재육성 정책이 운용이 된다면, 그러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한결 줄어들 것이다.

교육은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력에게 맞는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정책이지만,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가 일부직원들에게만 주어진다 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포상이요 복지의 일부일 뿐이지, 교육을 받은 직원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교육의 기회를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여, 그 교육에서 얻은 성과를 업무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자격이 돼서 받은 교육인데.’ 하는 생각이 교육의 효과를 분해하는 요소다. 결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은 단계적이고 점증적인 상향식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임직원이 이 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을 받고 그 성과를 자신의 직무와 연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필수직무교육과 선택직무교육 간의 균형**

교육체계의 구성은 이렇듯 상향식 체계를 갖춘 필수직무교육이 기본이 되고, 이에 직원 개인별 직무특성이나 관심사를 고려한 자율적인 선택직무교육 체계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자율적인 선택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복지와 교육이 혼화된 이상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언어교육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사항이라면 필수직무교육에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언어교육에 대해서는 직원 각자가 학습의욕도 높고, 스

스로 동기를 부여하므로 개인적인 학습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이 이를 필수교육으로 하여 특정학원과 교육 계약을 맺거나 외국인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언어교육이나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이나 전사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교육은 Pixar에서 ‘니모를 찾아서’를 기획할 때에 해양생태학자를 초빙하여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진지하게 수행했던 것과 같이, 적시적기에 시행함으로써 높은 업무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희망교육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한 반면,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간파하여 전사교육으로 수행하는 것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의무교육과 선택교육 간에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 운영의 묘 살리기!

모든 임직원이 교육에 대한 의무를 직원으로서의 권리로 서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막연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형태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강약을 조절하고, 교육의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교육의 강약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해당 직급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입직원에게 아무리 기초과정이라고 해도,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교육을 수강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아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와 경험이 갖추지 못한 이에게는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해당 직급에 맞는 교육을 선정하였을지라도, 그 교육이 해당직급의 해당연차에 맞는 교육인지도 검증해 보아야 한다. 대리급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할 때라도, 대리라는 직급은 통상 1년에서 10년에 이르는 다양한 연차의 경력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리 2~3년 만에 과장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라도, 과장승진에 누락한 이들에 대한 교육은 무방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목적과 제목의 교육과정이라도 연차별로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어져야 한다. 최소한 프리젠테이션 기초, 프리젠테이션 연습, 프리젠테이션 사례 등의 다양성을 확보해 두어야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고, 이를 수강하는 이들도 교육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 지속적인 동기부여는 곧 교육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조직은 한 가지의 일을 시작하면서는 저항을 경험하게 된다. 임직원들의 저항은 물론, 교육담당자의 저항도 있다. 심지어는 경영진 내부에서의 갈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저항이 약해지고, 인정과 동화의 단계를 거쳐 정착이 되면,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린다. 바로 권태감이나 피로감이라는 것이다.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느 순간엔가 뒤통수를 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기부여 기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매너리즘에 대한 대처는 필수적이다. 누구나 3년 정도 한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 점차 손에 익고 몸에 배어진 업무패턴은 좀처럼 변화를 거부한다. 이럴 때에는 다양한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

특허부서 인력이면, 특허만 알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사고는 이미 고루하다. 수년 전부터 통섭과 창조를 강조하는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는 이론과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들은 어떤가? 그는 자신이 ‘언제나 기술과 인문학의 경계에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스티브 잡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가 전문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는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아니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하드웨어 기업의 CEO로 군림하고 있다. 그런 그가 전



그림4. 한 때 불품없는 새끼 공룡이란 냉혹한 세간의 비난을 받았던 매킨토시 클래식 모델 (실용성면에서도 IBM PC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5. 스티브 잡스의 복귀와 함께 발표된 애플의 새로운 PC, 아이맥과 입체감이 더해진 애플로고.

문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지 않았다고 하니,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 우물 파기의 진득함이 결국 성공과 성취를 이룬다고 배우지 않았던가.

스티브 잡스가 없었던 애플이 만들어 낸 매킨토시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뚜렷이 이해할 것 같다. 기술적으로나 디자인 측면으로나 이 둘이 접점을 찾아 상호 대화했던 흔적이 없어보이는 제품들이 줄을 이어 탄생했었다. 지나치게 디자인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공룡을 만들어 냈다고 편견을 받은 매킨토시가 있는가 하면, 파스텔톤에 손잡이까지 달려서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소품으로는 각광을 받았지만, 너무 무겁고 기능도 새롭지 않은 탓에 실용성에 의심을 받은 제품들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애플 제품들은 어떠한가보자. 원과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의 절묘한 조화로 ‘기술적인’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제품들이란 생각이 든다. 디자인은 오직 원과 사각형,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원칙에 철저하면서도, 이를 애플의 진보적인 기술성향

에 맞물릴 수 있도록 디자인해 낸 것이 애플의 저력이다.

오늘의 기술은 애플보다 성능이 좋은 노트북과 MP3플레이어와 전화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애플의 제품만 보아도, 그야말로 다국적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런데도 애플보다 기술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이들이 애플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애플이 가진 만큼의 인문학적 배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참고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패러다임이란 용어에 과학사적, 기술사적 의미를 부여한 토마스 S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도 저자가 10년여에 걸친 인문학에 대한 독서와 연구없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업적이 펼쳐진 영역은 또 얼마나 장대한가?

너무 큰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해당 특정 분야에만 몰입하는데에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어서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인 학습에 모티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사람은 지적인 존재인 만큼, 단순히 교육의 모티브를 인센티브나 인사상의 유익에서 찾을 것만은 아니다.



그림6. 지난 해 12월 브루킹 연구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모습.

3) 이는 기술의 표준화와 기술 컨소시엄이라는 기술경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경영의 마인드로 분석하고 해석함이 없었으면, 기술의 전략적인 라이선싱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 결어

끝으로, 배움에 대한 인센티브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배움을 열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성과가 직무와 연결되는 이외에 또 다른 배움으로 나갈 수 있는 연결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해 1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브루킹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고용창출을 위해 구제금융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등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처럼 소위 인센티브라고 하면 재정적인, 금전적인 보상만을 이야기 하지만, 동기부여를 위한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열정과 꿈을 자극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일들이 그저 단편적이고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점을 찾을 수 있고, 그러한 연결(connecting)을 통해서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들이 배움이 되었음을 이야기 한 바 있다. 목표가 없는, 지향점이 없는 교육은 이런 연결점을 찾는 일을 어렵게 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경력은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었다. 기업 내 직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이 전혀 연결점 없는 행정직으로 전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전제 하에서, 기술인력이 특허업무를 수행케 하되 그 과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사항들을 빠짐없이 섭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직원의 경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모쪼록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성장에 대한 열정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열정이 조직 전체를 감싸는 데에 주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친다.



이 태 원 계장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논문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고찰

문화산책

#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무대!! 뮤지컬 <아이다>

ELTON JOHN & TIM RICE'S



# AIDA

THE TIMELESS LOVE STORY

2010년 12월 18일부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150억 흥행신화, 278회 공연, 22만 한국 관객이 열광했던  
뮤지컬 <아이다>의 화려한 부활!  
5년만에 다시 재현되는 무대 예술의 걸작!

나일강을 떠가는 노예선, 암네리스 공주의 왕궁, 누비아 사막 한가운데의 이집트 무덤...  
무대에서 재현되는 고대 이집트의 전설!!!

스펙터클한 무대, 폭발적인 음악, 환상적인 조명, 아름다운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감동의 뮤지컬!!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전설적 작사가 팀 라이스의 완벽한 음악!  
토니상 주요 4개부문, 그래미상 수상!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암네리스 역-배해선), 여우신인상 (아이다 역-옥주현)  
기술상 (유석용 기술감독), 앙상블상 수상!  
한국 최초로 브로드웨이 무대, 의상,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100% 공수해 재현하는 완벽한 메커니즘!

WINNER!  
**4 TONY AWARDS**  
BEST MUSIC & LYRICS  
BEST ACTRESS  
BEST SCENIC DESIGN  
BEST LIGHTING DESIGN



## About AIDA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공주,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장군 라다메스의 전설과도 같은 러브스토리...



혼란기에 펼쳐지는 운명적이고 신화적인 사랑 이야기 뮤지컬 <아이다>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엘튼 존, 팀 라이스 콤비와 토니상 수상경력의 최고의 브로드웨이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탄생한 <아이다>는 팝 걸치의 모던한 감각이 살아있는 조명, 의상, 무대와  
아름다운 음악의 조화가 완벽한 브로드웨이 대표작이다.

지난 2005년 엘지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던 뮤지컬 <아이다>의 한국 초연은,  
당시 한국 뮤지컬 사상 최장 기간이었던 8개월 간의 공연과 옥주현의 뮤지컬 데뷔  
무대, 그리고 브로드웨이 무대 메커니즘을 100% 그대로 공수해 온 최초의 공연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공연되었고, 한국 관객들에게 혁신적이며 새로운 무대 감각을  
일깨워주며 공연의 히트를 기록하였다.

한국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뮤지컬 중 하나로서 지속적인 재공연이 시도  
되었지만, 방대한 무대와 6주에 달하는 긴 셋업 기간 때문에 마땅한 공연 장소를  
찾지 못했던 뮤지컬 <아이다>는 한국 최고의 무대 메커니즘을 보유한 공연장 중  
하나인 성남아트센터에서 그 해답을 찾고, 드디어 긴 항해를 재개한다.

뮤지컬의 신성에서 성장을 거듭, 이제 뮤지컬 수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옥주현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디바 정선아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히어로 김우형

이 아름다운 배우들이 펼치는 격변기 고대 이집트, 거센 풍랑도 막을 수 없었던 운명과도 같은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2010년 한국 관객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을 뮤지컬 <아이다>다!

## 뮤지컬 <아이다>

공연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공연기간 : 2010. 12. 14 ~ 2011. 03. 27

관람시간 : 150분

관람등급 : 초등학생이상

기획사 : 성남문화재단 / SBS / (주)신시컴퍼니

문의 : 1544-8117

# Information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건강하게 삽시다 • KIPO NEWS • KIPA NEWS
-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재미있는 퍼즐 • 책과의 만남



## Information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 경상남도

Hamyang



# 함양마천옷

살소법으로 생실을 채취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함양군 마천면은  
**전통을 계승한 화실을 생산하여**  
양질의 옷 생산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지역적으로 가까운  
통영의 나전칠기 칠의 주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상표명 |  
함양마천옷

| 권리자 |  
마천 옷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44호

| 상품분류 |  
제 2류 염료(옷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함),  
안료(옷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함),  
도료(옷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함),  
니스용 옷, 흑색옷, 옷액  
제 31류 미가공 옷피(옷나무 껍질),  
옷나무, 옷순

연락처  
마천 옷 영농조합법인  
055-960-4015



경상남도 함양

## 01 • 유래

예부터 전국 옷칠 5대 생산지인 마천 옷은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된 양질의 옷을 남부지방 주요 특산품인 함천 팔만대장경, 전주의 부채 및 공예품, 남원의 목기, 담양의 죽세품, 통영의 나전칠기, 고건축물의 단청 등의 칠 원료 공급지로 유명합니다.

## 02 • 특성

옷 생산지의 자연조건 중에서 여름철에는 일조량이 많을수록 양질의 옷을 생산할 수 있는데, 경남 함양 마천지역은 일조량이 좋으며 이는 옷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우루시율이 포함된 옷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양마천옷 행정자치부의 지역특화산업으로 확정되어 2년여의 타당성 검토와 연구용역을 통해 칠피사업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과 경제성을 검증받았고 천연 코팅 칠피산업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옷칠코팅을 통한 천연 코팅된 피혁 및 환경 친화적 피혁 기술 보유와 차별화 된 항균성, 난연성, 내구성 등을 가진 피혁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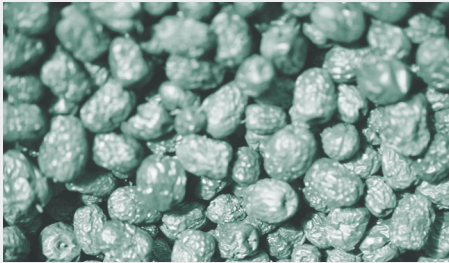
## 경상북도

Gyeongsan



# 경산대추

경산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태풍과 홍수피해 등의 천재 지변이 거의 없는 천혜의 기후 조건과 일조량이 많아 대추재배의 최적지로서 알이 굵고 무기질이 풍부한 품질 좋은 대추로 전국 각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상표명 |  
경산대추

| 권리자 |  
경산대추생산자  
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6호, 제 7호

| 상품분류 |  
제 29류 대추(보존 처리한 것)  
제 31류 대추(가공한 것)

**연락처**  
경산대추생산자 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053-811-0872

01

### • 유래

경산대추의 시발지는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에서 처음 재배하여 그 일대를 대추 골이라 부르며 아름다리 대추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후 1980년부터 경산 전역에 확대되었고 재배기술이 보급 되면서 현재 전국재배의 25%로 대추 명산지가 되었습니다.

02

### • 특성

경산대추는 알이 굵고 무기질이 풍부한 품질 좋은 대추를 생산 하여 전국각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70년대 초 사과와 대체 작목으로 재배를 시작하였고 기후 및 토양이 적합한 압량, 진량, 자인, 하양지역을 중심으로 834ha를 재배 연간 1,164톤을 생산 하여 전국 최대규모의 대추생산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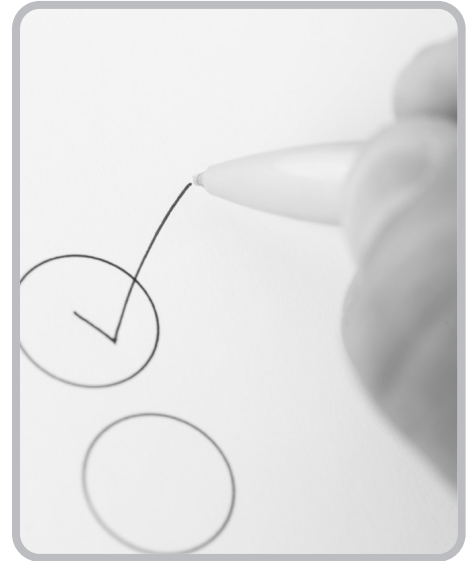


경상북도 경산

나는 얼마나 마시고 있을까? 나의 술 온도를 측정해보자

## 나의 음주량 알아보기

**세** 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심장병과 간질환, 음주운전 사고, 자살 여러 종류의 암 등 알코올과 관련한 사망자는 15~29세 32만 명을 포함하여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음주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원인의 주요 8개요인 중 하나이며,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한다.



이렇듯 많은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음주를 한다.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먹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만약 섞어 마신다면 내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전혀 가늠할 길이 없는 것이다.

올바른 음주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표준음주량으로 절주습관을 만들어보자. 나도 모르게 점점 올라가는 수치가 적색 경고등으로 보이게니…….

### 고위험음주란?

술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도수와 용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표준음주량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고위험음주를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소주 7잔, 여자의 경우 소주 5잔으로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 그럼 맥주나 다른 술을 마셨다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술 마실 때 내가 소주1잔에 비례한 기준이 있다면 여러 잔 마셨어도, 여러 술을 섞어 마셨어도, 내가 마신 술을 측정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소주 1잔을 기준으로 한 알콜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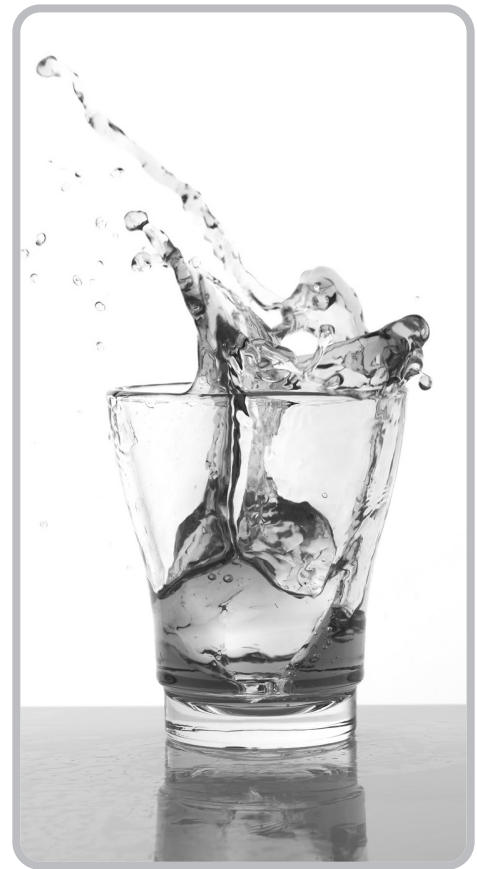
만약 오늘 내가 소주 2잔, 맥주 2잔, 막걸리 1잔을 마셨다면, 도수와 용량이 제각각이라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하단에 표를 참조하면, 내가 소주 1잔과 비교하여 얼마나 마셨는지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다. 소주는 2잔 X 1=2잔, 맥주는 2잔 X 0.9=1.8잔, 막걸리 1잔 X 1.2=1.2잔으로 총 소주로 기준을 삼으면 5잔이나 마신 셈이

다. 또한 이 음주량은 여성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고위험음주가 된다.

소주 1잔을 기준으로 한 알콜량

구분	용량(A) 단위:ml	도수(B) 단위:%	표준량
소주1잔	50	20,1%	1,0
막걸리 1잔	200	6,0%	1,2
맥주 1잔	200	4,5%	0,9
와인 1잔	100	13,5%	1,3
위스키 1잔	30	40,0%	1,2
병맥주	330	4,5%	1,5
캔맥주	355	4,5%	1,6
생맥주	500	4,0%	2,0
소주(20도)	360	20,1%	7,2
소주(19,5도)	360	19,5%	7,0
매화수	375	14,0%	5,2
막걸리	750	6,0%	4,5
레드와인	750	13,5%	10
화이트와인	750	7,5%	5,6
위스키	1000	40,0%	40
보드카	750	40,0%	30



물론 섞어 마시지 않는 편이, 많이 마시지 않은 편이 음주 시 가장 좋겠지만, 만약 마셔야 하는 상황이 라면 다음 표를 염두에 두고 내가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주하 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다.

제공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 미국 산업계도 인정한 한국의 특허심사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이수원 특허청장이 미국 산업계에 해외 특허청장 중 유일하게 글로벌 IP 리더로 초청되었다.

텍사스 상공회의소\*는 변화하는 글로벌 지재권 정책동향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글로벌 IP 리더십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재권 국제사회에서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재권 정책기관의 고위급 인사\*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면서 미국 이외의 특허청장으로 이 청장을 유일하게 초청했다.

\* IBM, 3M, 모토롤라 등 대표적 IP기업 2,500개 이상으로 구성

\* David J. Kappos 미국 특허청장, James Pooley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 및 이수원 특허청장

지식재산분야 선진5개 특허청(한·미·일·중·유럽, IP5)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親지식재산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협력 사업을 전개해 오던 이 특허청장은 미국의 고위급 인사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특허제도를 통한 한국의 산업발전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글로벌 IP 리더십 정상회의 참석차 오스틴을 방문한 이수원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특허정책을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과 혁신의 주요인자로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재권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한국 특허청의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참가한 미국 기업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 트위터로 부담 없이 특허상담 받아요

특허청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등 모바일환경에 맞추어 트위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상담을 본격 실시하고, 고객상담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40여 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하루 평균 3천통 이상의 전화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지재권 상담전용 트위터(@ipconsult)를 통하여 실시간 지재권 상담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궁금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 트위터 전담 상담사가 실시간 답변을 하고 수시로 핵심적인 지재권 상담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트위터를 활용하여 상담센터의 운영상황과 다양하고 유익한 지재권 정보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출원과 등록절차 등에 대한 핵심 문답 내용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도 금년 말까지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든지 지재권 상담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지재권에 관한 의문점을 쉽게 해소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연결된 트위터로 바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제주시 등 5개 지자체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IP-City)로 선정’

특허청은 지난 11월 16일, 경남 진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를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2010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특허·브랜드(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인식제고·창출·활용·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5개 지자체는 지식재산진흥조례 제정, 지식재산 현황조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허·브랜드·디자인 관련 사업 발굴, 지역 기업 및 주민을 위한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발명체험행사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먹거리 상표의 세계화 절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먹거리 상품의 상표를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통하여 외국에 출원한 건수가 외국의 상표가 우리나라 국내로 출원된 것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먹거리 상품의 연도별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를 보면 '07년 26건, '08년 10건, '09년 32건, 금년 9월 현재 7건인 반면, 외국에서 국내로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한 것은 '07년 814건, '08년 922건, '09년 730건, 금년 9월 현재 493건 등으로 먹거리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은 외국의 국내진입에 비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먹거리 상품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은 한국야쿠르트, 주식회사 운화, 빙그레, 동원에프엔비 등이며, 가장 많이 출원한 한국야쿠르트의 상표출원 건수도 46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 먹거리 상표의 해외출원이 적은 이유는

첫째, 전반적으로 해외 상표출원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고

둘째,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시장 선점에만 치중하고 아시아·중동 등 인구가 많은 신흥 해외 먹거리 시장의 개척을 위한 상품과 상표 개발 능력의 미흡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 한식 즉, 먹거리 상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함께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상품과 호감이 가는 상표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란 하나의 상표출원을 우리나라에만 출원하면서 출원을 희망하는 여러 개의 외국국가를 지정하면 한번에 출원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함(우리나라 가입일 : 2003. 1. 10.)



## 2010년도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위원회 개최

특허청은 차세대영재기업인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위원회'를 지난 11월 3일(수)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은 특허청이 KAIST 및 POSTECH과 공동으로, 독창적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의 신성장산업 창출을 주도할 차세대영재기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차세대영재기업인이란, MS사의 빌 게이츠, Google사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와 같이 창의적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을 말한다.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서남표 KAIST 총장, 백성기 POSTECH 총장,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장,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이민화 기업호민관(주)메디슨 창업자, 안철수 KAIST 교수(주)안철수연구소 창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특허청과 KAIST 및 POSTECH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도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분야 규제개혁 성과 '톡톡'

올 한해 추진한 지식재산분야 규제개혁으로 특허고객 등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금년에 추진한 3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국민편익 증대, 민원비용 절감 등 연간 2,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특허청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혁신, 출원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3개 분야에 역점을 뒀다.

먼저,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제도 혁신을 단행, 심사 없이 등록될 수 있는 물품범위를 크게 늘리고, 복수 디자인출원을 허용했다. 출원서에 명백히 잘못 적힌 사항이 있을 때는 출원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대신 심사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해 심사기간도 줄였다. 디자인 분야에서만 1,763억 원에 달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녹색성장 정책기조를 뒷받침했다.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출원료와 등록료를 50% 감면하는 등 수수료도 정비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주력했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분담금 부담을 낮춰 현물매칭을 늘렸고, 신청서류 부담도 대폭 줄여 총 112종의 서류 중 28종을 생략했다. 특허분쟁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설링 지원업체 선정이나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소요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 변훈석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특허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가 특허생산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R&D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최근 발간한 “201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8년 기준으로 GDP 10억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102.6건, R&D 비용 100만 달러당 특허출원건수는 3.3건으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특허출원 절대규모는 '0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R&D 협력활동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PCT 국제출원 중 외국 연구자를 포함하는 출원 비율은 전체 국제출원의 5.4%에 그쳐 세계 1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R&D 활동의 특허생산성은 높은 수준이나, R&D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연구환경의 국제화 추세 및 외부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추세를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통계로 보인다.

한편, 상표출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08년 기준으로 GDP 10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는 86.7건으로 세계 2위, 인구 백만 명당 상표출원건수는 2,211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상표출원은 137,461건을 출원하여 중국(669,088건), 미국(294,070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디자인 출원 역시 56,750건으로 중국(312,904건), 유럽공동체상표청(78,050건)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산 관련활동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특허청, 홈페이지에 날개를 달다.

특허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미투데이(me2DAY), 트위터(twitter) 등 소셜미디어와 연계한 새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통하고 정책고객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특허청은 이미 올해 4월부터 '아여세'(아이디어로 여는 세상)라는 정책 블로그와 '상상Key움'이라는 미투데이 및 트위터를 개설하고 정책고객과의 온라인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개통된 홈페이지는 특허청의 정책속보 및 뉴스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시에 서비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특허청 미투데이 및 트위터('상상Key움')에 접속하면 특허청의 최신 정책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상Key움'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본인의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특허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이 홈페이지 내용 중 다시 보고 싶은 정보는 본인의 미투데이나 트위터에 바로 저장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고,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내(內) 메뉴별 접근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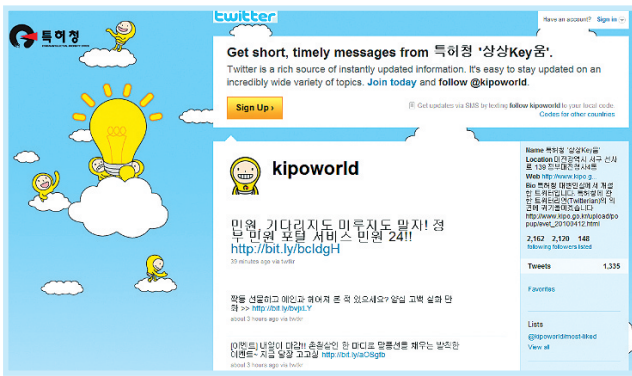
← 국문  
홈페이지  
첫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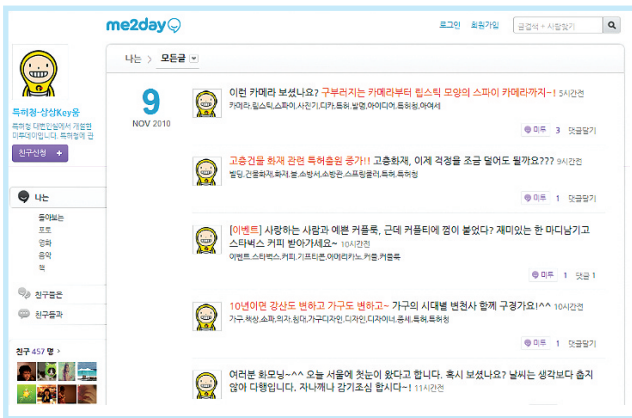
→ 영문  
홈페이지  
첫 화면



-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 특허청 블로그( '아여세' )  
<http://blog.daum.net/kipoworld/>



- ◆ 특허청 트위터( '상상Key움' )  
<http://twitter.com/kipoworld>



- ◆ 특허청 미투데이( '상상Key움' )  
<http://me2day.net/kipoworld>

제공 특허청



## 2010 대한민국 발명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열려

대상에 여의도고 이윤열, 여수 중앙여고 채영현 학생 수상



이 행사는 지난 11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2010 대한민국 발명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발명교육과 발명문화창작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487점의 작품이 출품, 104점의 수상작에 대한 13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여의도 고등학교 이윤열 학생은 평소 창작활동으로 만들어 왔던 발명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가 꿈꾸는 세상(발명 작품집)’으로, 여수 중앙여자고등학교 채영현 학생은 발명의 필요성과 손쉬운 발명 방법에 관한 동영상 ‘발명 챔피언’으로 각각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또한, 특별상(공모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지도자에게 수여)은 학생 237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영천 동부초등학교 오동환 교사에게 돌아갔다.

홍만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명콘텐츠 공모전이 명실상부하게 청소년들의 창의력 배양과 발명 창작문화 조성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 국민의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워크숍 개최

회원 상호 간 소통의 장 마련



우 리회는 글로벌 지식재산 리더를 위한 「2010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워크숍」을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곤지암리조트(경기도 광주)에서 개최하였다.

회원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대기업 · 중소기업 · 특허법률사무소 · 개인발명가 등 각 기업대표를 비롯해 특허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업 대표급(실무자 포함)이 양일 간 회원워크숍을 갖기는 회원행사에 있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반적인 우리회 사업설명을 비롯, 특허자동화 평가시스템 · 지식재산능력시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 지재권 특강으로 전성규 엘지전자 상무이사의 「IP 포트폴리오 전략」, 전성철 IGM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의 「아시아 시대 앞으로 30년의 7대 메가 트렌드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명사초청 특강이 이어졌다.

특별히 발명 · 특허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수원 특허청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특허행정 정책방향 등 지식재산권 현안사항에 관해 회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회는 향후에도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 간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이수원 특허청장이 회원들과 대화를 하며 지재권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우리회 최중협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 전성철 IGM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이 명사초청 특강을 하고 있다.



▲ 전성규 엘지전자 상무이사가 지식재산권 특강을 하고 있다.



## KIPA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우 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 위치한 서울연탄은행을 방문,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가구 및 독거어르신들께 전달할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를 실시했다.

KIPA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010 윤리경영특강 실시

우 리회는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윤리경영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은 이매니지먼트(주) 나상익 대표가 언론을 통해보는 윤리경영 사례에서부터 경영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책임(CSR), 경영위기와 CSR(헬과 나이키 사례), CSR 관련 국제동향에 이르기까지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우리회는 이미 대표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클린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공공기관으로서의 실행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11월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원명 : 자바정보기술(주)
- 대표자 : 박상열
- 업태/종목 : 서비스 / 소프트웨어지문개발공급
- 주소 : 제주 제주시 삼도1동 558-14 수성빌딩 6층
- 전화번호 : 064-724-6900
- 홈페이지주소 : www.javainfo.co.kr



- 회원명 : 성민정보기술(주)
- 대표자 : 장신규
- 업태/종목 : 서비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13-4 동운빌딩 1, 2층
- 전화번호 : 02-3462-4100
- 홈페이지주소 : www.sungminit.com

- 회원명 : 오우메드(주)
- 대표자 : 김경일
- 업태/종목 : 제조, 판매 / 의료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5-23 양유빌딩
- 전화번호 : 02-564-3200
- 홈페이지주소 : www.owomed.com

- 회원명 : (주)코렌
- 대표자 : 이종진
- 업태/종목 : 제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51-2번지
- 전화번호 : 031-740-6800
- 홈페이지주소 : www.kolen.com



# 재미있는 퍼즐

재미있는 퍼즐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가로열쇠

1.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
3.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
4. 보면서 즐기기 위하여 심고 가꾸는 나무나 풀.
6.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 신라 때에 발달한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향찰, 구결 및 삼국 시대의 고유 명사 표기 따위의 한자 차용 표기법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나, 일반적으로는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을 이른다.
9. 잣물을 던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 겉면에 윤기가 없다.
11. 성질을 일컫는 평안도 사투리이다.
12. 신열이나 위의 병 때문에 헛바닥에 끼는 누르스름한 물질.
14. 길이, 부피, 무게 따위의 단위를 재는 법.
15. 공을 사용하는 운동경기. 야구, 축구, 배구, 탁구 따위가 있다.

## 세로열쇠

2. 아주 뛰어나게 잘 쓴 글씨. 또는 신령스럽고 기묘한 필적.
4. 입으로 불어서 관 안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 목관 악기와 금관 악기의 두 가지가 있다.
5. 밥만 먹고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7. 우리나라 고유의 웃옷. 주로 외출할 때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무·섶·깃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8. 지각을 이루는 여러 가지 암석이나 지층의 성질 또는 상태.
10. 한 해에 같은 땅에서 두 번 농사짓는 일. 또는 그렇게 지은 농사.
12. 각종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작업용 기본도. 지도의 윤곽·경계·하천·도시·철길 따위는 표시하나 글자는 쓰지 않는다.
13. 그물로 잡은 명태.
15.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함께 풀어봅시다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11월호 정답

개	구		배	드	민	턴
	검	안	기		방	
복			량		위	도
고	구	려		정		피
	교		공	전		문
사	지	선	다		조	학
	간		리	어	카	



P u z z l 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남·여)

주소: .....

전화: ..... HP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8F 발명진흥팀

1 3 5 - 9 8 0

이 부분은 우편서지(발명특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발명진흥회(www.kofpa.or.kr)의 홍보물입니다.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12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켄 블랜차드 자기경영 실천편

# 춤추는 고래의 실천

## 책소개

**조직과 개인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실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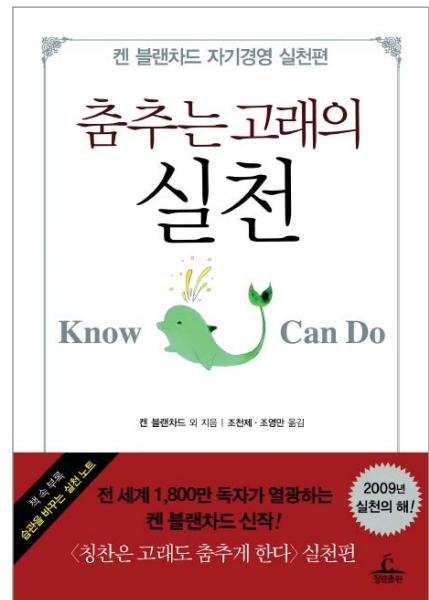
**계** 획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가? 이 책은 목표로 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경호』 등을 집필한 자기계발 동기부여가 켄 블랜차드가 50여 년 동안 인간행동을 연구한 폴 마이어, 유명한 컨설턴트 딕 류와 힘을 합쳐 자기경영 실천법을 내 놓았다.

본문은 소설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헨리, 그리고 헨리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기업가 필립이 등장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배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

삶과 비즈니스에서 해야 할 계획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습관과 행동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준다. 책 뒷부분에는 <춤추는 고래의 실천노트>를 제시하였다. 나는 누구이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써보는 코너,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각오와 계획, 실천방법을 정리해보는 코너를 마련하였다.[양장본]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총 4장에 걸쳐 우리가 왜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지, 지식과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언한다. 실천의 문제, 반복의 힘, 긍정의 힘, 지속하는 힘 등을 주제로 배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전략을 설명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주는 법을 전수한다.



저 자 \_ 켄 블랜차드, 폴 마이어, 딕 류  
역 자 \_ 조천제  
출판사 \_ 청림출판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E-mail):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A4(1/2매, 글자크기: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eldaah7@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7

광고가격(개월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명훈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차명진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발명진흥팀 김민국 (Tel. 02-3459-2797, Fax. 02-3459-2799)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 차세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한국전력이 만들어 갑니다

전력망에 IT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기술과 노하우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에너지를 키워가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 지식재산능력시험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세요!  
지식재산시대 나의 경쟁력  
지식재산능력시험

## IPAT 실시요강

###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발명진흥법상 법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지식재산능력 공인시험으로 기본 지식과 실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대상 :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대상

응시료 : 개인 20,000원, 단체 18,000원(단체는 시험본부에 등록된 단체)

시험장소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

출제양식 : 5지선다 / OMR기입식 (객관식)

공식사이트 : [www.ipat.or.kr](http://www.ipat.or.kr)

문의 : 02-3459-2777 / 2888

## 교재안내

지식재산능력시험 대비 표준교재

### "지식재산의 정석"



-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 가격 : 20,000원
- 출판사 : 도서출판 박문각
- 목차
  - Part 1 : 지식재산의 기초
  - Part 2 : 지식재산의 창출
  - Part 3 : 지식재산의 보호
  - Part 4 : 지식재산의 활용